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2 June 2016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02 June 2016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 006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FTA 최근 동향

- 012 관세청 FTA 동향
037 우리나라 FTA 동향
057 해외 FTA 동향
066 미리보는 한-콜롬비아 FTA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ANALYSIS

- 074 한-EU FTA 발효 5년의 성과와 대응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98 의료기기 산업의 FTA 활용동향과 시사점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EXPERT

- 140 한-EU FTA 발효 5주년, 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146 한-EU FTA 발효 5년, 농산물 수입 동향 및 시사점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FTA와 품목분류

- 154 블랭크의 품목분류가 왜 중요한가?
오수교 관세사 · KPMG세정관세법인 고문



FTA 활용 성공사례

- 170 기술력과 FTA 인하효과 활용 모델
- 180 동반성장 모델
- 183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 192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 200 발로 뛰어가며 합격한 원산지 관리사
서학원 원산지 관리사 최고령 합격자
- 202 FTA 전문인력이 될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다
신아형 원산지 관리사 최연소 합격자
- 204 각과목들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합격하다
호성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208 FTA-PASS 둘러보기

FTA 100% 활용하기

- 212 EU 통관환경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개편된 EU 신 관세법 (Union Customs Code: UCC)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법학박사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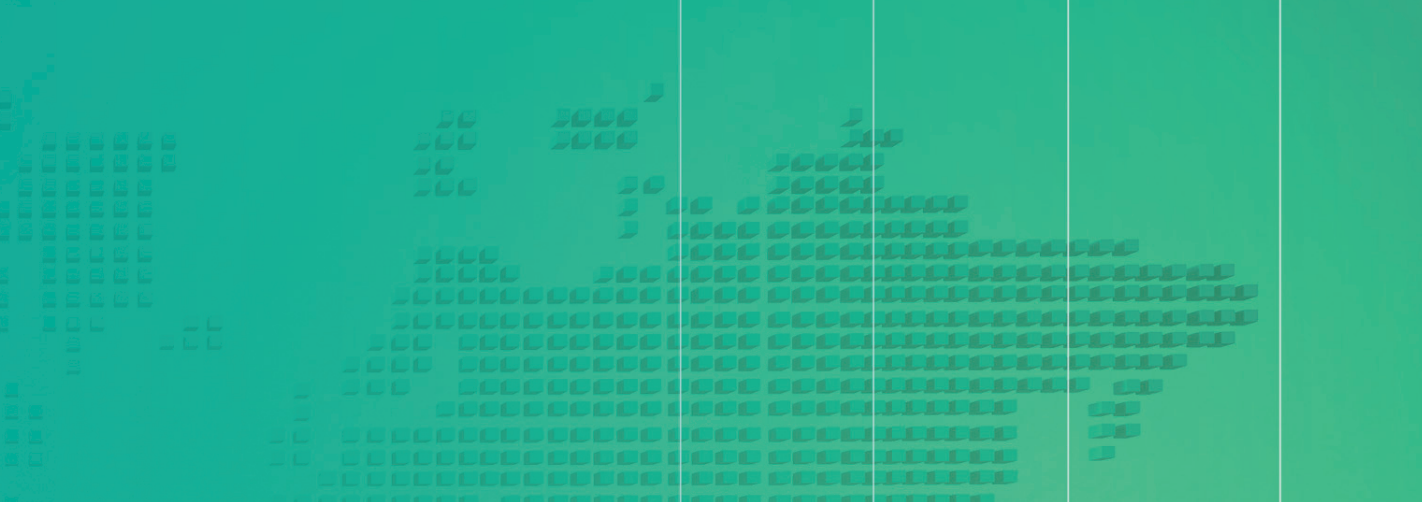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 222 지도로 보는 2014 대비 2015 특혜 수출입실적 증감률

FTA FOCUS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RANS-PACIFIC PARTNERSHIP



1. TPP 타결의 의의

세계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FTA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에는 TPP와 같은 복수국 간 메가 FTA가 세계통상질서를 선도하고 있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과 같은 Mega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통합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0월 5일 TPP 12개 회원국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최종 협상타결을 달성하며, 전 세계 GDP의 38%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TPP 12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세계 GDP의 38%에 달하는데 이는 EU 전체(23%)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리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8%로 전세계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TPP 협상 타결에 따라 12개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한 TPP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02. TPP의 경제적 효과

협정이 발효되어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 역내국가간 수출과 수입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무역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TPP 회원국 사이에 무역이 활성화되면 원산지 누적 조항에 따라 중간재 무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기술 및 투자의 무역장벽이 낮아져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TPP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동참하고 무역관련 규범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 국가간의 협정이다. 그중에 일본은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통합 흐름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런데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은 단숨에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하는 경제권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이 TPP 경제권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가 누리던 FTA 선점 효과는 조만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자동차(부품포함), 전기전자, 기계 등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 조속히 가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TPP 조기 가입의 논리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TPP 회원국과 이미 개별 FTA를 타결하여 발효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TPP의 상품양허 수준이 개별 FTA의 양허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관세효과에서는 기대할 것이 많지 않다. 그런데 TPP 협상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누적 원산지 규정이다.

쉽게 풀어 말하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후 미국에 수출하면 모두 역내산 거래로 취급하여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개별 FTA의 단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TPP 가입을 전제로 누적원산지 적용을 받게 된다면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별 이해득실을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와 부품업종은 TPP 협상 타결로 미국시장 등에서 일본과 한층 강도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일본산 부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산 부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하고 이는 우리 기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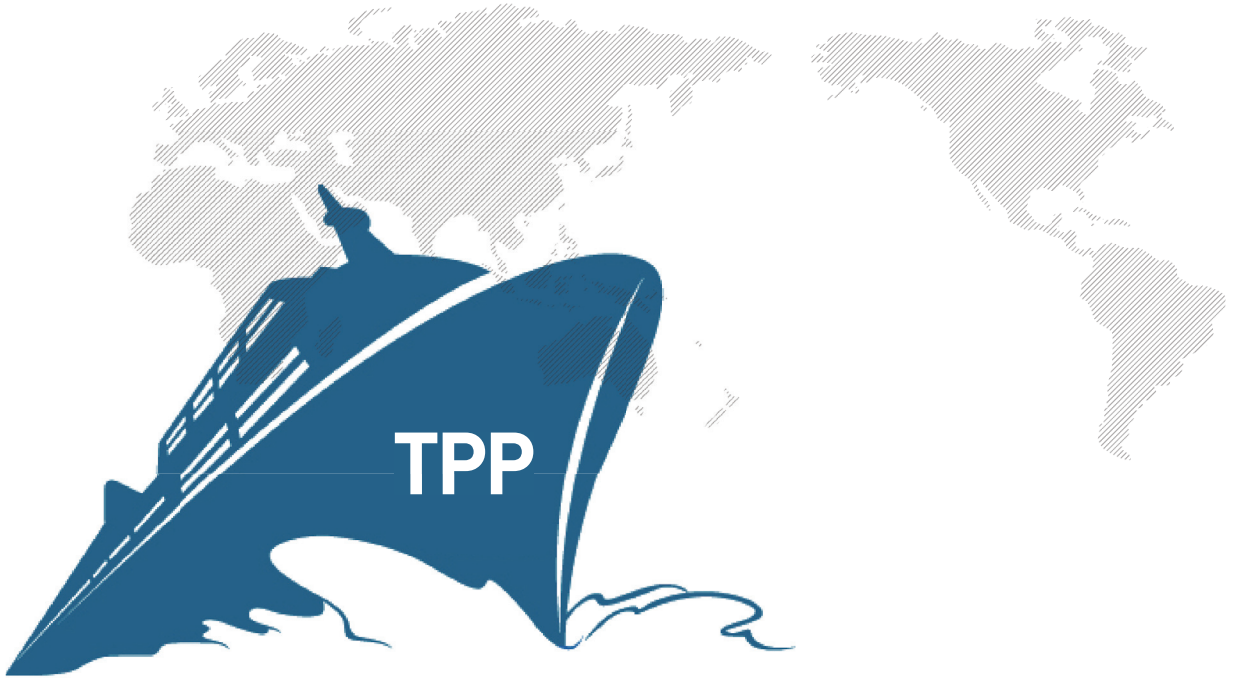
그러나 완성차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올해부터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

전자업종의 경우 일본산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사라질 경우 그만큼 일본 전자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한국 전자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이기 때문에 TPP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섬유업종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TPP 역내 국가는 역외 국가인 중국보다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전체 의류 수출의 46.7%(89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3위 수출국)에는 24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의 10대 의류 수출기업 중 7개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이중 4개사가 우리나라 진출기업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투자국이며 500여 개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TPP를 통한 베트남의 섬유산업 성장은 현지 우리 의류생산 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대부분의 섬유 원료를 중국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다. 우리 의류 관련 기업들이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혜택은 배가 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수출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TPP 협상 참여국도 아니다.



03. 우리의 대응방안

TPP가 발효되기 전까지 향후 2-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는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의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TPP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사실상 한일 FTA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본 입장에서 TPP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뒤쳐져 있던 FTA 진척도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하게 된다면 미국 등 거대시장에서 누렸던 선점효과는 곧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미일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 흐름에서 한 걸음 뒤쳐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TPP 협상의 세부내용이 확정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아울러 가입 또는 불참시 실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또는 불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TPP 발효는 시점의 문제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TPP 발효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FTA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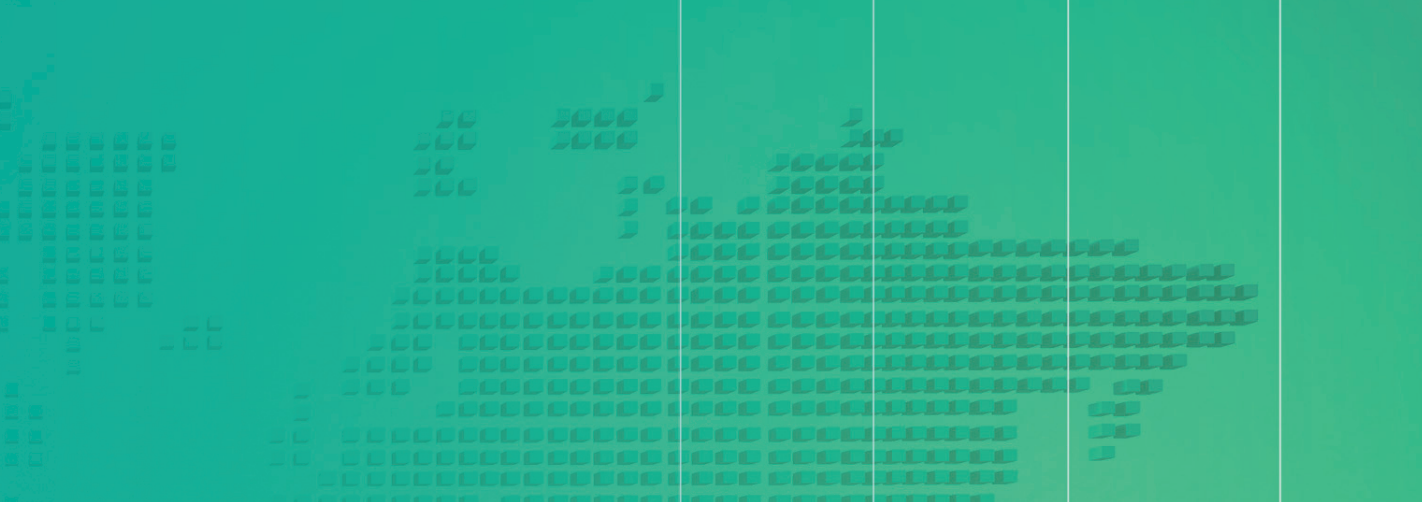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관세청 FTA 동향

우리나라 FTA 동향

해외 FTA 동향

미리보는 한-콜롬비아 FTA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최근 동향 관세청 FTA 동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0일, 수출 돌파구를 찾다! (2016.03.25.)

- 관세청,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성공 위해 총력 지원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총력 지원한 결과, 최근 열악해진 대(對)중국 수출환경에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중 FTA 발효 전부터 '한-중 FTA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개편* (85명→118명) 하여 지원 기반을 구축했고, 관세 즉시철폐품목 등 활용실익이 큰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1,77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 기업지원·홍보 중심 →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수출자인증 지원 확대

또, 'FTA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FTA 필수 정보를 2만여개 대(對) 중국 수출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한 성공사례들을 발굴했다.



#1. 새벽공기를 뚫고 열린 한-중 FTA “1호 수출”

- 지난해 12.20일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세관으로부터 1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한 A사. 발효 당시 서울세관의 지원으로 발빠르게 바이어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 덕분에 발효 후 100일이 지난 현재 중국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100%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다. FTA 활용에 자신감이 생긴 A사는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지원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2. 한국의 수산물,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 국내산 활전복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사는 중국으로의 수출경험이 전무한 소규모 생산·도매 기업. 전복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경쟁 심화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던 중 무리하게 전복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 B사는 광주세관의 한-중 FTA 활용 컨설팅을 받아 관세 14%의 고관세율을 적용받던 활전복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는 전복통조림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게 된다. 현재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바이어와 30만불의 전복통조림 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3. 한류가 가져온 기회 FTA로 결실을 맺다.

- C사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여행용 가방을 제작하고 주로 국내에 유통하여 연간 20억의 매출을 내는 소규모 기업. 국내 여행용 가방 및 소재 생산 업계는 생산을 포기함에 따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었다. C사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대형기획사와 중국 수입판매업체가 합작한 브랜드 여행가방을 제작해줄 것을 제안받게 된다.
-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줄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FTA 활용 경험이 없었던 C사는 향후 짊어질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인천세관을 찾게 된다. 결국 C사는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무사히 발급받아 50억원의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다. C사는 수출시장 다변화로 추가적인 수출 증대 및 사양산업이던 여행용 가방·소재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일본, 미국, 독일 등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은 관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FTA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직접 찾아가는 집중 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YES FTA 버스'(이동상담부스)를 활용하여 차이나센터 세관직원과 각 센터에 배치된 공익 관세사(105명)가 합동으로 현장 지원

** 세관이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로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2시간 이내 발급

*** FTA 취약산업인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입증서류 간소화(농지원부 등 3~5종 → 품질인증서 등 1종)

또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관(북경, 상하이) 및 FTA 차이나 협력관(대련, 천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한-중 세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16년 7월)하여 중국 내 통관단계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등 원산지심사 간소화로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국 해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사후에 관세 혜택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상담을 실시하고, 중국 해관의 검증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중국 해관의 자의적인 품목분류, 통관지연, 협정해석 상의 등 FTA 통관애로 지원 및 중국 바이어 또는 한국진출 희망 중국기업에 대한 FTA 홍보·컨설팅 제공

관세청은 최근 열악해진 대(對) 중국 수출환경 하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2016.03.29.)

-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발간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①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
- ②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
 ⇒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
- ③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관련 빈번 질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운 품목분류업무, 실무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세요(2016.03.30.)

- 4월 1일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 개최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4월 1일 (금) 오후 1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분류하여 정하는 행위로서, 이번 설명회는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인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는 현재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품목분류관련 제도 등 이론적인 내용 외에도,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활용방법 등도 자세히 다루었다.

우선, 2017년 HS 주요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되었다.

또한, 품목분류 정보활용을 위한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법과 이와 연계된 4세대 국종망 '관세법령정보포털 3.0(CLIP3.0)' 소개 시간도 마련되어 관세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품목분류관련 해외 현지 세관과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안내되었다. (☞ 사례 참조)

분류원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사례

- A사는 '14년부터 인도에 수출한 도시철도용 전동차(Trailer Car) 57량에 대해 품목 분류 오류를 이유로 43억 2천만 원의 관세추징 및 임의 처분정지 명령 통보를 받았다.[8603.10호, 세율 0% → 8605.00호, 세율 2.5%]
- A사에 대한 인도 관세조사국의 소환조사 및 수출물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민간기업 혼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에서, 수주공사 불가에 따른 대규모의 손해배상까지 발생하는 등 전략적으로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넘어설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 인도 무역 통관환경은 러시아(62위), 중국(90위), 브라질(120위) 보다 낮은 142위(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FTA 발효이후 분쟁빈도도 증가 추세임.
- 이에 A사는 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지원요청을 하고, 분류원과 함께 품목분류 대응 논리와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받아 '15년 7월 WCO 안건 상정 및 '16년 4월 제57차 WCO HS위원회 상정을 통해 무관세 품목(제8603호)으로 결정받았다. 이는 우리 수출업체의 인도 전동차 수출길에 고삐를 풀어준 계기가 되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사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FTA분야에 대한 현장상담도 진행되었다.

관세청과 분류원은 기업들의 품목분류 및 FTA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세관에서도 현장 상담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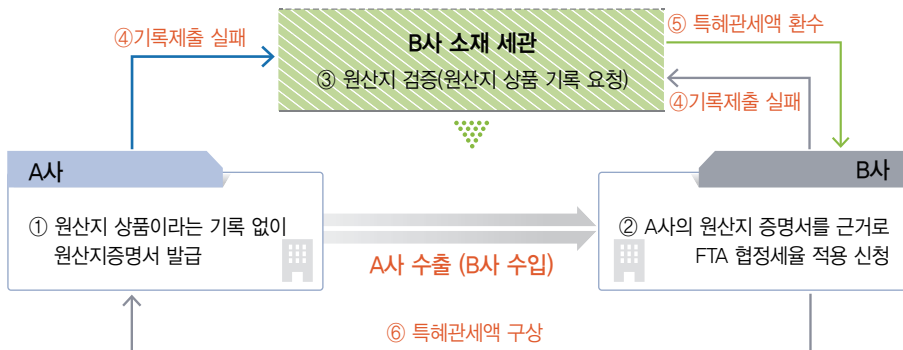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근거기록 없으면 낭패(2016.03.31.)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발급의 근거가 된 기록의 관리에도 힘써야 -

- 수출기업 A사는 해외 거래처인 B사가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고자 한다며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A사는 큰 고민 없이 자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정보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 상대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했고,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A사는 결국 기록 제출에 실패, 수입자인 B사는 혜택을 받았던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 A사는 검증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B사는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A사에 납부세액 배상을 요청하여, A사는 FTA 활용은 커녕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례 개요



관세청은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FTA를 활용,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을 하고자 하려면 대부분 계약상대방 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는다.

*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혜택과 책임'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해 사후에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 협정별로 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의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발급기관의 검토가 없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조미 김' (2016.04.07.)

- 수출 '쑹쑹',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뚜렷 -

우리나라 조미 김이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중국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미 김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93%('11년 : 1억 2천만 달러 → '15년 : 2억 2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이 5.1% 감소(5,552억 달러 → 5,268억 달러)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대표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관세 즉시 철폐(6% → 0%)에 힘입어 대(對)미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FTA 2년차인 2013년부터는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 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 기세도 매서워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대(對)중 수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4천만 달러 → 6천만 달러)했고, 올해 1~3월도 전년 동기대비 22.1%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대(對)중 수출이 대(對)미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 김은 한-중 FTA 발효로 15%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며, 발효 2년차인 올해는 13.5%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나가, 아세안으로는 '15년 기준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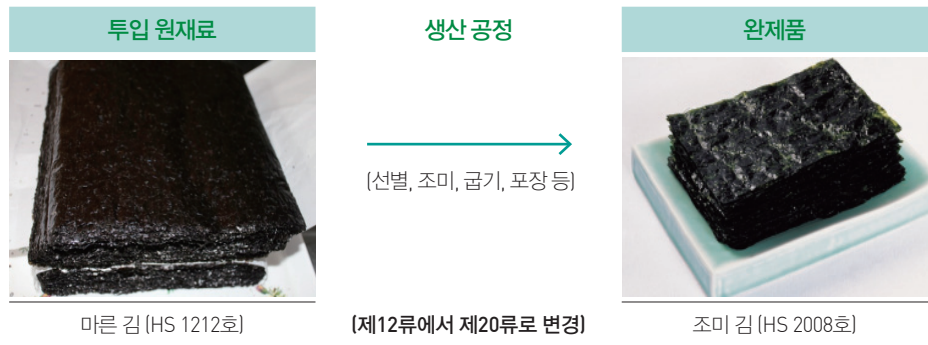
23.5%(1천만 달러 → 1천 2백만 달러), 유럽연합(EU)으로는 27.2%(8백만 달러 → 1천 1백만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미 김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은 '국내에서 원재료 김이 생산 공정을 통해 완제품인 조미 김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이 매우 용이하다고 밝혔다. (☞ 하단 예시 참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또는 미국산) 원재료 김을 사용해 제조되어야만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

조미 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코드(HS) 2106호에 분류되나, 미국과 중국에서는 HS 2008호로 분류되고 있다.

〈 예시 : 중국에서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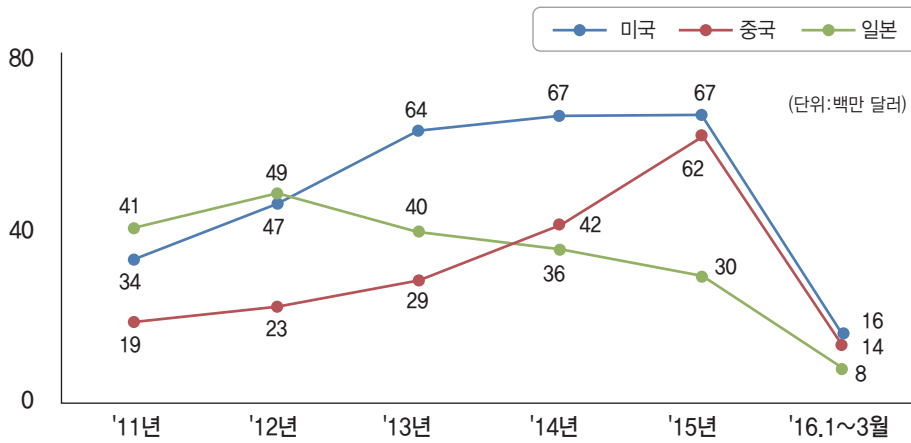
관세청은 조미 김을 포함한 우리의 농수산식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 상담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조미 김의 최근 5년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불,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1-3월
미국	33.5 (66.8)	47.0 (40.0)	63.6 (35.5)	67.1 (5.4)	67.2 (0.2)	16.3 (0.6)
중국	19.4 (126.1)	22.5 (16.1)	29.0 (28.7)	41.8 (44.2)	62.2 (49.0)	13.8 (22.1)
일본	40.8 (59.0)	48.9 (19.7)	40.2 (-17.8)	35.7 (-11.2)	29.5 (-17.2)	8.0 (11.6)
세계	116.2 (63.8)	153.0 (31.6)	180 (17.8)	202.5 (12.3)	224.3 (10.8)	53.2 (5.8)

【참고2】 주요 3국으로의 수출 현황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2016.04.25.)

-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개척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00일('16. 3. 28.)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 원산지 사전확인 :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되었으며,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한-중 FTA 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FTA 관련 규정과 더불어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업을 통해 한-중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중국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세관이나 중국현지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차이나 협력관 : 우리 수출기업의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천진, 대련)에 파견된 관세청 FTA 전문가

관세청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발굴·시행할 방침이며, 맞춤형 FTA 상담, 검증대응 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은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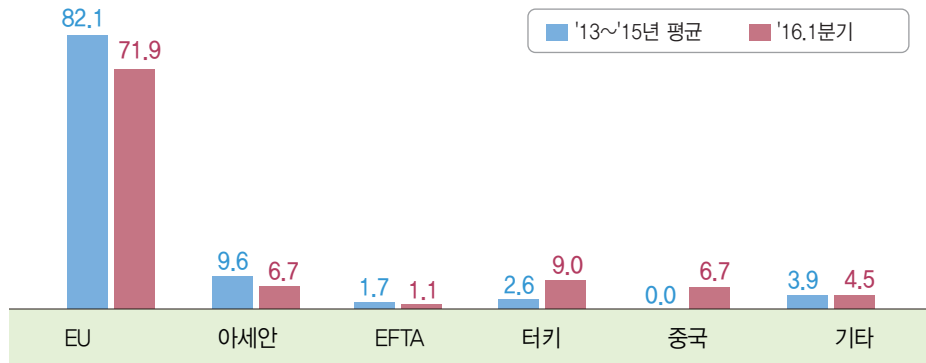
관세청 2016년 제2호 FTA원산지검증 동향 제공(2016.04.28.)

- 2016년 1분기 수출물품 검증 현황 한눈에 -

관세청은 지난 4월 28일 관세청 2016년 제2호 FTA원산지검증동향을 발표하였다. 'Verification Statistics'에서는 검증 동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2016년 1분기 수출물품의 협정별 검증의 결과, EU측의 검증요청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터키와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터키의 경우 '16년에는 덤핑방지관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까지 검증요청을 확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중 FTA 뿐만 아니라 AP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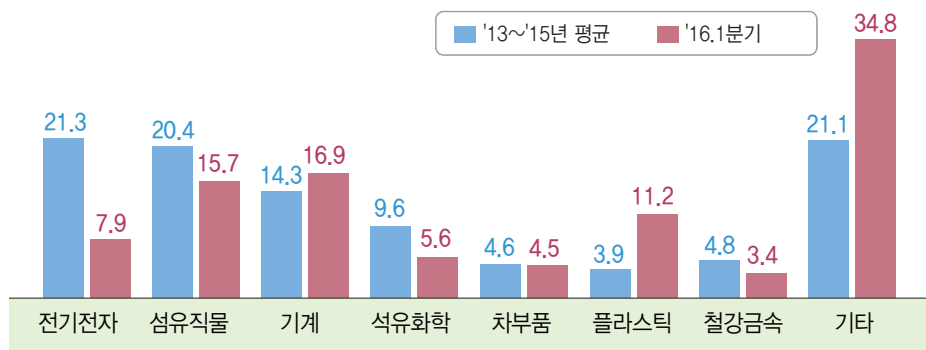
〈'16.1분기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2016년 1분기 수출물품의 품목별 검증은 기계류 섬유·직물,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검증요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작위 선별'에 의한 검증요청이 증가하면서 검증요청 품목이 다양화되어 '기타 품목*' 비율이 증가하였다.

* 화학공업제품, 농림수산물 가공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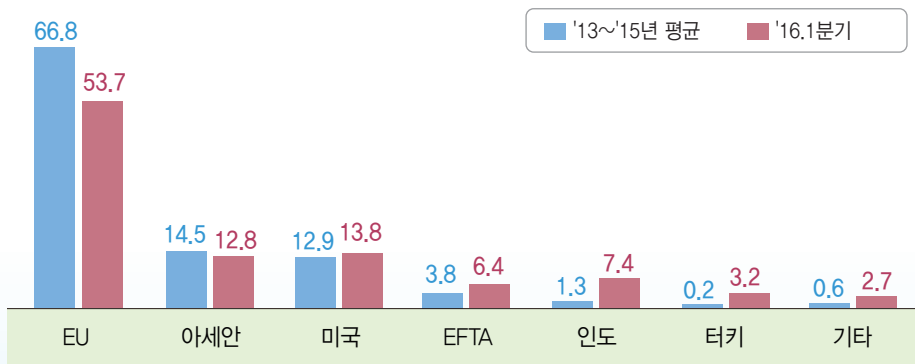
〈'16.1분기 품목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마지막으로 2016년 1분기 수입물품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EFTA, 인도, 터키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검증의 소폭 증가가 확인된다. 특혜세율이 배제된 주요 사유로는 원산지증명서류 위반, 자료보관 위반*(한-미)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원산지 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원산지증빙자료의 확보 및 보관에 각별에 유의 요망

〈'16.1분기 협정별 수입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한국산 세탁기 FTA 타고 '오세아니아' 수출 훈풍 (2016.05.03.)

한국산 세탁기가 최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된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넓히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세탁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223만 불 → 617만 불)했다.

지속되는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세탁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으나, 대(對) FTA체결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2,190만 불 → 2,547만 불)하여 수출 감소폭을 만회했다.

우리나라 세탁기의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은 미국, 호주, 이란 순으로, 비(非) FTA체결국인 이란으로의 수출은 최근 3년간 77% 감소('13년: 3,503만 불 → '15년: 798만 불)했다.

반면, 호주로의 수출은 한-호주 FTA 발효('14년 12월)로 관세(5%)가 즉시 철폐된 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2.1% 증가(1,212만 불 → 1,601만 불)했고,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218만 불 → 574만 불)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호주는 3년 전 6위 수출국에서 올해 4계단 상승한 2위 수출대상국이 됐다.

지난해 12월 FTA가 발효된 뉴질랜드로의 수출도 급증해, 관세(5%)가 즉시 철폐된 후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6% 증가(6만 불 → 43만 불)하여, 지난해 수출액(89만 불)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했다.

한편, FTA 정보분석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세탁기의 FTA 특혜세율 적용요건이 수출 대상국에 따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변경기준'이 FTA 특혜적용 요건이다.

(☞ 하단 예시 참조)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품목분류번호 변경기준' 외에도 '역내산(産) 재료가 상품가격의 40%이상'이어도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품목이라도 각 협정마다 FTA 특혜세율 적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원산지관련 서류를 협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앞으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사후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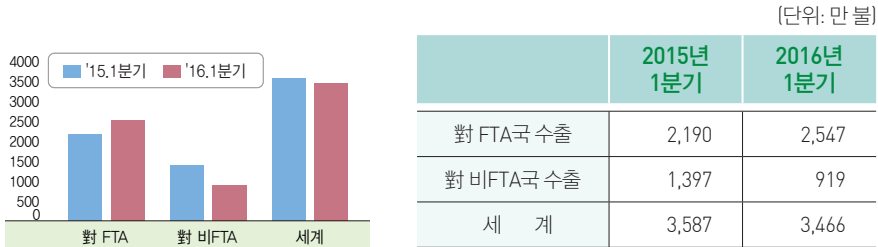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 한-미 FTA에서 세탁기 특혜세율 적용요건 : 품목분류번호(HS) 6단위 변경기준

〈 원재료 〉			→ (제조·공정)	〈 완제품 〉
품명	품목분류번호	원산지		품명(품목분류번호)
세탁기 모터	HS 8501.30	역내산 (한국 또는 미국산)		세탁기 (HS 8450.11)
세탁기 부분품	HS 8450.90	역외산 (역내산 외)		

- 역내산 원재료(세탁기 모터)는 품목분류번호(HS) 변경여부 검토 불필요
- 역외산 원재료(세탁기 부분품)와 완제품(세탁기)의 품목분류번호가 서로 다르므로 특혜세율 적용 요건 충족

【그림】세탁기 수출금액 및 증감률



【참고】자동세탁기(HS 8450.11-0000)의 최근 3년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불,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3월
미국	12.6	5.3 (-58.3)	5.8 (10.2)	7.6 (21,485.4)
호주 ('14.12월 FTA발효)	10.7	12.1 (13.0)	16.0 (32.1)	5.7 (163.6)
이란	35.0	16.7 (-52.2)	8.0 (-52.3)	3.8 (44.2)
중국	2.7	20.0 (634.5)	17.4 (-13.1)	3.1 (-28.1)
뉴질랜드 ('15.12월 FTA발효)	0.9	1.2 (41.3)	0.9 (-28.1)	0.4 (676)
전체	185.6	160.3 (-13.6)	129.0 (-19.5)	34.7 (-3.4)

FTA 활용,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2016.05.16.)

- 기업지원 시 취득한 업체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시행 -

관세청은 5월 1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가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체의 우려가 있어왔다.



사례 1

FTA 상담 요청을 받고 A사를 방문한 세관직원이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A사는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꺼림에 따라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례 2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불안감 없이,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8대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2016.05.25.)



관세청은 5월 2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8대 천홍욱 관세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없애고, 관성적인 야근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대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관세청장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파리테러, 자카르타 테러 등 국제 테러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른다”며 “다른 사람들은 기우(杞憂)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테러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물품의 밀수를 100%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등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는 안 된다.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불량 먹거리, 마약류, 테러물품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102개 확대 (2016.05.27.)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하였다고 공고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큐알(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관표지교부 추이〉

연도	횟수
2013년	405,602건
2014년	1,707,591건
2015년	1,372,251건
2015년 4월	503,699건

〈품목별 교부현황〉

[단위: %]

품목	비율
의류	33
신발	29
가방	16
지갑	7
벨트	5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화장품 상표는 NIVEA, PHYSIOGEL, CHAP STIC, LA MER 등이고, 시계는 BREITLING, RADO 등, 공구는 BOSCH 등이며,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용품 등 23개가 추가되었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만을 판매하는 지식재산보호 쇼핑몰(‘알람물’ www.alrammul.com)이 개장되었으며, 이 알람물에서 판매된 물품이 모조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및 해당 사이트에서 일괄 사후서비스(A/S)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표지는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표지를 잊지 않고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2016.06.07.)

-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 펼쳐 -

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6월 3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이 있었다.

*이전가격(移轉價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예: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 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

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관세당국에서 개입·검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 업무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2016.06.09.)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 공유·확산 -

관세청은 6월 8일(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서는 '① 특혜적용 요건 위반', '②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③ 소비자·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의 분야에 출품된 총 27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0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특혜 세율차가 큰 녹두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고영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역외산 비원산지 재료 사용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부당특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현주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자동차 구동차축(軸)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한 광주세관 최정욱 관세행정관과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이 상이한 홍차에 대해 분석한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정책연구팀의 박진우 전문연구원 등 4명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원산지검증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FTA 최근 동향 **우리나라 FTA 동향**

한-미 FTA 발효 4년, 對미 수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2016.03.14.)

- 전년 대비 수산물 수출 6.8%, 수입 4.1% 증가 -

한-미 FTA 발효 4년차('15년)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5.4% 늘어난 479백만 달러로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출 증대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교역: ('11)336백만 달러 → (1년차)368 → (2년차)439 → (3년차)454 → (4년차)479

* 수지: ('11)26백만 달러 → (1년차)14 → (2년차)▲4 → (3년차)▲20 → (4년차)▲15

對미 수산물 수출은 232백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주요 품목인 김의 수출이 소폭(0.8% ↑) 증가한 가운데, 이빨고기(23.0% ↑), 굴(28.5% ↑), 오징어(10.8% ↑), 넙치(18.0% ↑) 등의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 수출: ('11)181백만 달러 → (1년차)191 → (2년차)218 → (3년차)217 → (4년차)232

발효 4년차 수산물 수입은 24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는데, 관세 인하 및 저율할당관세(TRQ)의 효과로 명태(18.2% ↑), 가자미(9.6% ↑), 먹장어(9.1% ↑), 아귀(14.0% ↑)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들 품목의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미 FTA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입: ('11)155백만 달러 → (1년차)177 → (2년차)221 → (3년차)237 → (4년차)247

한편, 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총 수산물 교역규모는 1.4% 감소하였으며(6,573백만 달러 → 6,480백만 달러), 수산물 수출액은 6.9%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1% 증가했다.

〈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산물 교역 현황 〉

(단위: 백만\$, 전동기비%)

	발효 전('11)		발효1년차('12)		발효2년차('13)		발효3년차('14)		발효4년차('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對세계	2,308	4,192	2,361 (2.3)	3,977 (▲5.1)	2,151 (▲8.9)	3,895 (▲2.1)	2,067 (▲3.9)	4,506 (15.7)	1,924 (▲6.9)	4,556 (1.1)
對미국	181	155	191 (5.5)	177 (14.2)	218 (14.0)	221 (24.8)	217 (▲0.2)	237 (7.2)	232 (6.8)	247 (4.1)

〈對미 주요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

구분	발효전 ('11)	1년차 ('12)	2년차 ('13)	3년차 ('14)	4년차 ('15)	증감률			
						발효전 대비	1년차 대비	2년차 대비	3년차 대비
총수입	180,877	190,897	217,549	217,067	231,763	28.1	21.4	6.5	6.8
김	38,669	51,259	67,300	70,917	71,512	84.9	39.5	6.3	0.8
이빨고기	23,075	26,195	25,720	24,512	30,156	30.7	15.1	17.2	23.0
기타어류	27,794	31,079	30,470	28,599	27,603	▲0.7	▲11.2	▲9.4	▲3.5
굴	21,446	5,365	14,626	13,508	17,352	▲19.1	223.4	18.6	28.5
오징어	15,835	19,946	13,104	14,358	15,902	0.4	▲20.3	21.4	10.8
넙치	5,279	7,547	9,829	11,918	14,062	166.4	86.3	43.1	18.0
미역	6,036	5,816	5,431	5,253	6,319	4.7	8.7	16.4	20.3
멸치	6,668	5,146	6,679	6,489	5,792	▲13.1	12.6	▲13.3	▲10.7

〈對미 주요 수산물 수입 현황〉

(단위 : 천\$, %)

구분	발효전 ('11)	1년차 ('12)	2년차 ('13)	3년차 ('14)	4년차 ('15)	증감률			
						발효전 대비	1년차 대비	2년차 대비	3년차 대비
총수입	155,279	177,388	221,372	237,395	247,137	59.2	39.3	11.6	4.1
명태	37,146	42,519	52,999	61,269	72,436	95.0	70.4	36.7	18.2
바닷가재	830	1,819	21,269	41,288	38,473	4537.9	2014.7	80.9	▲6.8
가자미	20,891	26,859	24,019	25,239	27,654	32.4	3.0	15.1	9.6
먹장어	11,178	13,236	17,792	16,727	18,242	63.2	37.8	2.5	9.1
아귀	13,777	13,455	10,913	10,165	11,586	▲15.9	▲13.9	6.2	14.0
대구	9,606	7,599	7,728	7,585	10,654	10.9	40.2	37.9	40.5
홍어	7,843	8,923	7,113	6,028	6,402	▲18.4	▲28.3	▲10.0	6.2
기타어류	2,685	7,956	2,955	9,250	6,129	128.2	▲23.0	107.4	▲33.7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자료

한-중 FTA의 실질적 산업협력의 틀 마련 및 교역 활성화(2016.03.18.)

- 한-중 FTA 이행 위원회 연1회 이상 개최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연내 조기 개시 -

한-중 양국은 FTA발효 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중 FTA 이행체널을 연 1회 이상 가동하고, 양국간의 서비스·투자의 확대를 위해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도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FTA 이행체계 : 공동위원회, 13개 분야별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소작업반

또한, 양국간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통상현안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3월 17일(목), 중국 북경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으로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컨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2016.03.22.)

-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 및 「농림수산 교육협력 약정」 체결 -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도 연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첫번째 공동위원회**를 3월21일(월) 오후(현지시각 15시)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

* 한-뉴질랜드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3월 서명, '15.12.20 발효

**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발효 1년내에 첫번째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한-뉴질랜드 FTA 제18.3.1조)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지 정확히 3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FTA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활용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시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의가 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측에서 마틴 하비(Martin Harve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약', 그리고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등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분야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 '한-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세부 이행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빈틈없이 점검·협약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내 개최 원칙에 합의,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의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기로 하였으며, FTA 성과 시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상호 평가기로 하였다.

〈 한-뉴질랜드 연도별 무역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1~2월
수출	금액	825	891	918	1,104	1,465	1,491	1,730	1,263	169
	증가율	18.0	8.0	3.1	20.2	32.7	1.7	16.1	▲27.0	▲24.2
수입	금액	1,122	879	1,176	1,474	1,339	1,395	1,526	1,224	179
	증가율	▲4.2	▲21.6	33.7	25.4	▲9.2	4.2	9.4	▲19.8	▲20.1
무역규모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2,487	348
증가율		4.1	▲9.1	18.3	23.1	8.8	2.9	12.8	▲23.6	▲22.1
무역수지		▲297	11	▲257	▲370	126	95	204	39	▲10

〈 2016년 2월 한-뉴질랜드 품목별 교역현황 (백만불, 전년대비%), MTI 4단위〉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휘발유 (1331)	54	▲36.2	기타석유화학제품 (2190)	47	▲32.7
2	경유 (1332)	44	▲26.5	원목 (0311)	41	▲20.5
3	승용차 (7411)	35	▲21.3	낙농품 (0243)	29	19.9
4	합성수지 (2140)	8	▲15.4	가축육류 (0221)	20	▲2.5
5	건설중장비 (7251)	7	▲23.7	원유 (1310)	13	0.0
6	화물자동차 (7412)	6	7.5	펄프 (2511)	12	0.5
7	제트유및등유 (1333)	6	▲9.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211)	11	2.1
8	복합비료 (2340)	4	8,250.5	단백질류 (0245)	6	▲6.9
9	축전지 (8352)	4	8.2	제재목 (0312)	5	▲2.6
10	등조가공품 (6222)	3	▲37.5	동물성한약재 (0233)	4	110.7
	총계	171		총계	188	

〈 한국의 對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28	34	27	13	20	22	16	27	19	19
증가율	▲12.5	21.4	▲20.6	▲51.9	53.8	10.0	▲27.3	68.8	▲29.6	0.0
금액	22	38	16	13	15	49	23	13	79	9
증가율	▲10.2	77.4	▲58.7	▲14.7	9.6	230.4	▲52.4	▲42.5	490.7	▲88.3

〈 뉴질랜드의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3	5	1	4	7	4	5	3	6	3
증가율	▲70.0	66.7	▲80.0	▲87.9	300.0	75.0	▲42.9	25.0	100.0	▲50.0
금액	0	0	0	0	30	0	0	0	0.9	0.4
증가율	▲100.0	-	-	-	-	▲100.0	-	-	-	▲46.6

〈 한-호주 연도별 무역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년 2월
수출	금액	4,692	4,691	5,171	5,243	6,642	8,164	9,250	9,563	10,283	10,839	1,249
	증가율	23.1	0.0	10.2	1.4	26.7	22.9	13.3	3.4	7.5	5.4	▲51.7
수입	금액	11,309	13,232	18,000	14,756	20,456	26,316	22,988	20,785	20,413	16,451	2,442
	증가율	14.7	17.0	36.0	▲18.0	38.6	28.6	▲12.6	▲9.6	▲1.8	▲19.4	▲20.6
무역규모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48	30,696	27,290	3,691
증가율		17.0	12.0	29.3	▲13.7	35.5	27.2	▲6.5	▲5.9	1.1	▲11.1	▲34.8
무역수지		▲6,617	▲8,541	▲12,829	▲9,513	▲13,814	▲18,152	▲13,738	▲11,222	▲10,130	▲5,612	▲1,193

〈 2016년 2월 한-호주 품목별 교역현황 (백만불, 전년대비%), MTI 4단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해양구조물 (7462)	1,144	4,647,117.4	유연탄 (1322)	799	▲22.7
2	경유 (1332)	254	▲15.5	철광 (1120)	686	▲31.9
3	승용차 (7411)	239	▲20.8	천연가스 (1340)	304	658.1
4	휘발유 (1331)	192	107.8	가축육류 (0221)	193	30.4
5	철구조물 (6152)	129	▲43.0	동광 (1130)	160	14.8
6	선박 (7461)	94	0.0	원유 (1310)	137	▲61.3
7	제트유및등유 (1333)	60	▲22.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211)	115	0.3
8	자동차부품 (7420)	29	▲40.0	아연광 (1160)	87	44.1
9	선박용부품 (7464)	24	75,582.3	기타금속광물 (1190)	72	▲17.1
10	합성수지 (2140)	21	▲15.5	무연탄 (1321)	72	▲15.0
	총계	2,186		총계	2,625	

〈한국의 對호주 연도별 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72	79	115	135	122	107	90	78	79	66	68
증가율	76	10	46	17	▲10	▲12	▲16	▲13	1	▲16.5	1.5
금액	133	189	155	653	1,251	766	4,142	4,407	1,715	807	658
증가율	66	43	▲18	321	92	▲39	440	6	▲61	▲53.0	▲21.7

〈호주의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25	30	24	35	33	24	22	27	22	24	31
증가율	▲7	20	▲20	46	▲6	▲27	▲8	23	▲18.5	9.1	29.2
금액	51	923	46	68	224	7	90	152	50	139	85
증가율	▲6	1,710	▲95	48	229	▲97	1,186	69	▲67.1	178.0	▲39.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수산분야 FTA” 어업인과 소통 확대 (2016.03.23.)

- 어업인, 수산업계 등과의 현장 소통에 역점, 대국민 홍보도 강화 -



- “정부에서 여러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아요. FTA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어업인A, 어업인 간담회, '15.11월)
- “FTA가 발효되면 좋은 수산물을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수산물이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대학생B)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어업인·수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FTA를 활용해 수산업을 수출형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중미 FTA 등 다자협상과 에콰도르 등 신흥국과의 FTA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수산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 FTA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일본 등 12개국이 체결한 FTA로 전세계 GDP의 38% 차지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과 수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협상 전략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이해당사자 설명회를 개최(연 20회)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및 협력사업 발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수산분야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연 5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유용한 FTA 정보 및 긍정적인 효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해수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퀴즈이벤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의 목소리를 협상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산분야 FTA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알려서, FTA가 수산업계에게는 도약의 기회로,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국 13개 시·도 「지역 차이나데스크」 개소 (2016.03.30.)

- ①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하여 지방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중 FTA 활용지원
- ② 본부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활용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5.12.20.) 100일을 계기로 지방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전국 13개 시·도에 설치하고 FTA 활용 컨설팅 및 지역 FTA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기업의 한-중 FTA 활용기반을 통한 수출 활성화 촉진 및 애로해소(비관세장벽 등)를 위해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서울본부) 내 「차이나데스크」를 설립 운영해 왔다.

한-중 FTA 본격 발효 이후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상담에 따른 현지 방문컨설팅 요청 및 지역 FTA설명회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15년 FTA활용상담 실적 : 7,891건, 전국 FTA 설명회(22회) 실시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3개 주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역협회 지부내 지역 차이나데스크 창구를 마련하여 전담직원 및 퇴직무역전문가를 배치하여 한-중 FTA활용 상담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 차이나데스크는 해당 지역기업의 한-중 FTA활용 상담에 우선 대응하고,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대상기업 발굴 및 지역 FTA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본부 차이나데스크는 지역에서 발굴된 FTA 활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심화 컨설팅제공 및 본부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판로), 대한상의(원산지 증명), aT센터(농업), 중국인증전문가, 변호사(지식재산권)등의 원스톱 상담지원 등 한-중 FTA 활용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부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13개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다양한 FTA 활용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실무협상 개최(2016.04.0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실무협상이 4. 5.(화) ~ 8.(금),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을, 중국측은 홍샤오동(洪曉東)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측은 사토 타츠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협상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하였다.

한중일 3국은 `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자유무역협정(FTA) 원칙”하에 지금까지 9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 양국정부 손잡았다! 한-중 합동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 개최 (2016.04.14.) - 베이징서 중국 바이어 및 중국진출 우리기업 대상 한-중 FTA 활용 홍보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코트라(KOTRA)와 함께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CCPIT) 등 중국정부와 손을 잡고 4월15일(금) 중국 베이징 상그릴라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한-중 합동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를 가졌다.

본 설명회는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초기부터 한-중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토록 하자는 양국 정부의 합치된

의지를 토대로 성사되었으며, 중국 바이어, 중국진출 우리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현지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금번 설명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홍보대상을 “중국 바이어(수입업체)로 선정” 했다는 점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합동 개최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후동 통상국내대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원인의 40%가 상대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에 따른 것임을 착안해, 현지 바이어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인식확산 및 한-중 기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번 합동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무엇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대중 수출이 점차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베이징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 자문단 간담회”에서는 현지 FTA 활용 컨설팅을 위해 위촉된 자동차부품, 소비재 등 15개 분야 자문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현지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애로 및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대중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트라(KOTRA) 중국무역관내* 자유무역협정(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통관·물류 등 수출입 업무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센터 방문고객 상담은 물론 현지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개 지역

설명회와 동시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일대일 상담회에는 자유무역협정(FTA)해외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관세법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지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교육도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필두로 산업부는 코트라(KOTRA) 중국무역관을 통해 현지 유력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일대일 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중국 바이어 및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인식확산을 위해 연중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세계경제 및 중국 내수불황 등과 맞물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직후인 1~2월간의 대중 수출이 부진한 면이 있으나, 관세인하 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성장전략에 맞춰 자유무역협정(FTA)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원산지증명, 비관세장벽 등의 주요 애로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대응·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2016.05.18.)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아태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016.5.17(화)~18(수)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21개국 APEC 회원국 대표들과 아태지역 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 등 최근의 다자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아태 지역 통상장관들이 모여 “질 높은 성장과 인적 개발”을 주제로, ① 다자무역체제 지지 ② 지역경제통합 증진 ③ 중소기업 국제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첫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WTO의 협상 기능 활성화와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세계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① 보호주의조치 동결 약속을 2020년까지 연장 ② 기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정의

조속한 발효 ③ WTO의 협상 기능 활성화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상장관회의 성명서에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두번째로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이 아태 지역을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금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FTAAP(에프탑)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14.11월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FTAAP 경제효과 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15~'16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아울러,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경제 성장과 교역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공동된 인식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차관보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사업과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FTAAP가 회원국간 정치·경제·개발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브루스 허쉬 미국 USTR 대표보, 에드가 바스케즈 페루 통상관광부 차관, 키얼스틴 캐나다 힐만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을 만나 APEC 차원의 협력방안과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2016.05.27.)

- 통상교섭실장 주재,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인 수출부진 상황에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해소를 위하여 '16.5.26(목) 오후 3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주요 참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분야별 협회, 단체(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자정보통신, 화장품, 식품, 저작권 등),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그간 분기별로 개최('14.12., '15.3.)해 왔으며, 이번의 경우에는 업계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발효 초기 단계 자유무역협정(FTA)인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심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계 간담회에서는 ▲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① 업계가 여러 계기에 제기했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현지 공관 등 활용)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현안 해소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높였다.

〈 업계애로 해소사례 (예시: 한-아세안 FTA) 〉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상 인정하지 않았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업계의 요청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협의하여 이를 인정토록 한 사례
 - 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통해, '08.7월 부터 수차례 협의한 결과 '13.6월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키로 합의하고 각국 세관에서 인정키로 하였으며, 향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반영('16.1발효)

②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최근 발효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원산지·통관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 해소해 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현장의 수출 애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자유무역협정(FTA)관련 개선사항은 언제든지 정부에 제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지 공관에 전달하여 즉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기구*를 활용하여 상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게 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2016.06.01.)

- 한-베 FTA 활용 기회 발굴·애로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

'16.6.1(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점검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 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16.6.1(수) 11:50~12:10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 참 석 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이호동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 따 황 링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베 FTA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측 경제의 우호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상국내대책관과 무역진흥청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현안 발굴, 상황 점검을 추진하며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양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회의 발굴과 비관세장벽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박람회, 컨퍼런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조사, 교육, 홍보 등 한국의 우수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기반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7.15(금) 발효 예정 (2016.06.16.)

-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 -

지난 '13.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여 '16.7.15일(금)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측은 지난 '14.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같은 해 5월 콜롬비아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콜롬비아는 동 협정 이행법률이 '14.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16.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 '16.6.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15.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16.6.15) 기점으로 30일 후인 7.15일(금)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22.4조)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 GDP 3,779억불(중남미 4위))으로서,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은 국가이다.

* 경제성장률(콜롬비아/중남미 전체(%)): ('13) 4.9/2.8 → ('14) 4.4/1.4 → ('15) 3.1/0.2

**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 태평양동맹: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결성한 공동체('12.6월 출범)
- ** 한-칠레 FTA('04.4월), 한-페루 FTA('11.8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美, EU)수준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여진다.

- * 품목 수 기준: (한) 96.1%, (콜) 96.7%, 수입액 기준: (한) 99.9%, (콜) 97.8%

〈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양허 내용〉

구분	품목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등
5년 철폐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의류, 석유류 등
9년 철폐	중형 디젤 승용차(SUV) 등
10년 철폐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12년 철폐	냉장고, 세탁기 등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 콜롬비아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

농산물은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였고, 쌀, 쇠고기 등은 양허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또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접근 수준을 높이고,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투자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여 민자사업* 포함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였다.

* 민자사업 :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정부는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확산'에 기여하도록 향후 한-콜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15.4월 정상회담 계기 콜측과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 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FTA 최근 동향

해외 FTA 동향

미국 TPP 연내 비준 불투명 (2016.03.07.)

지난 2월 4일(목)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 회원국이 서명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이 미국 의회 요구 기준 미달로 연내 비준 불투명하게 되었다.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는 미치 매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보호조치 등 중요사항이 TPP 협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말레이시아-EU FTA협상 재개 합의 (2016.03.14.)

말레이시아와 EU는 지난 3년간 지연된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와 EU는 5년 전 처음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TPP 참여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4월 중순이나 말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 EU는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진행중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일본 정부, TPP승인안 의회 제출 (2016.03.14.)

지난 3월 8일(수)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11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고 회기 내에 협정 승인 및 법안 통과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일본 국회는 4월부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TPP 경제효과 이외에 관세 철폐 등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태국, 스리랑카와 FTA 체결 희망 (2016.03.21.)

지난 3월 10일(목) 스리랑카를 방문 중이던 태국 부총리 Somkid Jatusripitak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리랑카와 FTA 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태국 부총리는 스리랑카와 FTA 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의 중에 있으며 스리랑카만 동의한다면 상호협력과 번영을 위해 FTA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태국은 스리랑카와 무역 규모를 현재 연간 5억불에서 15억불로 늘릴 계획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既 체결된 중-칠 FTA 발전 논의 시작 (2016.03.28.)

칠레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국은 중국과 체결한 FTA('06.10.1.발효)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올해 3월중 발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양국 간 최초 협정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였으나 추가 협상을 통해 현재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가 추가된 상태이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통신, 환경 분야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일본, TPP 관련 국제소송 대비 전담팀 구성 예정 (2016.03.28.)

일본 정부는 TPP 발효를 앞두고 국제소송 증가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밝혔으며, 법무국 내 승무국 판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그 중 7-8명을 전담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 TPP 협정문에 투자자 국제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s Dispute Settlement) 조항 포함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중국과 FTA 추진 (2016.04.04.)

지난 3월27일(일) 메르코수르 임시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로돌포 닌노보바 외무장관은 상원 국제교류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 밝혔다.

중국은 모든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주요 사업파트너로서 남미공동시장이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호주, 인도와 FTA 협상 2개월 내에 마무리 기대 (2016.04.11.)

호주 고위 대표단은 2개월 내에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기대하며 인도와 미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할 예정이라 밝히며, 호주 전 무역장관이며 현 무역특사인 Andrew Robb은 FTA 협정이 양 당사국의 정치적 문제라면 2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호주는 낙농, 생과일, 의약품, 고기, 와인의 관세 축소를 인도는 자동차 부품, 섬유, 생과일(망고 포함)의 무관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필리핀, EU와 FTA 공식협상 시작 예정 (2016.04.18.)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필리핀과 EU간의 FTA 협정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5월에 시작하며 2~3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 중 5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14년 EU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68억 유로, 필리핀의 對EU 수출액은 57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일본, TPP 심의野 반발로 난항 (2016.04.18.)

일본정부와 여당은 중의원 TPP 특위와 대치 및 선거 악영향 등을 고려 국회 처리를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이후 처리 시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P 특위에서는 쌀과 보리, 유제품, 소·돼지고기, 사탕수수 품목에 대하여 관세 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野관세 폐지 시 농민 피해 우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EU-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협상 5월 본격 재개 (2016.04.25.)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수사나 말코라와 회담에서 5월 둘째 주에 EU와 남미공동시장 간 상품관세 철폐를 위한 논의를 재개 할 것이라 밝혔다.

EU와 남미공동시장은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며 2004년 10월부터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필리핀-EFTA와 FTA 체결 (2016.05.02.)

지난 4월 28일(목) 필리핀 통상차관 크리스토팔은 스위스 베른에서 유럽자유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14.6.23. 필리핀-EFTA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1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리핀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미국, 대선 경선 끝나면 TPP 의회 비준작업 시작 (2016.05.02.)

지난 4월 25일(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경선 레이스가 종료되는 6월 이후에 TPP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TPP를 비롯한 무역협정에 부정적인 가운데 오바마 정부는 양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기 중 비준을 마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브라질-페루 '자동차 FTA 체결' (2016.05.09.)

지난 4월 30일(일) 브라질과 페루 양국 정부 대표단은 자동차 수입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장관은 페루에 대한 연간 브라질산 자동차 수출량이 현재의 4천대에서 수년 안에 3만 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브라질은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와 유사협정을 체결했으며 파라과이와는 상반기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중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EU와 남미공동시장의 FTA 논의 본격화(2016.05.11.)

- 한동안 중단됐던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사이의 FTA 협상 가속 -

1999년부터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다 메르코수르 측의 반발로 2004년 논의가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에 EU는 새로운 무역투자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제3세계를 아우르는 EU의 포괄적인 경제협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다.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EU의 통상전략의 일부로, 이 외에 칠레나 멕시코와도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EU와 캐나다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종합협정(CE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미국과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EU 무역 커미셔너인 Cecilia Malmstrom과 우루과이 외무장관 Rodolfo Nin Novoa는 2016년 4월 초에 회동을 갖고 EU-메르코수르 간 FTA 논의를 지속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메르코수르 측은 EU-메르코수르 총 무역규모의 87%를 포함하는 관세 초안을 EU에 전달했으나, EU는 그보다 큰 91.5% 수준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EU 농민들은 육류, 유가공품 등 식품류 관세 철폐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가장 큰 농업생산국인 프랑스가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EU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최대 수출품은 농산품(43%), 원자재(28%) 등으로, 자유무역이 실현될 경우 유럽 농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르코수르도 자동차 관련 산업과 정부조달 시장의 대EU 개방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으로 개혁·개방보다는 보호주의를 선택해온 남미 국가들의 경로 의존성도 간과할 수 없다.

메르코수르는 최근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세계 주요 경제블록과의 통합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5개국의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사실에서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

특히 EU 시장과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만큼, 양측 간 내부적인 반발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메르코수르 블록은 EU 기업의 남미시장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발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코트라 & 글로벌윈도우

EU-일본 FTA 올해 타결 목표로 협상 가속화 (2016.05.16.)

지난 5월 4일(수)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 중이었던 아베 일본 총리는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올해 안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EU와 일본은 `13년 3월 FTA 협상을 시작` 15년 말까지 타결목표를 세웠으나 일본의 EU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 요구와 EU의 일본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충돌하며 교착 상태였으나 정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몽골 최초 FTA 일본과 체결(2016.06.13)

- 3년간 협상 끝에 몽·일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 -

몽·일 양국관계는 1972년 외교관계 수립, 1997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해 왔다.

2010년 11월 몽골 대통령 방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고를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EPA)' 체결에 합의하고, 2012년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몽골 총리 방일, 일본 총리 면담해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약 3년간 양국 정부 부처 관계자 100여명이 7단계의 협상 끝에 도쿄에서 2015년 2월 10일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으며, 2015년 2월 17일 '몽·일 EPA' 비준동의안이 몽골 국회를 통과해 공식 절차가 완료됐고, 같은 해 일본 측 국내 절차도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2016년 5월 8일 양국 외교부 관계자가 울란바토르에서 '몽·일 EPA' 발효를 확정하는 공식서한을 교환하면서, 30일 이후인 6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몽골 측에서 5,7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그중 3,7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1,9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소 4년에서 최대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반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8,00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1,29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 EPA는 몽골의 첫 FTA와 동격인 경제협정으로 국내 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외화 수익 증대, 대몽골 FDI 유입으로 인한 선순환 및 대외 수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의 선진 기술이 몽골에 도입되고,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통과 절차 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EPA 체결은 중·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약소국 몽골의 대외교류 균형화 및 중·러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제3이웃 정책'의 결실로, 몽골이 지역 또는 세계적 공동체에 동참해 경제 불황을 탈피하고 높은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코트라 & 글로벌원도우





FTA 최근 동향 기타 단신

산업부, 중국내 우리기업 최대투자지역인 강소성과 협력 강화키로 (2016.05.0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이핑(石泰峰) 중국 강소성 성장에 대해 5. 9(월) 서울에서 한-강소성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산업부-강소성 경제·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강소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한국의 중국투자약 20%를 차지하는 제1위 투자지역이며, 한중 교역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제2위 교역 지역으로 우리와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국 내륙시장 진출 위한 릴레이식 한류상품박람회 개최(2016.0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최근 한류가 재점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산 소비재 선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국 동북·서부 등 새로운 내륙시장 개척을 위해 5.12~2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류상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선양, 시안 등 중국 2, 3선 도시를 대중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2016.05.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양, 시안을 잇달아 방문, 선양한류상품박람회(12일),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13일)에 참석하여 중국 동부 "E서부의 새로운 내륙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미리보는 한-콜롬비아 FTA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커피로 유명한 국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있다. 바로 콜롬비아이다. 남미 서북부,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에 항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중남미 3위 시장이기도하다. 특히 콜롬비아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주요 신흥 시장국으로 선정한 “시벳(CIVET) ①” 일원으로,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이다.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역내에서 콜롬비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 세계무대로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콜롬비아FTA 협정이 오는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콜롬비아FTA 협정은 콜롬비아가 최초로 체결한 아시아권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이에 콜롬비아의 FTA 체결 동향,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와의 교역현황 및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등을 일컫는 용어

콜롬비아의 FTA 체결현황

콜롬비아는 활발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효된 FTA는 11건에 이른다. 특히 미국, EU 양대 경제권과의 FTA는 지난 2년간 콜롬비아의 FTA 교역비중을 30.5%, 14.2%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

체결협정	체결국가	현황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발효
G3 협정	멕시코(현재 G2)	
MERCOSUR	메르코수르 가입국	
콜롬비아-CARICOM	CARICOM *Caricom: 카리브공동체 가입국	
콜롬비아-쿠바	쿠바	
콜롬비아-칠레	칠레	
콜롬비아-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콜롬비아-캐나다	캐나다	
콜롬비아-미국	미국	
콜롬비아-EU	EU	
콜롬비아-한국	한국('16년 7월 발효 예정)	서명
콜롬비아-파나마	파나마	
콜롬비아-이스라엘	이스라엘	
콜롬비아-태평양동맹	칠레, 멕시코, 페루	협상중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일본	일본	
콜롬비아-터키	터키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현황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현황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로 한-칠레 및 한-페루 교역구조와 유사하다. 2015년 한국과 콜롬비아간 총교역액은 14.53억불로 2014년 21.17억불대비 31.4%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콜롬비아 수출은 11.29억불을 기록하였다. 2014년 15.09억불 대비 25.2% 감소한 수준이다. 수입은 전년보다 46.8% 감소한 3.24억불이다.

〈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현황(2011~2015) 〉

[단위: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교역액	1,994	1,883	1,549	2,117	1,453
수출	1,614	1,468	1,342	1,509	1,129
수입	380	415	207	608	324
무역수지	1,234	1,053	1,135	901	805

출처: 한국무역협회

품목별로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승용차 분야와 자동차부품 분야 수출이 2015년에도 각각 3.3억불, 1.19억불을 기록하여 對콜 수출 품목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수출액 대비 40%의 비중에 달한다. 수입의 경우 원유 수입액이 94백만불을 기록하여 2014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로는 92백만불을 기록한 커피류이다.



〈 한국과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품목(2015)〉

[단위 : 백만USD, %]

對콜 10대 수출품목				對콜 10대 수입품목			
순위	품 목	금액	증감률	순위	품 목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330	-15.3	1	원유	94	-74.0
2	자동차부품	119	-24.0	2	커피류	92	10.5
3	합성수지	93	-37.6	3	합금철	47	-47.2
4	기타 석유화학제품	56	-0.6	4	동괴 및 스크랩	44	164.7
5	타이어	48	-42.2	5	농약	14	42.5
6	냉연강판	37	631.8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7	-41.0
7	화물자동차	26	-29.5	7	화초류	5	10.8
8	아연도강판	26	-4.4	8	고철	4	-67.6
9	건설중장비	24	-11.1	9	유연탄	4	51.8
10	의약품	23	11.5	10	당류	2	-14.8
총계		1,128	-25.2	총계		324	-46.8

출처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한-콜롬비아 FTA 주요 특징 및 의의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2013년 2월 21일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하여 우리나라와의 10번째 FTA 체결국이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 추진경과〉



콜롬비아는 아시아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은 중남미와의 3번째 FTA 체결로 중남미에서 인구 16.2%, GDP 기준 13.4%, 교역규모 14.9%의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콜롬비아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기업의 콜롬비아 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고관세를 고려하면 이상적인 FTA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콜롬비아 FTA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되어 콜롬비아와 FTA를 기체결한 미국, EU산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국가개요

수도 : 보고타

국토면적 : 114km²(남한의 1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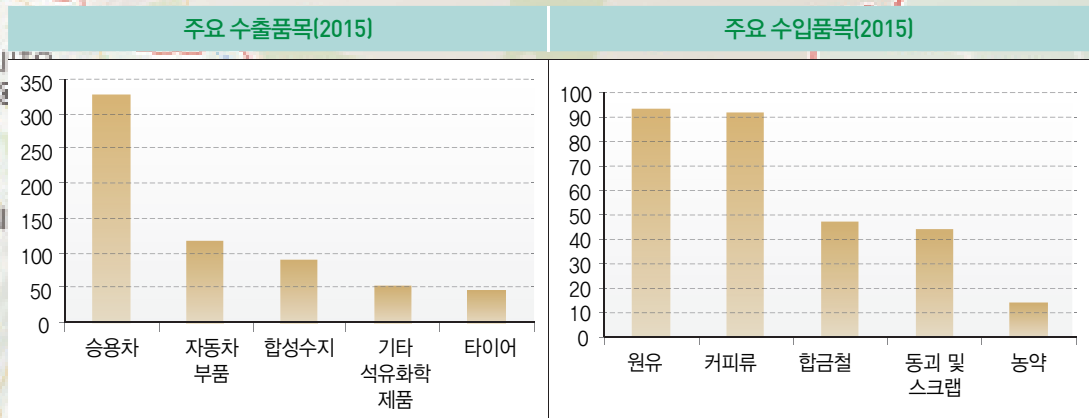
인구 : 약 4,625만명

주요 FTA 체결국 :

안데안 공동체, 멕시코, CARICOM, MERCOSUR, 칠레, 미국, Northern Triangle, 캐나다, EFTA, EU, 한국('16년 발효예정)

한국과 콜롬비아의 주요교역 품목

[단위 : 백만불]



주: MTI 4단위 기준

FTA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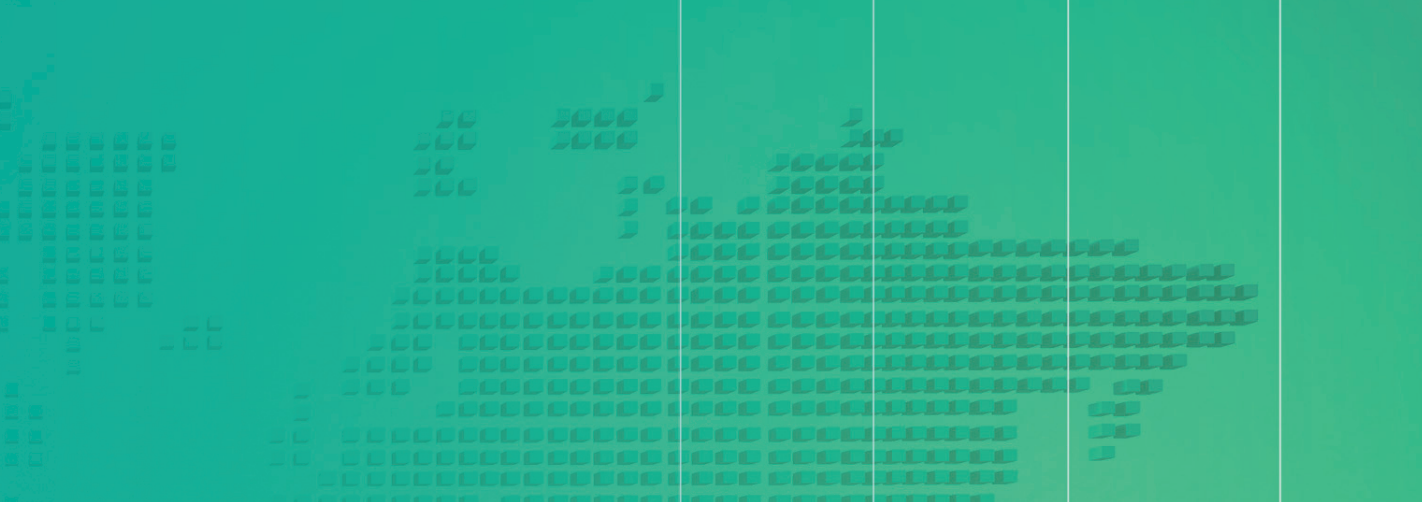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한-EU FTA 발효 5년의 성과와 대응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의료기기 산업의 FTA 활용동향과 시사점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한-EU FTA 발효 5년의 성과와 대응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분석배경 및 범위 ANALYSIS



▶ 분석배경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된 지 만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한-EU FTA 활용성과를 산업별로 확인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활발한 EU와의 FTA 교역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분석범위

- 한-EU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對EU 산업별 수출입동향을 중심으로 분석
- 분석기간 : 한-EU FTA 발효일(2011. 7. 1.)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구분하되, 발효 5년차의 통계추출 기간은 자료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2015. 7.-2016. 5.의 11개월로 한정
- 분석범위 : MTI 1단위 기준
- 분석통계와 관련하여 '총수출'은 해당기간의 對EU 전체 수출실적, '실질활용률'은 FTA특혜대상인 품목의 실제 FTA특혜활용 실적을 의미

1. 對EU 교역동향

① 총괄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수출은 한-EU FTA 발효 3년차에 전기 대비 6.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발효 직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 추세가 발효 2년차부터 지속되고 있다.

〈 한-EU FTA 발효 이후 對EU 교역액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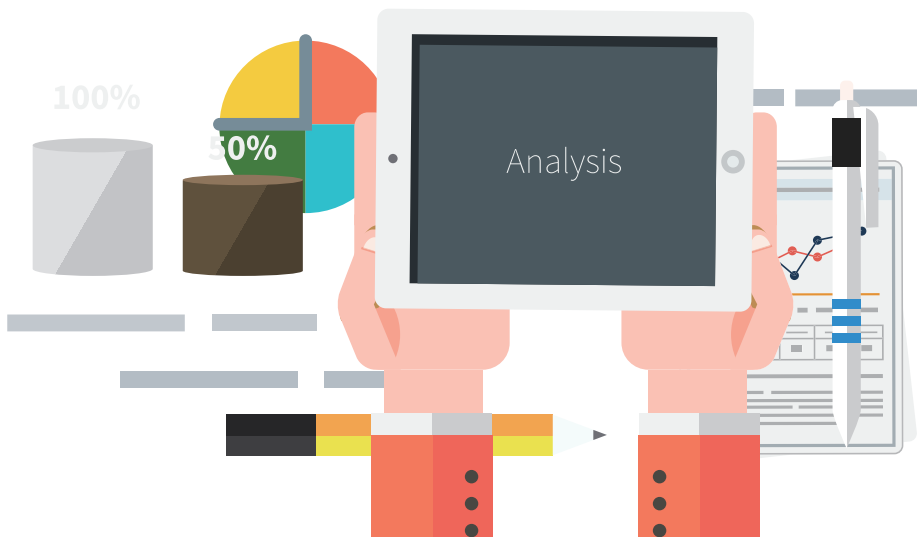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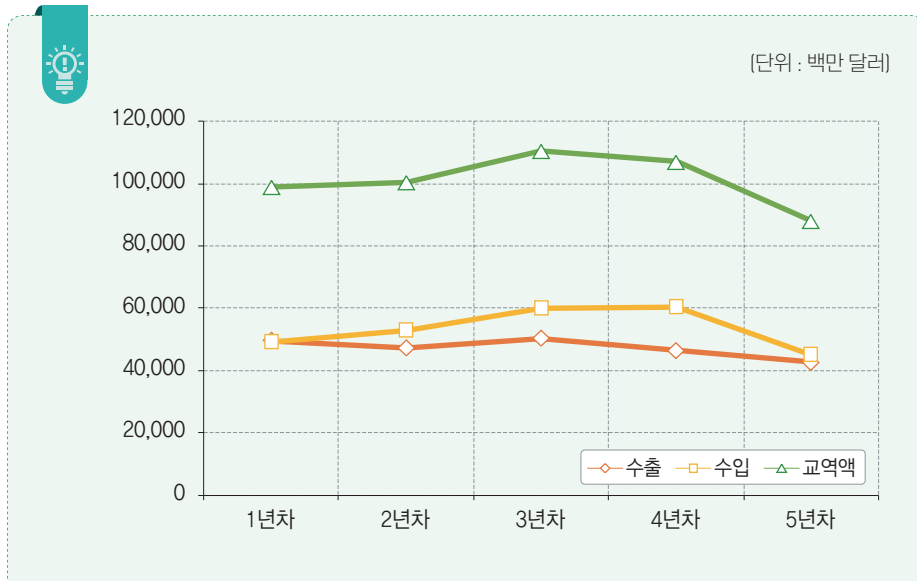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9,662	-	47,245	▲4.9	50,317	6.5	46,381	▲7.8	42,674	-
수입	49,061	-	53,005	8.0	59,989	13.2	60,400	0.7	45,132	-
수지	601	-	-5,760	-	-9,672	-	-14,019	-	-2,458	-
교역액	98,723	-	100,250	1.5	110,306	10.0	106,781	▲3.2	87,806	-

주 : 발효 5년차의 통계추출기간은 2015.07.-2016.05.의 11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증감률을 산정하지 않음

EU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한-EU FTA발효 이후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수요증가와 자동차 등 유럽산 물품에 대한 선호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하락 및 유로화의 약세 등 경기적 요인과 우리 기업의 EU시장 내 경쟁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겹쳐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EU FTA발효 이후 對EU 교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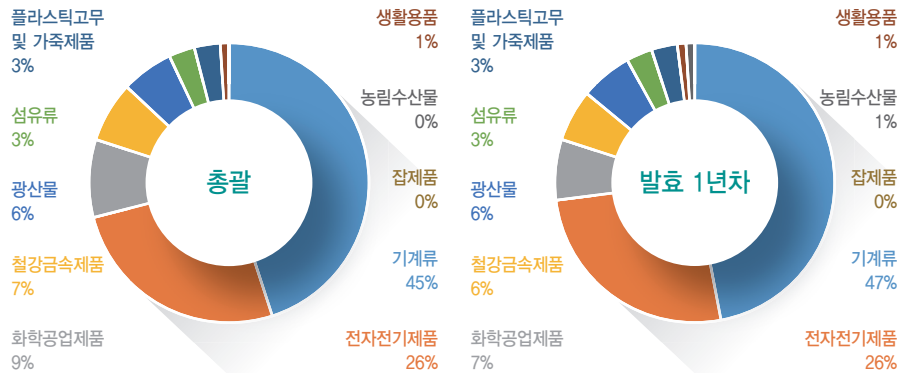
② 산업별 수출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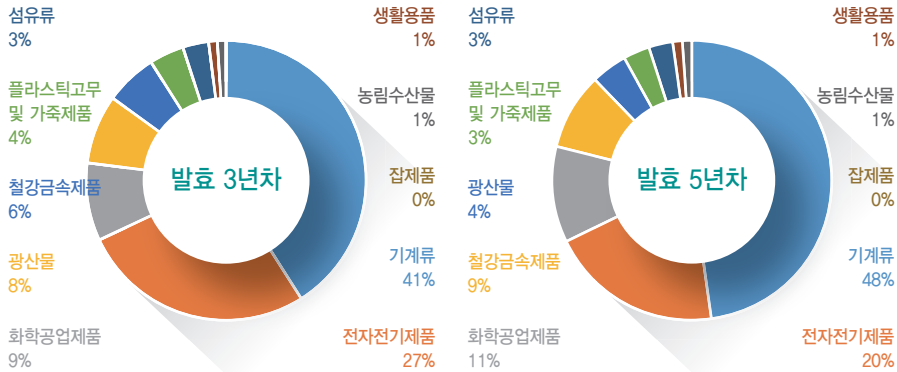
1) 산업별 수출비중

MTI 1단위를 기준으로 산업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발효 이후 5개년 누적기준으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산업의 수출비중은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이 각각 9%와 7%인 것을 제외하고는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산업의 비중 변화를 발효 연차별로 확인해 보면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출비중 변화에 따라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이 일부 변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별 수출비중의 특이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對EU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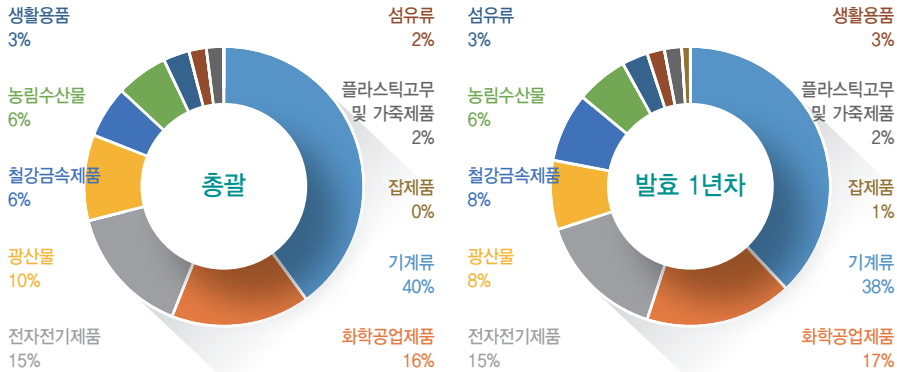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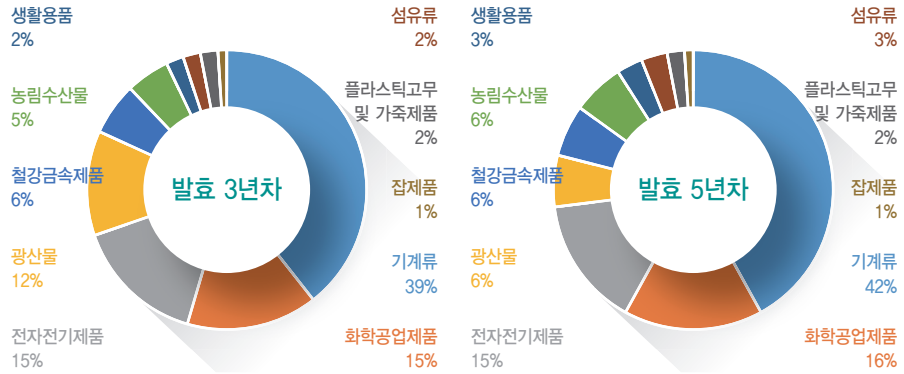
2) 산업별 수입비중

산업별 수입비중을 MTI 1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발효 이후 5개년 누적기준으로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등 3개 산업군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산업의 경우 광산물의 수입비중이 10%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여타 산업군의 품목들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입산업의 비중 변화를 발효 연차별로 확인해 보면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화학공업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의 수입비중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광산물이 발효 연차에 따라 비교적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對EU 산업별 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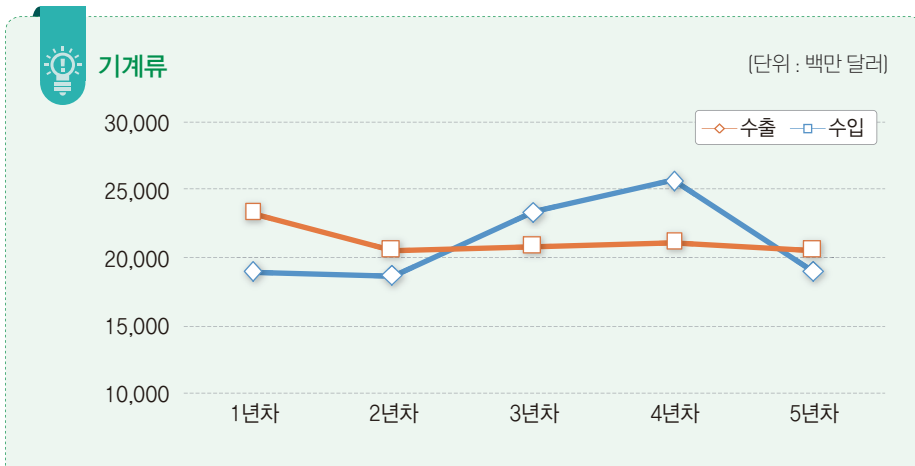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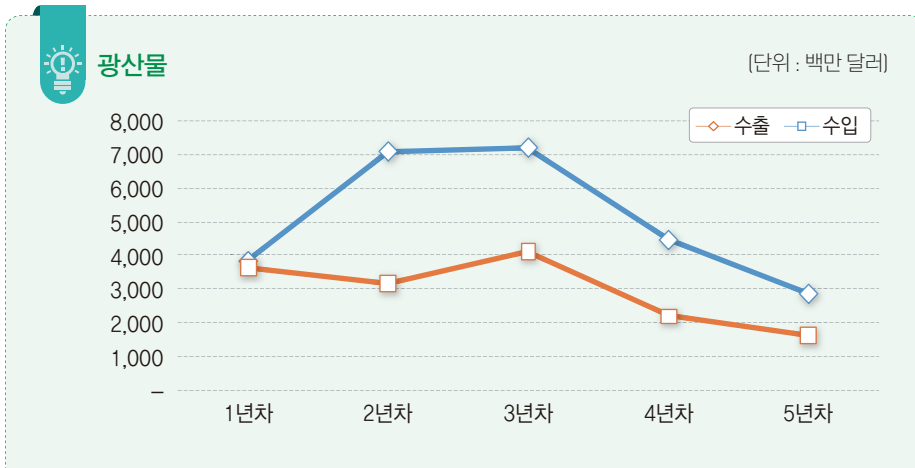
3) 산업별 교역액 변화

한-EU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산업별로 EU에 대한 수출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산물의 경우 수출은 발효 3년차를 제외하고 발효 첫해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발효 2년차와 3년차에 급증하였다가 4년차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對EU 교역물품 중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류의 경우 수출은 발효 첫해에 비해서는 총액이 줄어들었으나 발효 2년차부터 현재까지 소폭의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수입은 발효 3년차와 4년차에 급증하였다가 5년차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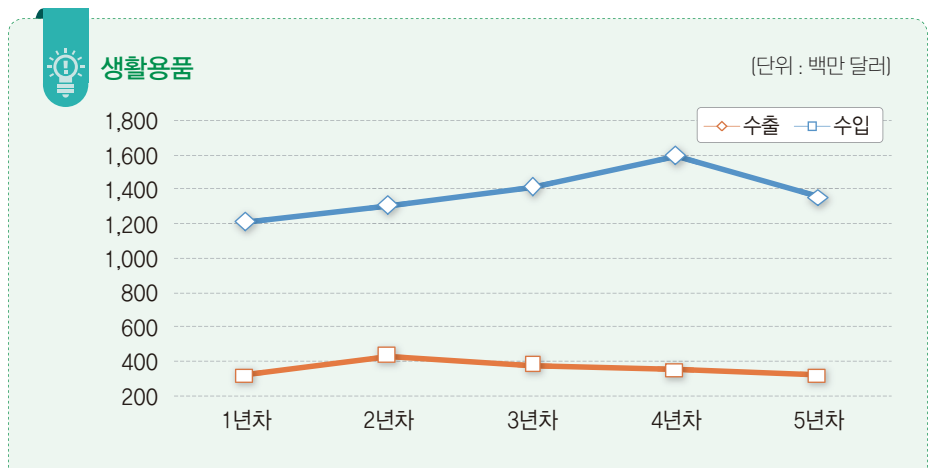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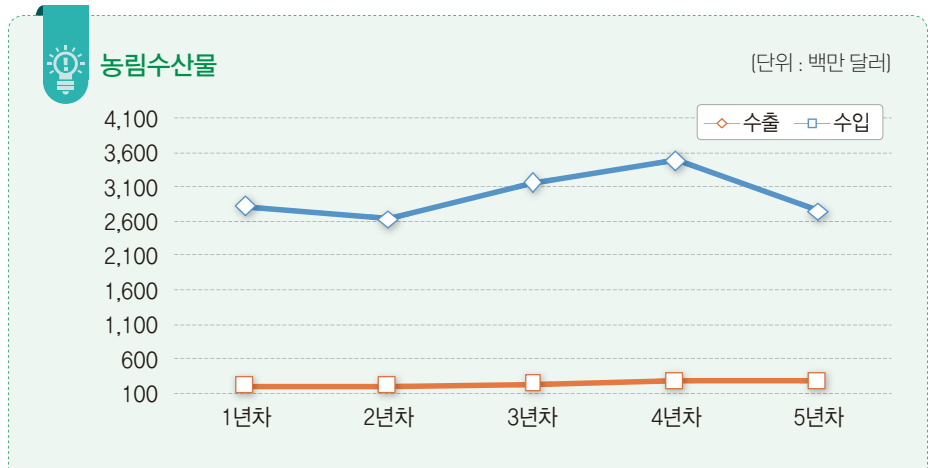
기계류의 교역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동 품목 교역에 있어 흑자를 기록했던 발효 1~2년차와 달리 3~4년차에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적자로 전환되었던 것이 발효 5년차에는 소폭이지만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적자폭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 광산물 및 기계류 수출 변화 〉



농림수산물과 생활용품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인데 농림수산물의 경우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폭이지만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입은 발효 3년차와 4년차에 급증하였다가 5년차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용품은 수출은 발효 2년차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은 발효 1년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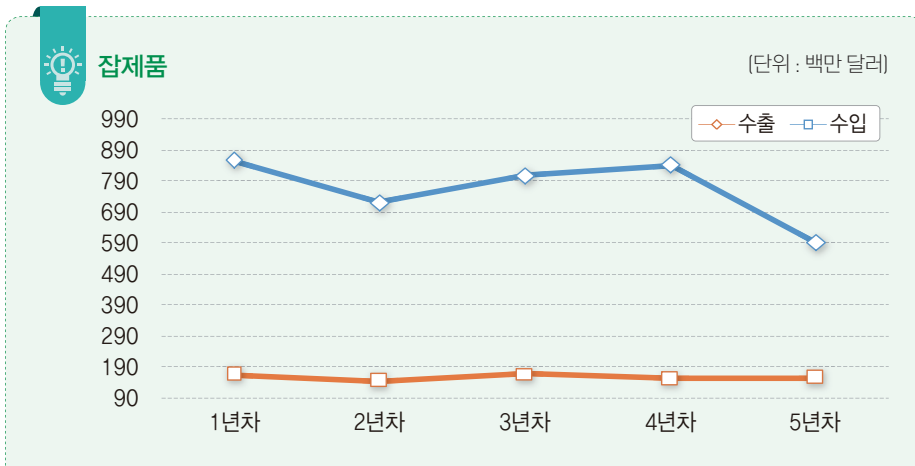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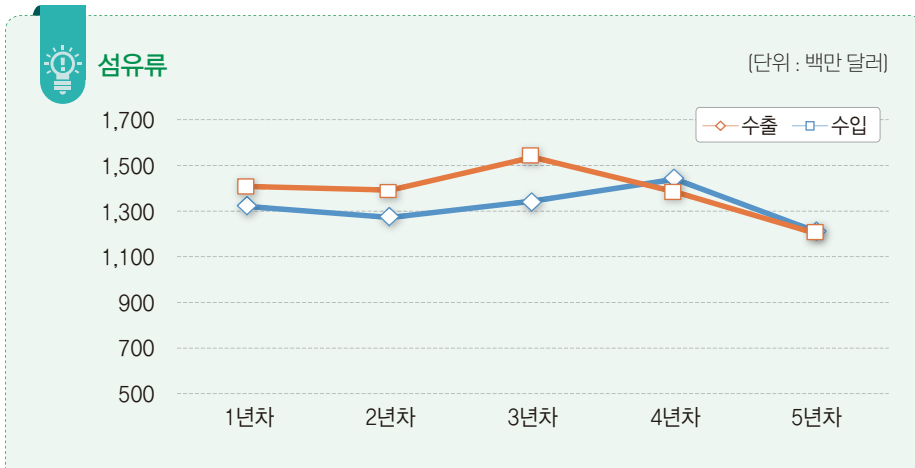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및 생활용품 수출 변화〉



섬유류는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인데 수출의 경우 발효 3년차를 제외하고 발효 첫해에 비해 수출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비슷한 수출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발효 4년차에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발효 기간 동안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이 수출에 비해 월등히 많으면서 對EU 교역물품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잡제품은 발효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출액의 소폭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발효 2년차와 5년차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 섬유류 및 잡제품 수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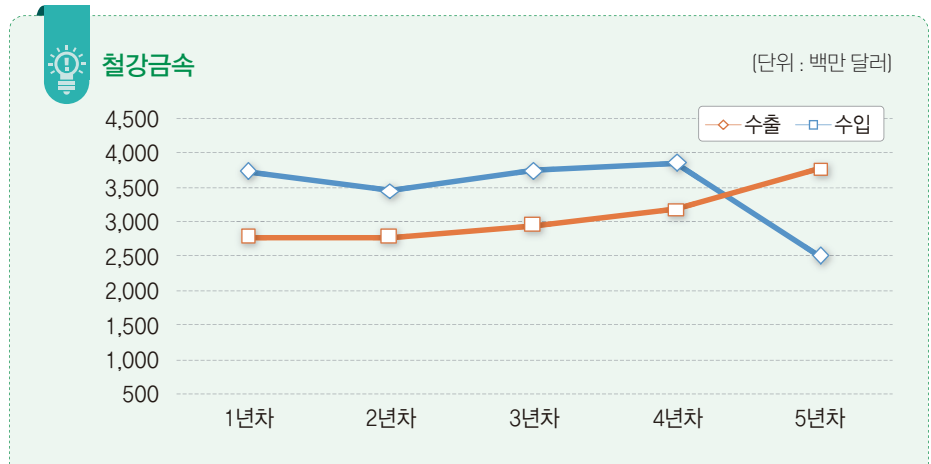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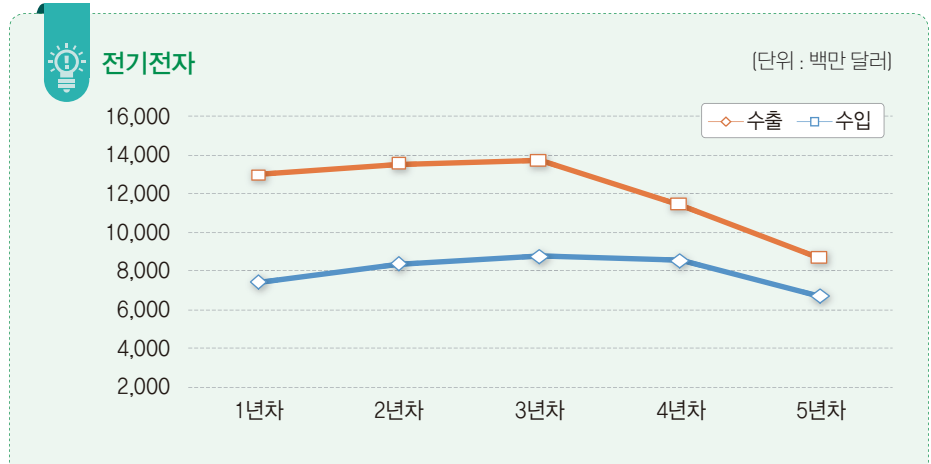


EU지역으로 기계류 다음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전기제품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월등히 많아 무역수지 개선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군으로, 수출의 경우 발효 직후부터 3년차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4년차에 급락한 이후 발효 5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수출액의 회복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입은 발효 2년차에 다소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에 있어 발효 6년차부터는 텔레비전 등 주요 가전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소형가전과 함께 수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상황의 호전이 기대된다.

철강금속제품은 농림수산물과 마찬가지로 발효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는 품목으로 발효 1~4년차까지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며 큰 폭의 변화 없이 등락이 거듭되었으나, 발효 5년차에는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향후 수출액 증가가 기대되는 산업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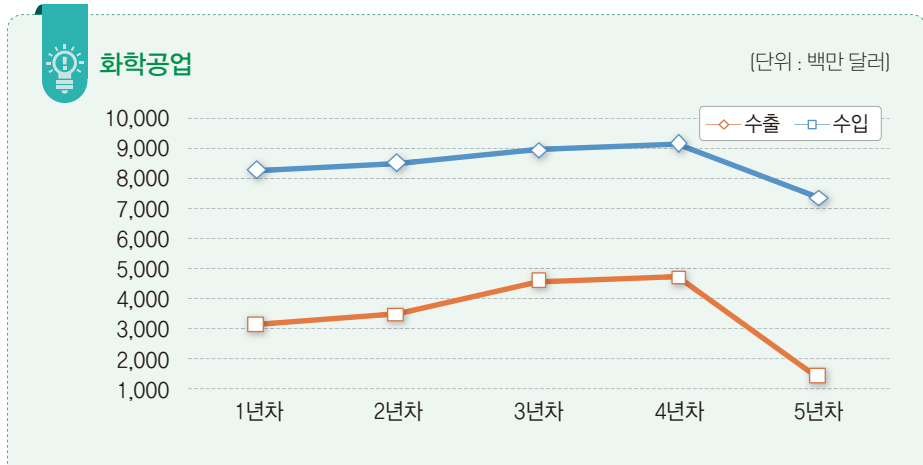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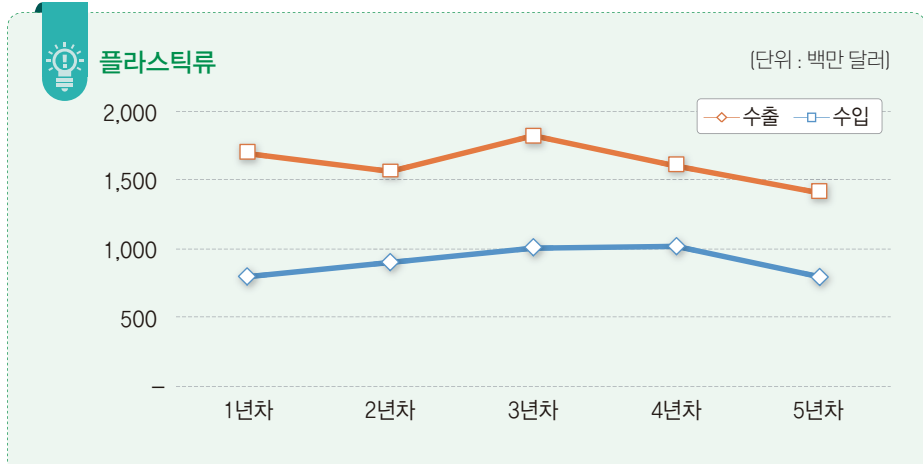
〈전자전기 및 철강금속제품 수출 변화〉



플라스틱제품류의 경우 수출이 수입에 비해 많은 품목으로 對EU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EU FTA발효 직후부터 수출입액의 소폭 등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對EU 수출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입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공업제품은 수출입이 동시에 발효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속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라스틱제품류 및 화학공업제품 수출 변화〉



〈한-EU FTA 발효 산업별 對EU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광 산 물	3,637	3,842	3,153	7,068	4,121	7,180	2,177	4,463	1,607	2,883
기 계 류	23,310	18,911	20,529	18,656	20,817	23,336	21,087	25,667	20,535	18,957
농림수산물	196	2,812	198	2,632	225	3,155	266	3,475	267	2,743
생활용품	322	1,211	432	1,307	379	1,412	354	1,596	322	1,357
섬유류	1,405	1,320	1,389	1,272	1,537	1,341	1,381	1,441	1,203	1,210
잡 제품	167	856	148	721	171	808	154	842	157	592
전자전기제품	13,005	7,424	13,536	8,396	13,715	8,777	11,442	8,557	8,692	6,711
철강금속제품	2,781	3,735	2,782	3,454	2,946	3,743	3,185	3,863	3,777	2,509
플라스틱류 제품	1,705	804	1,573	907	1,829	1,015	1,614	1,023	1,418	800
화학공업제품	3,134	8,258	3,505	8,503	4,577	8,930	4,721	9,151	4,696	7,370
합 계	49,662	49,174	47,245	52,916	50,317	59,699	46,381	60,076	42,674	45,132

③ 국가별 수출동향

EU 역내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누적액을 기준으로 독일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발효 1년차에 비해 이후 수출액이 등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출실적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발효 1년차에는 5번째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발효 2년차에 독일에 이어 EU 역내 2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이후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일 연차만을 기준으로 볼 때 발효 5년차에는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최고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對EU 수출상위 10개국 연차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1	독일	8,081 [16.3]	7,238 [15.3]	7,693 [15.3]	6,105 [13.2]	5,407 [12.7]
2	영국	3,882 [7.8]	5,149 [10.9]	5,149 [10.2]	5,509 [11.9]	7,241 [17.0]
3	네덜란드	4,650 [9.4]	4,695 [9.9]	5,915 [11.8]	4,202 [9.1]	3,286 [7.7]
4	슬로바키아	4,186 [8.4]	4,494 [9.5]	4,447 [8.8]	3,766 [8.1]	2,971 [7.0]
5	폴란드	3,909 [7.9]	3,627 [7.7]	3,628 [7.2]	3,203 [6.9]	2,589 [6.1]
6	이탈리아	3,358 [6.8]	3,063 [6.5]	3,176 [6.3]	3,574 [7.7]	2,917 [6.8]
7	프랑스	2,853 [5.7]	3,095 [6.6]	3,012 [6.0]	2,307 [5.0]	2,306 [5.4]
8	벨기에	2,399 [4.8]	2,130 [4.5]	2,368 [4.7]	2,102 [4.5]	2,043 [4.8]
9	스페인	1,804 [3.6]	1,467 [3.1]	1,802 [3.6]	2,196 [4.7]	2,037 [4.8]
10	체코공화국	2,001 [4.0]	1,632 [3.5]	1,713 [3.4]	1,901 [4.1]	1,88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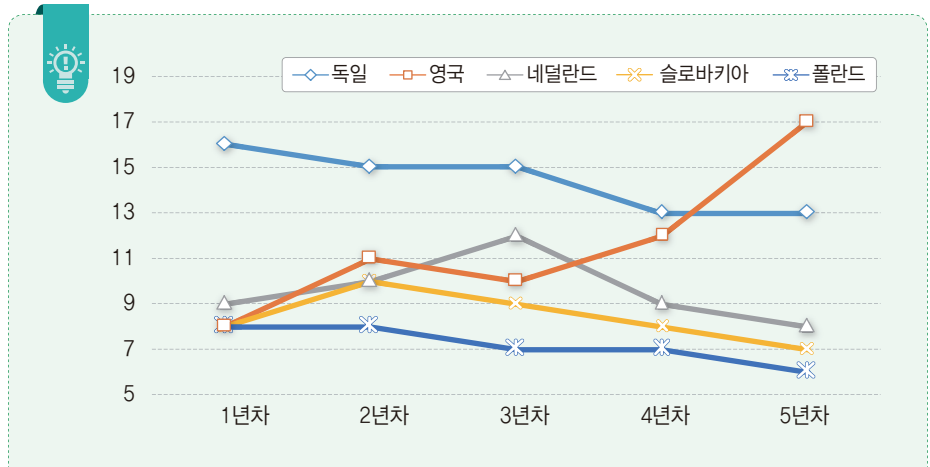
주 : ()내는 對EU 총 수출에서 해당 국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총 수출액에서 각 국가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의 수출동향을 살펴 보면, EU 역내 최대 수출대상국인 독일에 대한 수출은 발효 1년차에 16.3%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3~5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는 발효 연차가 거듭될수록 수출비중의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발효 1년차에는 7.8%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발효 2년차부터 10%대로 진입한 이후 발효 5년차에는 17.0%까지 급증함으로써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對EU 수출상위 5개국의 수출비중 변화〉

(단위: %)



2. 한-EU FTA 활용 동향

① 총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서 한-EU FTA 특혜를 활용한 실질활용률은 발효 기간 전체 평균 77.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연차별로 볼 때 발효 1년차에 70.1%이던 실질활용률이 발효 연차가 거듭될수록 75.7%→79.3%→80.7%→80.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4년차부터는 수출에서의 실질활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활용률의 지속적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별 한-EU FTA 수출입 실질활용률 변화〉

(단위 : %)

구 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산업별 평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광산물	77.8	64.7	88.2	87.4	76.3	71.7	78.3	49.3	78.9	78.9	79.9	70.4
기계류	85.7	63.5	90.5	68.4	90.5	70.0	89.3	70.6	89.8	67.5	89.2	68.0
농림수산물	45.8	71.7	50.6	81.8	60.4	84.4	77.1	85.1	70.4	75.4	60.9	79.7
생활용품	59.0	48.5	75.9	54.8	79.6	61.8	72.0	61.7	76.2	85.9	72.5	62.5
섬유류	78.5	46.2	86.2	54.8	87.9	57.1	87.9	58.6	85.8	61.7	85.3	55.7
잡제품	58.6	45.2	59.4	51.9	76.6	48.8	74.7	47.6	74.6	61.3	68.8	51.0
전자전기제품	70.0	46.3	76.1	54.0	79.4	56.5	80.9	57.1	82.8	50.7	77.8	52.9
철강금속제품	62.8	54.1	63.8	54.0	74.7	49.8	75.4	49.4	76.1	55.1	70.6	52.5
플라스틱류 제품	85.0	69.6	89.1	76.0	92.2	75.3	91.9	77.9	88.6	57.2	89.4	71.2
화학공업제품	77.7	64.2	77.4	71.2	75.6	73.7	79.8	74.3	80.3	79.5	78.2	72.3
연차별 평균	70.1	57.4	75.7	65.3	79.3	64.9	80.7	63.2	80.4	67.3	77.2	63.6

수입의 경우 평균 활용률은 63.6%로 수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발효 1년차에 57.4%에 불과하던 실질활용률이 2년차 이후부터 60% 중반대로 높아졌으며, 발효 5년차에는 가장 높은 67% 대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의 경우에도 실질활용률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산업별 활용률

1) 수출 활용률

MTI 1단위를 기준으로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산물의 경우 발효 1년차에 77.8%이던 것이 발효 2년차에 88.2%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나, 발효 3년차부터 현재까지 발효 1년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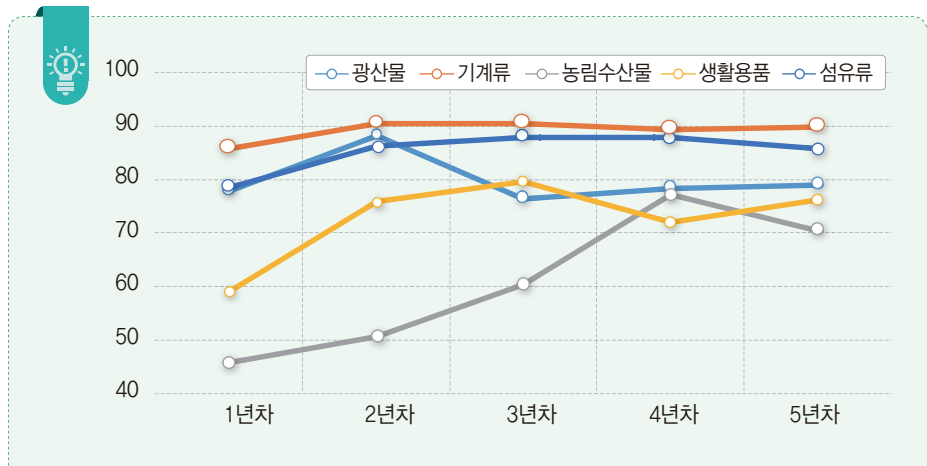
기계류는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발효 5년 간의 평균 활용률은 89.2%에 달하며 발효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90%를 상회하는 활용률을 보였다.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의 재배와 수확 또는 어로 행위를 통한 획득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상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발효 1년차에 45.8%에 불과하던 활용률이 발효 연차가 거듭될수록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에 있어서도 앞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용품은 농림수산물과 마찬가지로 발효 1년차에는 낮은 활용률을 보였으나 발효 2년차부터는 70% 중후반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섬유류의 경우 평균 85.3% 수준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한-EU FTA의 활용실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광산물 등의 한-EU FTA 수출활용률 변화〉

(단위: %)



잡제품은 농림수산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는 산업으로 발효 5년간 평균 활용률은 68.8%이나,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60% 미만의 활용에 그치던 것이 발효 3년차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70% 중후반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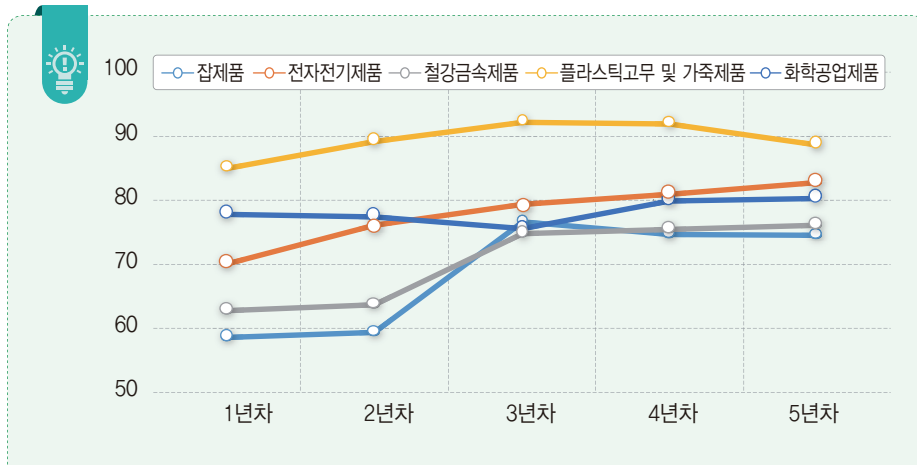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70% 후반 또는 80% 초반 수준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對EU 수출금액 또한 2-3위 수준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효 6년차 이후에도 관세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계속적인 수출과 활용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

플라스틱류 제품은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실질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발효 1년차부터 85%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발효 3년차와 4년차에는 90%를 상회하는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5년치 평균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발효 3년차 이후부터 꾸준히 70% 중반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잡제품 등의 한-EU FTA 수출활용률 변화〉

(단위: %)



2) 수입 활용률

MTI 1단위를 기준으로 산업별 FTA 수입 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산물의 경우 발효 1년차에 64.7%이던 것이 발효 2년차에 87.4%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나, 발효 4년차에는 49.3%의 낮은 활용률을 나타내는 등 실질활용률의 등락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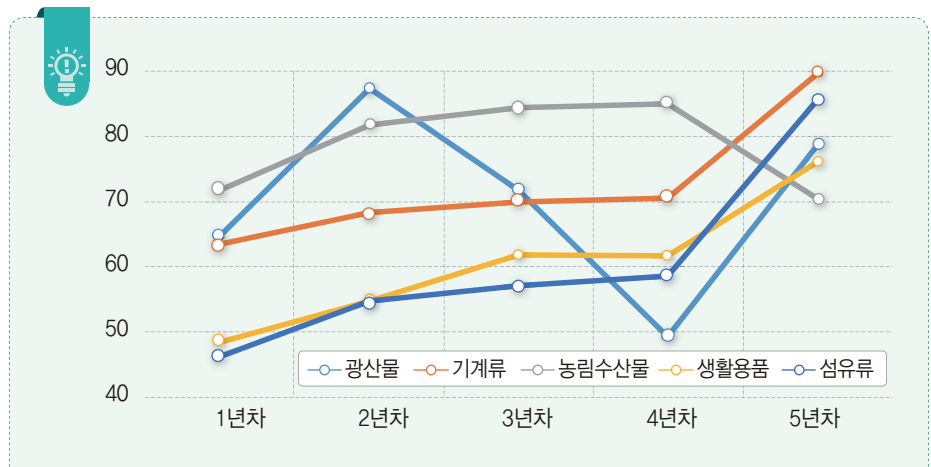
기계류는 수출 활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입 활용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발효 1년차와 2년차에는 70% 미만의 활용률을 보이다, 3년차 이후부터 70% 이상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효 5년차에는 다시 70% 미만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5년치 평균 활용률이 수출은 60.9%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데 반해 수입 활용률은 79.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행 연차별로 볼 때 발효 1년차와 5년차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용품과 섬유류는 농림수산물과 반대로 수출 활용률은 매우 높는데 반해 수입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생활용품의 경우 5년치 평균 활용률이 62.5% 수준이며 섬유류는 5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산물 등의 한-EU FTA 수입활용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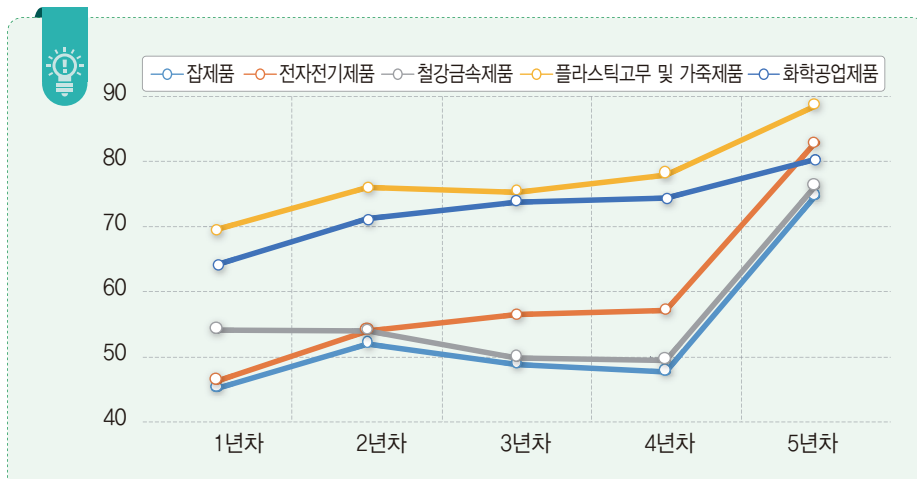
플라스틱류 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수출 활용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입 활용률 또한 70%를 상회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한-EU FTA를 활용한 특혜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발효 5년차에는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80%에 근접하여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잡제품은 수출 활용률과 마찬가지로 수입 활용률 또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5년차 평균 활용률은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51%로 분석되며 발효 2년차와 5년차를 제외하고는 4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자전기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은 잡제품에 비해서는 평균 활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전자전기제품은 연차별로 50% 초중반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철강금속제품은 발효 3~4년차에 50% 미만의 활용률을 나타내다 5년차에 접어들어 다시 50% 중반 수준의 활용률을 회복하였다.

〈잡제품 등의 한-EU FTA 수입활용률 변화〉

(단위: %)



③ 국가별 활용률

EU 역내 국가별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입의 실질활용률이 가지는 특징은 산업별 활용률과 동일하게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 수출활용률

EU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의 실질활용률을 살펴보면 동유럽권 국가인 체코공화국과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에 대한 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발효 5년간의 평균 활용률 또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EU FTA 수출 실질활용률 상위 5개국 〉

(단위 : %)

순위	국가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평균
1	체코공화국	92.3	95.6	94.8	93.1	95.5	94.3
2	슬로베니아	96.0	88.7	90.5	95.9	97.7	93.8
3	슬로바키아	88.5	89.8	94.2	92.4	95.5	92.1
4	스웨덴	87.3	87.5	88.0	88.1	91.2	88.4
5	이탈리아	84.5	84.9	86.7	89.4	89.5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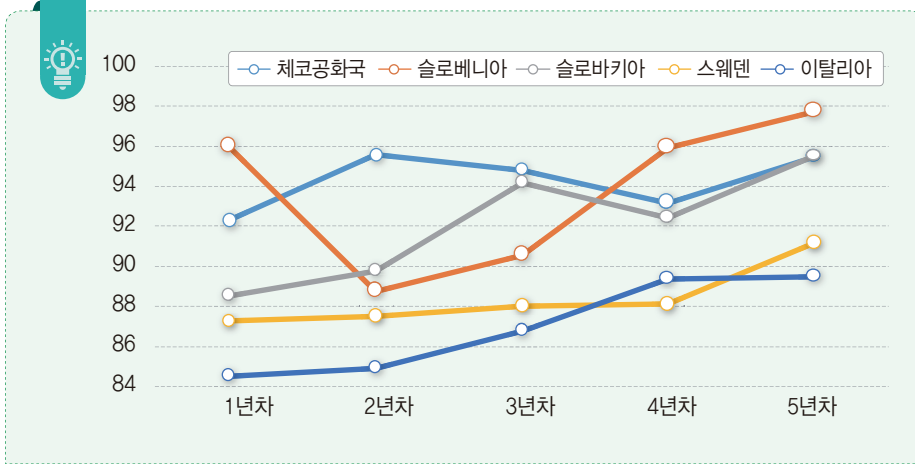
특히, 슬로바키아는 EU 역내 국가 중 수출액 기준으로 4번째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주요 수출시장인 반면 실질활용률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입에 있어서의 실질활용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한-EU FTA 주요 시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EU 역내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 실질활용률 측면에서는 각각 9위와 14위 수준으로 보다 많은 활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실질활용률 상위 5개국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활용률의 개선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스웨덴에 대한 수출의 경우 발효 5년차에 처음으로 실질활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또한 9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對EU 수출 실질활용률 상위5개국 연차별 활용 동향〉

(단위 : %)



2) 수입활용률

수입의 경우 실질활용률은 발효 기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오스트리아에서의 수입활용률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서 루마니아로부터의 수입활용률도 80.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수출에 있어서의 실질활용률도 높으면서 수입의 경우에도 실질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일의 경우 수출의 실질활용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수입에 있어서의 실질활용률은 EU 역내 국가 중 5위 수준인 76.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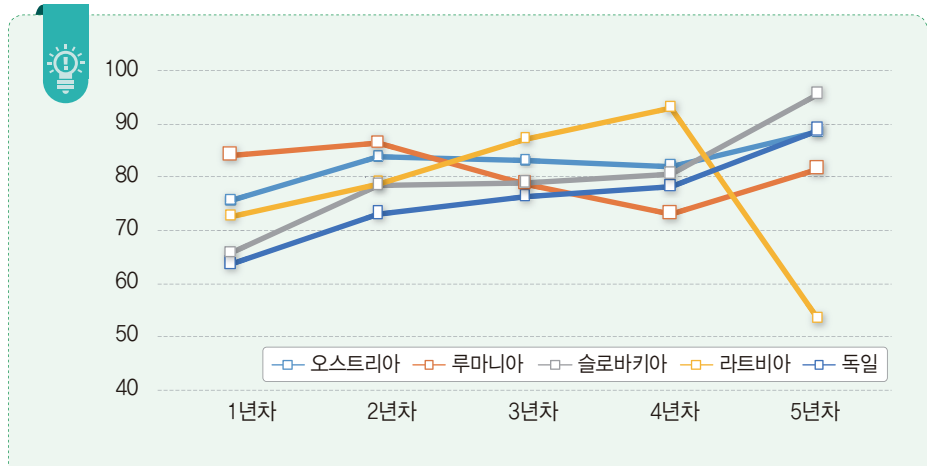
〈한-EU FTA 수입 실질활용률 상위 5개국〉

(단위 : %)

순위	국가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평균
1	오스트리아	75.7	83.9	83.2	82.0	88.5	82.7
2	루마니아	84.0	86.5	78.6	73.0	81.4	80.7
3	슬로바키아	65.8	78.4	78.9	80.5	95.6	79.8
4	라트비아	72.5	78.7	87.1	93.0	53.2	76.9
5	독일	63.7	72.9	76.4	78.3	88.7	76.0

〈對EU 수입 실질활용률 상위 5개국 연차별 활용 동향〉

(단위 : %)



3. 한-EU 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한-EU FTA 발효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난 이행 기간의 산업별 교역동향과 FTA활용 실적을 확인해 보았다.

EU와의 교역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발효 2년차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FTA활용률이 수출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입활용률은 낮게 나타나는 점을 통해 볼 때 무역수지적자의 발생 이유가 한-EU FTA의 발효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실시 등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EU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수출은 회복 중에 있으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EU의 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FTA 수출활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상품이 EU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발효 6년차를 맞이하면서도 對EU 교역이 전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우려 극복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유로화 약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입수요 활성화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15년 중동 등지에서 일거에 유입된 약 110만명의 난민으로 EU회원국들의 복지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이민자 복지혜택 감축을 주 의제로 촉발된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 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EU의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 실제 영국이 EU를 탈퇴하기까지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의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탈퇴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EU의 우량국가인 영국의 브렉시트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현실화됨으로써 유로존의 붕괴 등 EU의 존립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영국이 실제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리스본조약 제50조(출구조항)에 따라 탈퇴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탈퇴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며, 협상 이후 유럽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됨

따라서 실제 탈퇴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영국과의 교역에서 한-EU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국의 탈퇴가 확정될 경우에는 유럽권의 주력 교역상대국인 영국과의 교역에 있어 한-EU FTA 활용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과 탈퇴 이후에 발생할 수 양국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영 FTA'의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영 FTA의 추진과는 별개로 기존의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여 EU지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시키는 수입수요 증대만으로는 한-EU FTA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변동 상황에 맞는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지역의 확대 노력과 같은 추가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수출품목 다변화의 경우 EU의 장기적 경기침체로 전통적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선박, 반도체 등 경기민감 품목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화장품이나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유럽연합(EU)의 결성 과정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발족

- 제1,2차 세계대전의 주원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석탄 및 철강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 선언 발표(50.5.9)
※ EU는 5.9 슈망 선언 발표일을 유럽의 날(EU Day)로 확정
-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동 제의를 수락(영국은 거부)하여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발족(52. 8)

▶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석탄과 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EEC 창설조약 및 EURATOM 창설조약 서명(57. 3)

▶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의 성장

- ECSC, EEC, EURATOM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들을 통합하여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을 체결(67. 7)하고 명칭도 EC로 통칭
-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EC에 가입, EC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

▶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의 발족

- 12개 EC 회원국들은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체결(86.2)하고 동 의정서에 따라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역내 단일시장 구축(93. 1)
- 역내 단일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유럽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통합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 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합 움직임이 가속화
-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이 가입하여 총 15개 회원국으로 확대
2004년 EU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하여 27개국으로 확대
201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28개국으로 확대
2015년 터키 가입을 위한 협상 진행 중

의료기기 산업의 FTA 활용동향과 시사점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1. 분석 배경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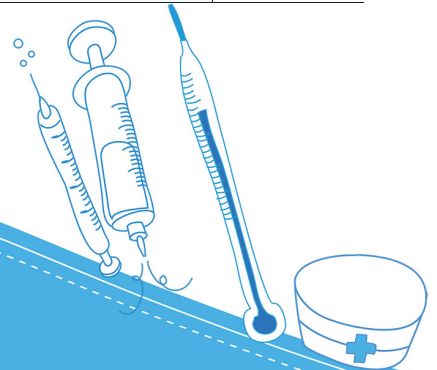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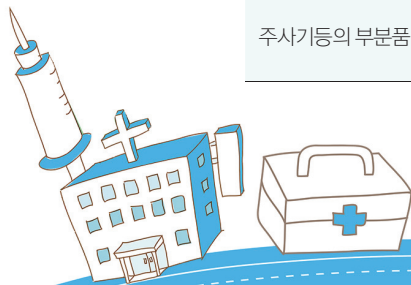
의료기기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4.1%, 2020년 4,7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확대 및 의료제도 개선에 수반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수요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목표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기기산업의 최근 교역현황과 FTA활용을 통한 성장전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MTI 3단위 기준상 '의료기기'에 속하는 물품 중, 2015년 FTA 체약국과의 교역에서 수입 상위 10위, 수출상위 10위에 속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체약국과의 교역변화 및 FTA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기기 분석 대상 품목 〉

수입상위 10대품목		수출상위 10대품목	
품명	HS code	품명	HS code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	9021.90-1000	기타 치과물품	9021.29-0000
인조관절	9021.31-0000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	9021.90-1000
기타 수혈용 물품	9018.39-8000	주사침	9018.32-1000
인체용 인조부품	9021.39-0000	기타 치과용 기기	9018.49-8000
카테터	9018.39-2000	인조관절	9021.31-0000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	9021.90-8000	기타 수혈용 물품	9018.39-8000
주사기	9018.31-0000	그 밖의 호흡용기기의 부분품	9020.00-9000
인체 삽입용 물품의 부분품	9021.90-9000	정형외과용 기기	9021.10-0000
기타의 치과용 기기	9018.49-8000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	9021.90-8000
주사기등의 부분품	9018.39-9000	그 밖의 산부인과용 기기	9018.90-9020



2. 일반 교역동향

① 수입

2015년 의료기기의 수입금액은 약11억 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입 상위 국가들은 미국,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기 수입비중의 34%를 차지하는 미국산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비중의 12%를 차지하는 아일랜드산은 전년대비 2%감소한 1억 3천만달러, 수입3위를 차지하는 독일산은 전년대비 큰폭 감소한 8천 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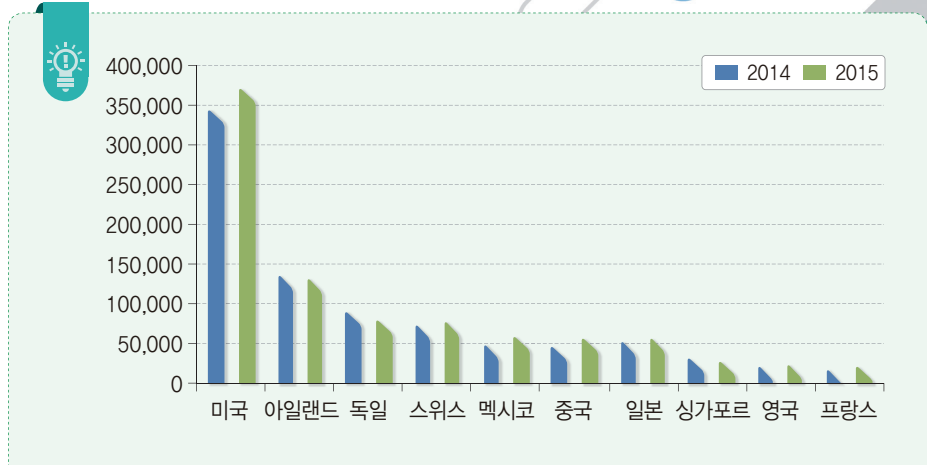
의료기기의 주요수입국은 아일랜드, 멕시코,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EU로 부터의 수입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수입 상위 10대국 현황〉

(단위: US천달러, %)

구분	수입	2014	증감	2015	증감
1	미국	345,595	0	373,170	8
2	아일랜드	137,405	17	134,235	-2
3	독일	90,827	-9	81,505	-10
4	스위스	73,962	4	79,114	7
5	멕시코	49,807	9	61,027	23
6	중국	47,985	18	58,241	21
7	일본	53,403	-16	58,128	9
8	싱가포르	33,509	-11	29,630	-12
9	영국	23,550	2	25,021	6
10	프랑스	18,678	11	22,145	19
총계		1,070,444	4	1,111,990	4

[단위: US천달러]



② 수출

2015년 의료기기의 수출금액은 약 6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수출 상위 국가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등으로 아시아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기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비중의 13%를 차지하는 중국은 2014년(21%)에 이어 2015년에도 41% 증가하여 의료기기 수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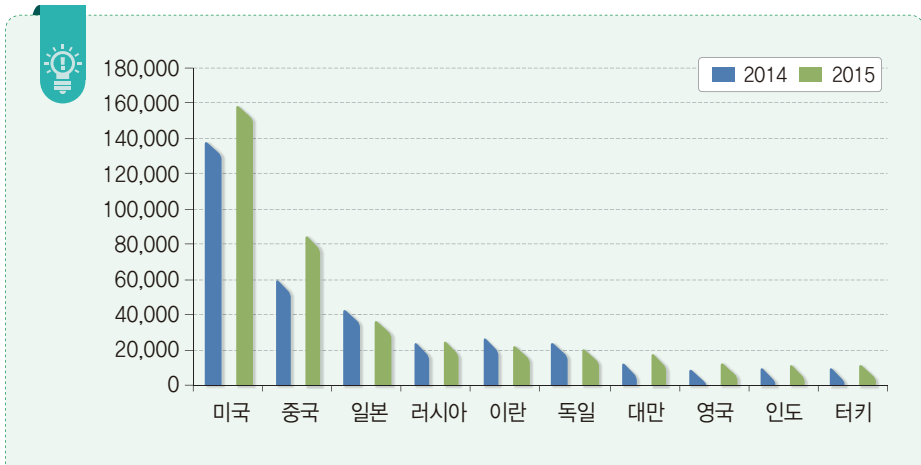
반면 수출 3위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던 일본으로의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여 중국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 상위 10대국 현황〉

(단위: US천달러, %)

구분	수출	2014	증감	2015	증감
1	미국	139,793	-15	160,628	15
2	중국	61,211	21	86,128	41
3	일본	43,698	-6	37,326	-15
4	러시아	25,029	-18	25,583	2
5	이란	27,320	12	23,130	-15
6	독일	25,060	-4	21,895	-13
7	대만	13,651	-25	19,202	41
8	영국	10,053	15	13,775	37
9	인도	10,866	-12	12,769	18
10	터키	10,872	-1	12,232	13
총계		579,442	-4	641,370	11

(단위: US천달러)



3. 품목별 FTA 수입동향

2015년 말 기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 중에서 수입상위 10대 품목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입순위 9위 및 10위에 해당하는 기타의 치과용 물품과 주사기 등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이 전년대비 수입 증가하였다. 특히 주사기와 인체 삽입용 물품의 부분품은 4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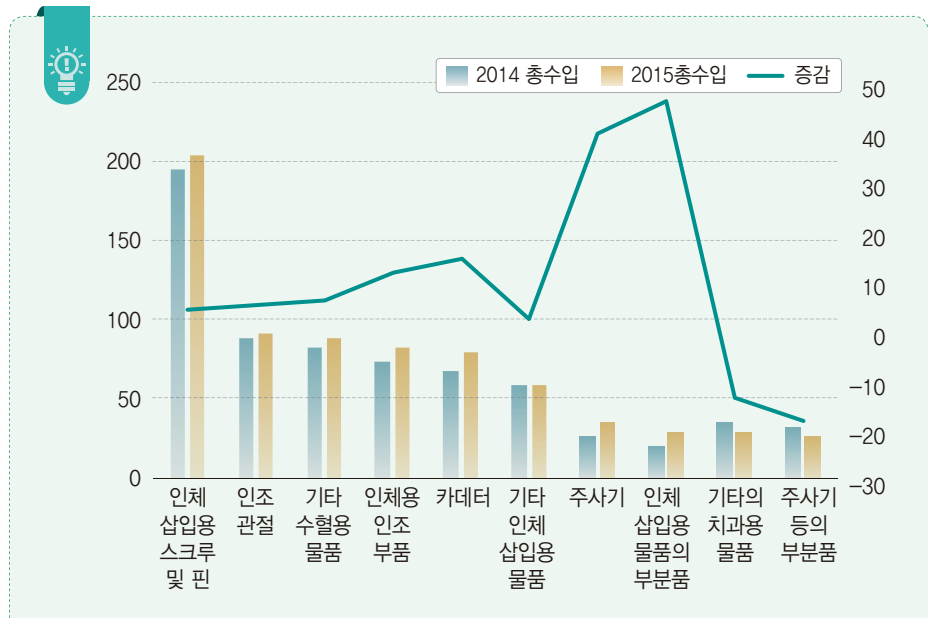
의료기기 유형을 중심으로 수입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FTA 체약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는 제9021호에 속하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기'와 주사기 및 카테터 등의 '의료용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기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US천달러, %]

품명	HS code	2014 총수입	2015 총수입	증감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	9021.90-1000	195,364,274	203,514,926	4.2
인조관절	9021.31-0000	88,975,026	93,528,543	5.1
기타 수혈용 물품	9018.39-8000	84,340,967	88,980,665	5.5
인체용 인조부품	9021.39-0000	75,623,590	84,429,453	11.6
카테터	9018.39-2000	69,840,893	79,971,123	14.5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	9021.90-8000	58,868,084	60,269,725	2.4
주사기	9018.31-0000	26,976,777	37,701,567	39.8
인체 삽입용 물품의 부분품	9021.90-9000	21,658,766	31,644,212	46.1
기타의 치과용 기기	9018.49-8000	35,763,841	30,730,289	-14.1
주사기등의 부분품	9018.39-9000	34,102,850	27,770,059	-18.6

[단위: US백만달러, %]



①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제9021.90-1000호)

인체에 삽입되는 스크루, 스테이플, 핀등의 FTA체약국으로부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였고 FTA 수입은 14.5%증가하였다.

협정별로는 EU산의 수입비중이 가장크고 다음으로 미국산이 차지한다. 2015년 EU산의 일반 수입은 전년대비 약 6% 감소하였지만, FTA 수입은 14.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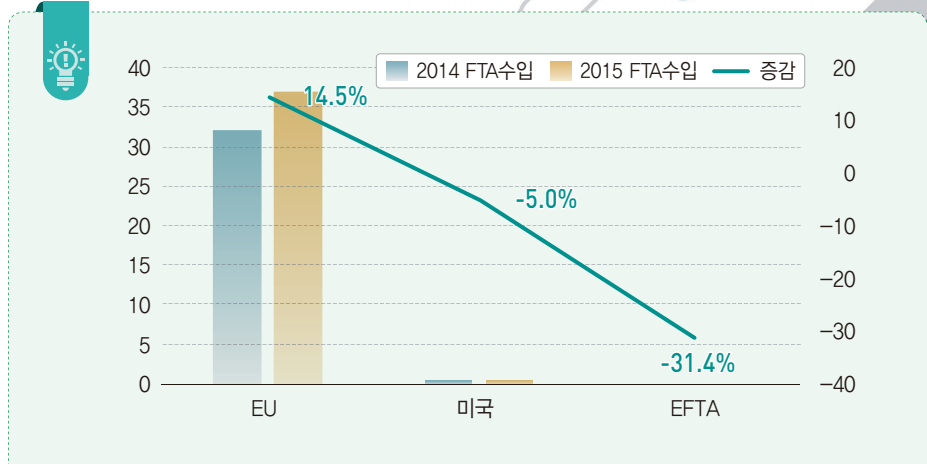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미국과 EFTA의 경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FTA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의 특혜 수입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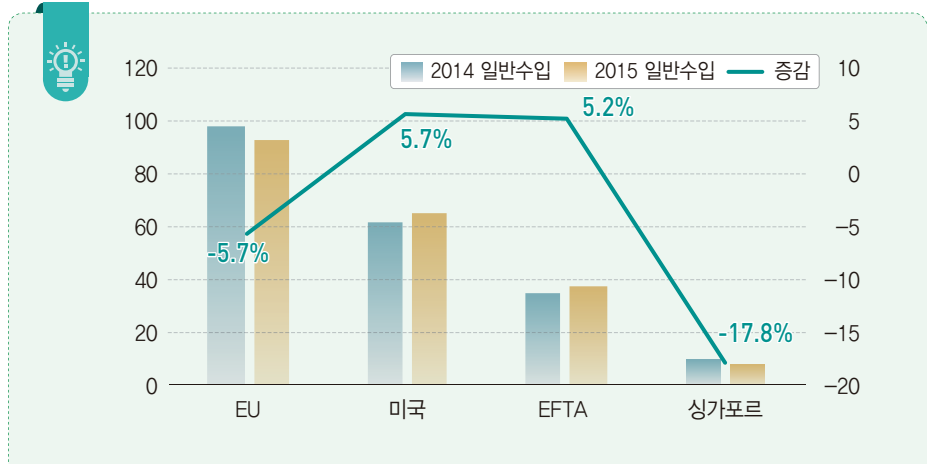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32,227,076	98,611,959	36,885,625	93,025,418	14.5	-5.7
미국	485,740	61,392,370	461,526	64,873,682	-5.0	5.7
EFTA	111,734	35,161,528	76,645	37,003,674	-31.4	5.2
싱가포르	-	9,767,215	-	8,032,957	-	-17.8
인도	-	204	167,054	332,109	-	162698.5
아세안	-	162,036	-	127,593	-	-21.3
터키	7,580	36,177	6,465	98,738	-14.7	172.9
캐나다		19,342	-	17,243	-	-10.9
호주		33,639	-	12,053	-	-64.2
합계	32,832,130	195,364,274	37,597,315	203,514,926	14.5	4.2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② 인조관절(제9021.31-0000호)

인조관절의 FTA체약국으로부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5.1% 증가였고 FTA 수입은 62% 급감하였다. 미국과 EU는 FTA체약국과의 인조관절 교역에서 수입비중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2015년 미국산 인조관절의 FTA 적용실적 급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EFTA로부터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4.2% 감소하였고 미국산을 제외한 그 외 국가의 FTA 수입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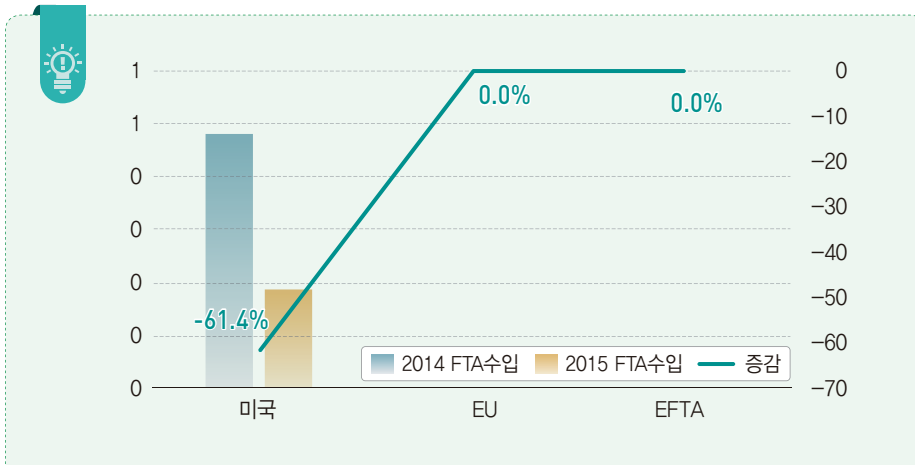
인조관절의 경우 각 협정별 일반수입실적에 비하여 FTA수입실적이 미미하여 FTA 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조관절의 특혜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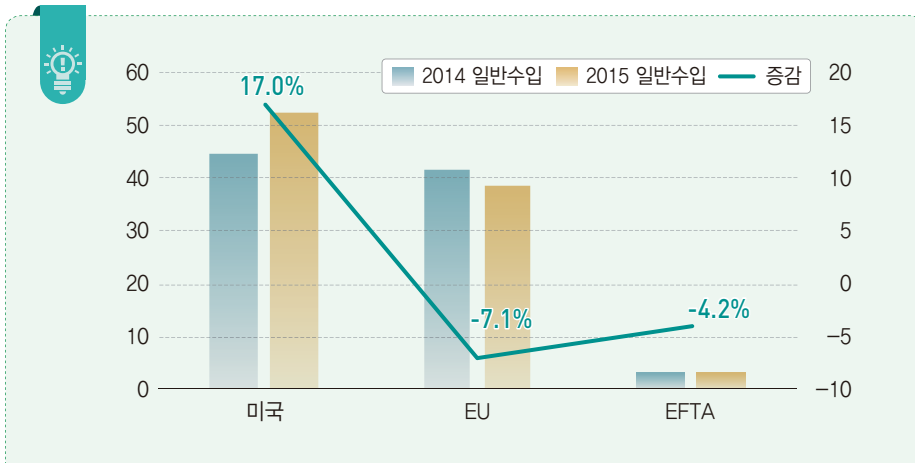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477,159	44,611,909	183,960	52,179,983	-61.4	17.0
EU	3,153	41,340,619	-	38,385,413	-	-7.1
EFTA	3,906	2,961,160	-	2,836,756	-	-4.2
아세안	-	61,338	-	126,391	-	106.1
합계	484,218	88,975,026	183,960	93,528,543	-62.0	5.1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③ 기타 수혈용 물품(제9018.39-8000호)

기타의 수혈용 물품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5.5%증가, FTA수입은 8.6%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아세안, 싱가포르로 나타났다. 미국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3.1%, FTA수입은 11.2% 증가하였다. EU의 경우 일반수입은 4.5% 감소한 반면 FTA수입은 2.9% 증가하여 FTA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산의 수입규모는 적은 수준이지만 일반수입 및 FTA 수입 모두 전년대비 폭증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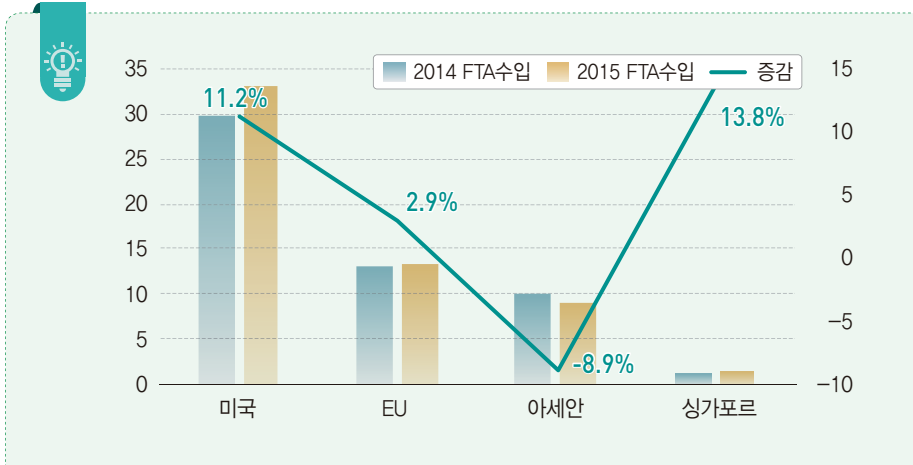
다른 의료기기품목들과 비교할 때 기타 수혈용 물품은 수입규모 대비 FTA활용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미국66%, EU 65%, 아세안 68% 등으로 주요 수입국 모두 60%이상의 FTA 활용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혈용 물품의 특혜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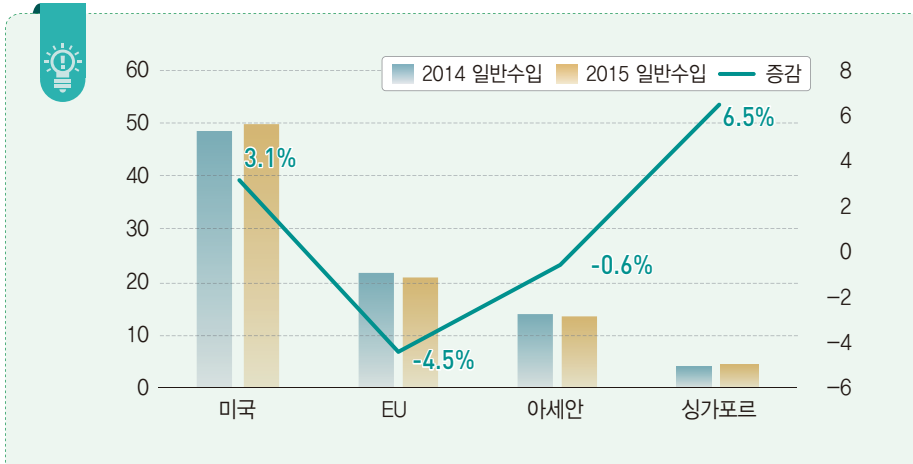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29,648,481	48,330,597	32,965,491	49,831,880	11.2	3.1
EU	13,125,621	21,733,239	13,511,859	20,759,198	2.9	-4.5
아세안	10,066,354	13,577,773	9,174,224	13,493,413	-8.9	-0.6
싱가포르	1,437,033	3,842,188	1,634,770	4,091,788	13.8	6.5
EFTA	11,742	688,671	23,531	647,957	100.4	-5.9
인도	5,003	10,673	46,789	88,106	835.2	725.5
캐나다		36,533	59,457	66,925	-	83.2
호주		5,658	1,294	6,763	-	19.5
터키	-	14	-	104	-	642.9
합계	52,857,201	84,340,967	57,416,121	88,980,665	8.6	5.5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④ 인체용 인조부품(제9021.39-0000호)

인체용 인조부품의 FTA 체약국으로부터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11.6%, FTA수입은 32.1%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EFTA, 호주, 싱가포르로 미국과 EU가 전체수입의 과반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산 인체용 인조부품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약 12%증가한 반면 FTA수입은 2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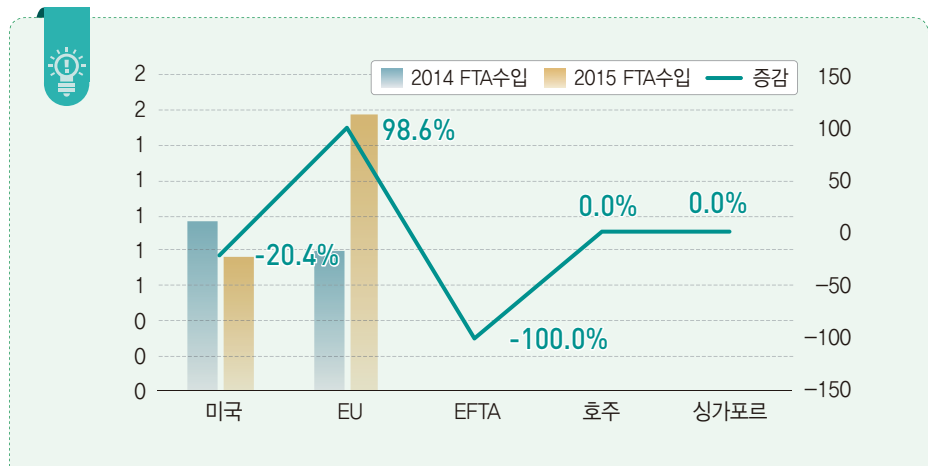
하지만 그 외 주요수입국인 EU의 경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13%감소하였으나 FTA수입은 98.6%로 크게 증가하여 FTA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물품의 FTA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데, 미국과 EU를 제외한 국가들의 FTA수입실적은 전무하고 미국과 EU의 활용률 역시 5%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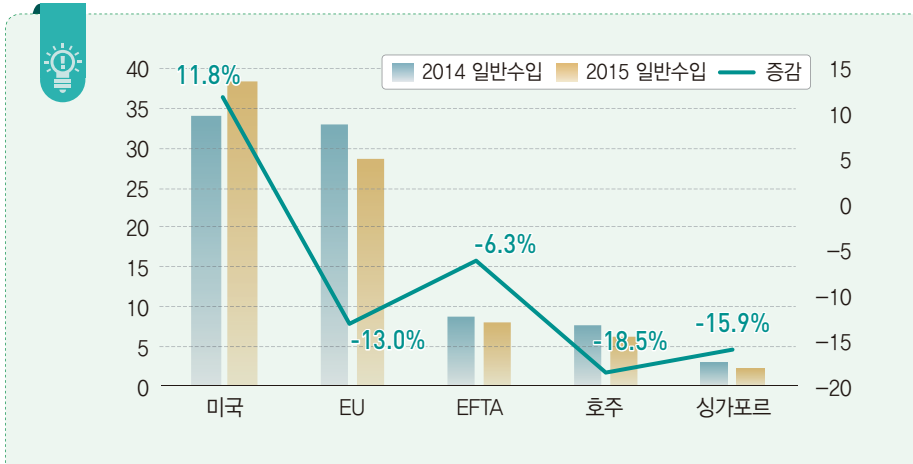
〈 인체용 인조부품의 특혜 수입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973,372	34,033,588	774,786	38,056,337	-20.4	11.8
EU	795,561	32,838,402	1,579,671	28,554,673	98.6	-13.0
EFTA	12,756	8,609,668	-	8,069,005	-100.0	-6.3
호주		7,543,644	-	6,149,260	-	-18.5
싱가포르	-	2,738,600	-	2,303,689	-	-15.9
터키	-	140,071	-	855,311	-	510.6
캐나다		5,871	-	215,830	-	3576.2
인도	-	22	-	215,033	-	977322.7
아세안	-	1,839	-	10,315	-	460.9
합계	1,781,689	75,623,590	2,354,457	84,429,453	32.1	11.6

(단위: US백만달러, %)





⑤ 카테터(제9018.39-2000호)

카테터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14.5%, FTA수입은 32%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싱가포르로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FTA 체약국 총수입의 87%를 차지한다.

미국산 카테터는 2015년 전년대비 일반수입(4.9%), FTA 수입(1.8%)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FTA 활용률은 평균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EU산의 경우 FTA 수입이 7.2% 증가하였고 FTA 활용률은 평균 27%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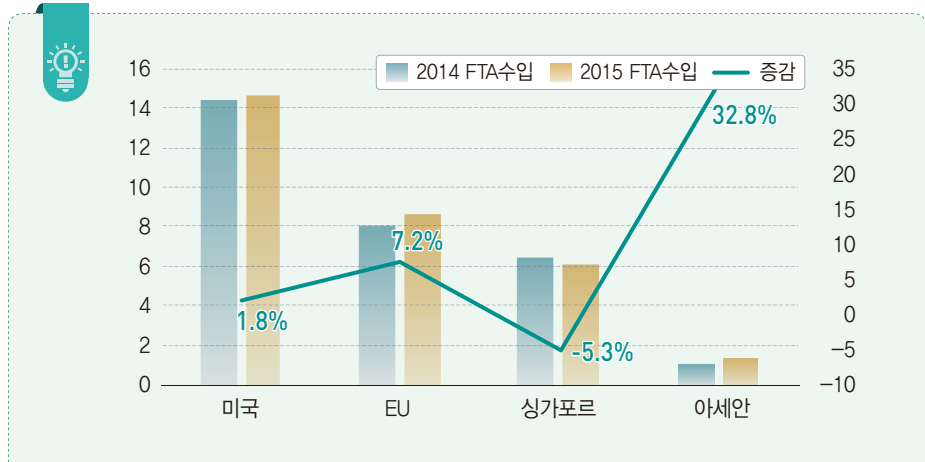
수입 3위 협정인 싱가포르의 경우 수입규모는 미국과 EU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FTA 활용률이 2년 연속 91% 수준으로 대부분의 카테터가 FTA 특혜를 적용받은 특징을 보인다.

〈카테터의 특혜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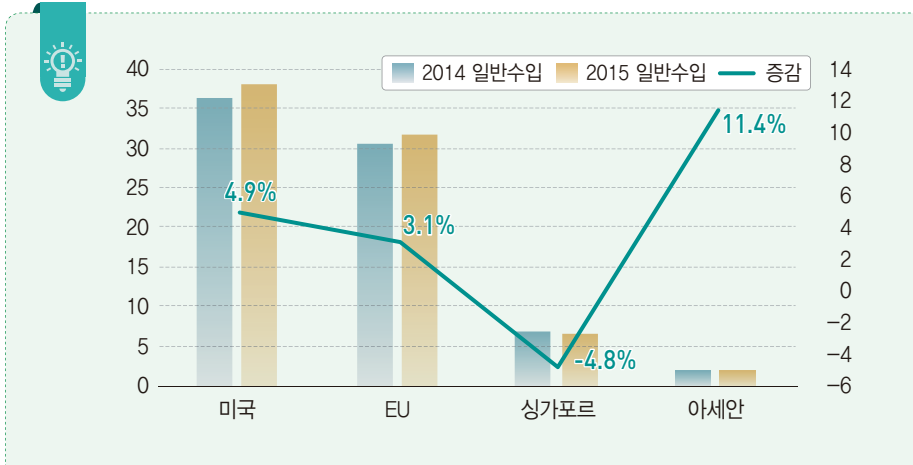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14,341,634	36,131,168	14,605,799	37,902,527	1.8	4.9
EU	8,103,870	30,637,679	8,684,565	31,572,165	7.2	3.1
싱가포르	6,461,464	7,060,226	6,120,612	6,721,653	-5.3	-4.8
아세안	1,082,499	1,989,979	1,437,809	2,217,089	32.8	11.4
EFTA	529,507	832,841	916,264	1,157,655	73.0	39.0
인도	195,712	197,179	229,588	238,887	17.3	21.2
캐나다			24,462	105,044	-	-
터키	24,135	52,047	16,229	45,217	-32.8	-13.1
호주			-	10,886	-	-
합계	24,277,357	69,840,893	32,035,328	79,971,123	32.0	14.5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⑥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제9021.90-8000호)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2.4%, FTA수입은 46.2%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EFTA 등으로 2015년 미국산과 EU산 수입이 상호 반대되는 형태를 보였다. 미국산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7.3%증가한 반면 EU산은 10%감소하였고, FTA 수입은 미국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EU산의 경우 9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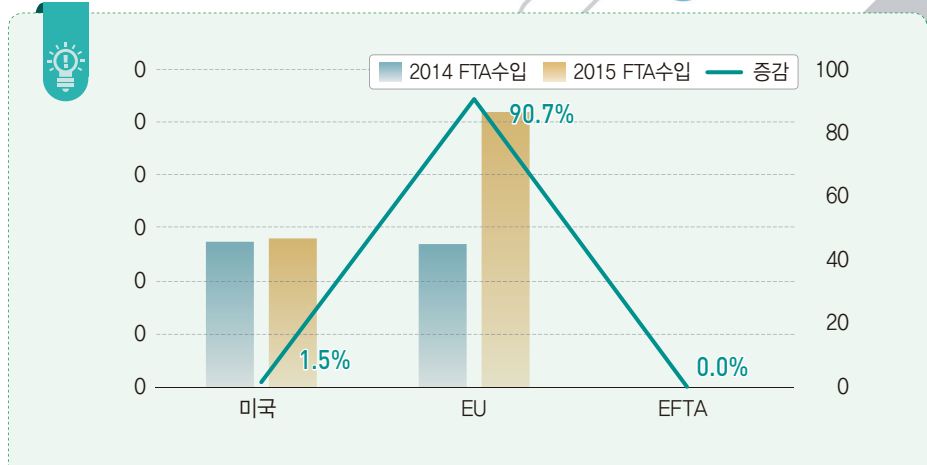
기타 인체 삽입용 물품 역시 인조관절과 마찬가지로 FTA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총수입에서 FTA 수입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의 특혜 수입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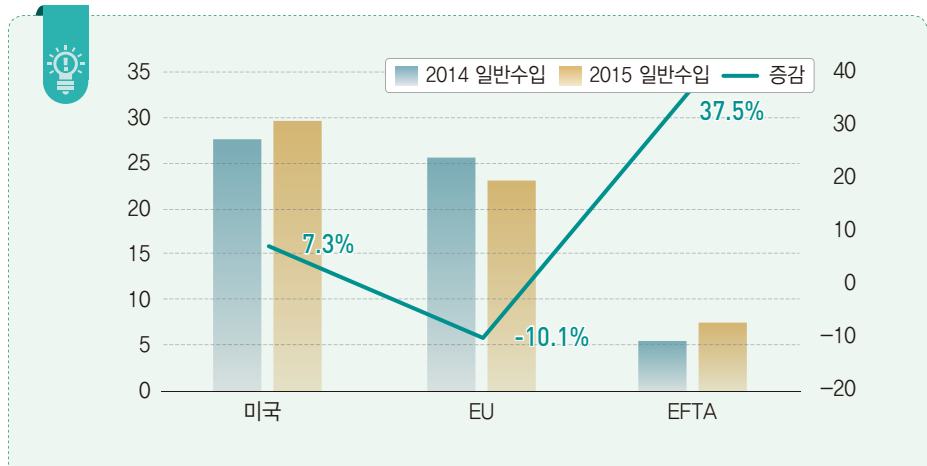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54,963	27,697,894	55,809	29,709,755	1.5	7.3
EU	54,531	25,679,657	103,991	23,087,154	90.7	-10.1
EFTA	-	5,395,314	315	7,416,519	-	37.5
아세안	-	91,458	-	54,257	-	-40.7
인도	-	-	-	1,724	-	-
캐나다	-	-	-	316	-	-
터키	-	3,761	-	-	-	-100.0
합계	109,494	58,868,084	160,115	60,269,725	46.2	2.4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⑦ 주사기(제9018.31-0000호)

주사기의 일반수입은 전년대비 약 40%, FTA수입은 41% 증가하여 가장큰 변화폭을 보여 주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EFTA, 인도 등으로 미국산이 49%, EU산이 23%, EFTA산의 19%의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사기의 수입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협정은 한-EU FTA로 2015년 전년대비 일반수입이 55% 증가하고 FTA 수입은 93% 폭증하였다. 또한 EU산 주사기의 FTA 활용률 역시 2014년 67%수준에서 2015년 84%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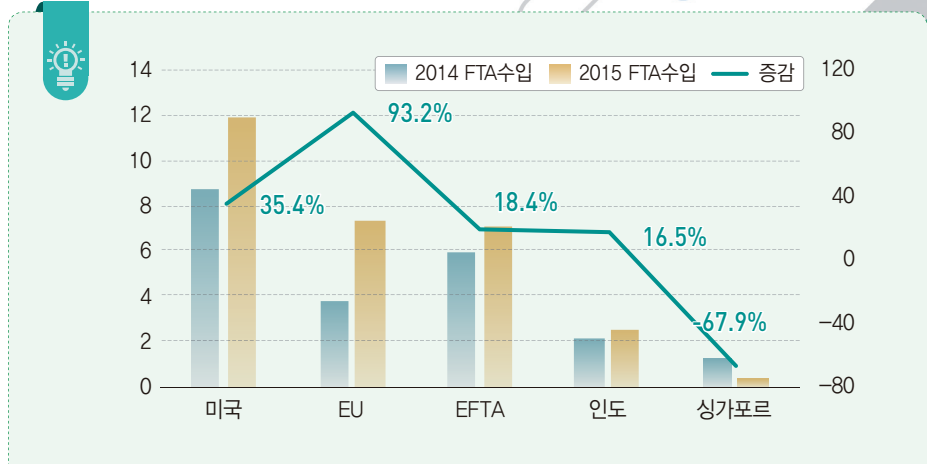
미국산의 경우 일반수입은 45%증가, FTA수입은 35% 증가하였고 FTA 활용률은 2년 평균 66%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EFTA는 미국과 EU에 대비하여 수입비중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FTA활용률은 2년연속 95%이상으로 대부분의 EFTA산 주사기가 특혜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사기의 특혜 수입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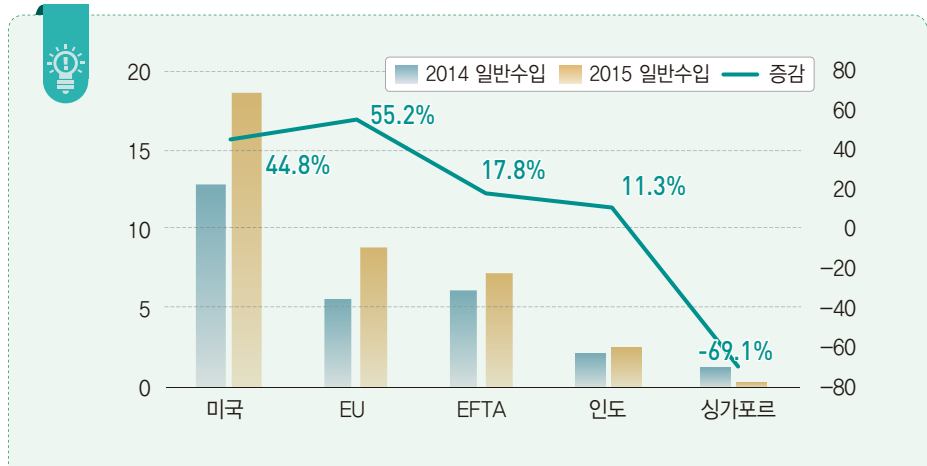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8,731,216	12,809,241	11,822,612	18,546,286	35.4	44.8
EU	3,808,069	5,672,789	7,357,616	8,805,607	93.2	55.2
EFTA	6,010,362	6,158,753	7,113,722	7,256,899	18.4	17.8
인도	2,183,160	2,297,835	2,544,330	2,556,359	16.5	11.3
싱가포르	1,270,239	1,403,240	408,119	433,736	-67.9	-69.1
캐나다			-	57,938	-	-
아세안	35,859	38,109	36,674	44,487	2.3	16.7
호주			-	228	-	-
터키	-	50	-	27	-	-46.0
합계	20,768,666	26,976,777	29,283,073	37,701,567	41.0	39.8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⑥ 인체삽입용 물품의 부분품(제9021.90-9000호)

인체삽입용 물품의 부분품의 일반수입(46%) 및 FTA수입(43%)은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호주순으로, 최근 발효한 호주산의 수입비중이 22%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호주산의 수입은 전년대비 약30% 감소하여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이 큰폭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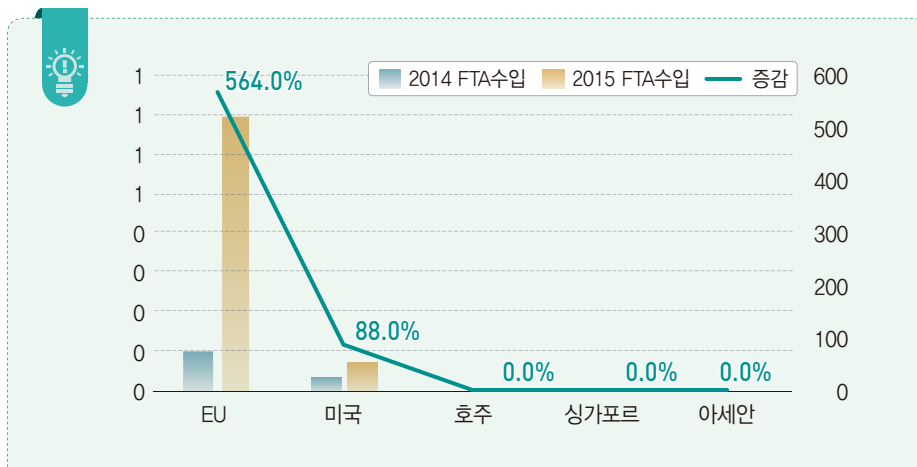
수입비중의 40%를 차지하는 EU산은 전년대비 일반수입은 감소한 반면 FTA 수입은 564%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다만 EU산 FTA 수입의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FTA 활용률은 5% 미만의 저조한 수준이어서 FTA 활용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인체삽입용 물품의 부분품의 특혜 수입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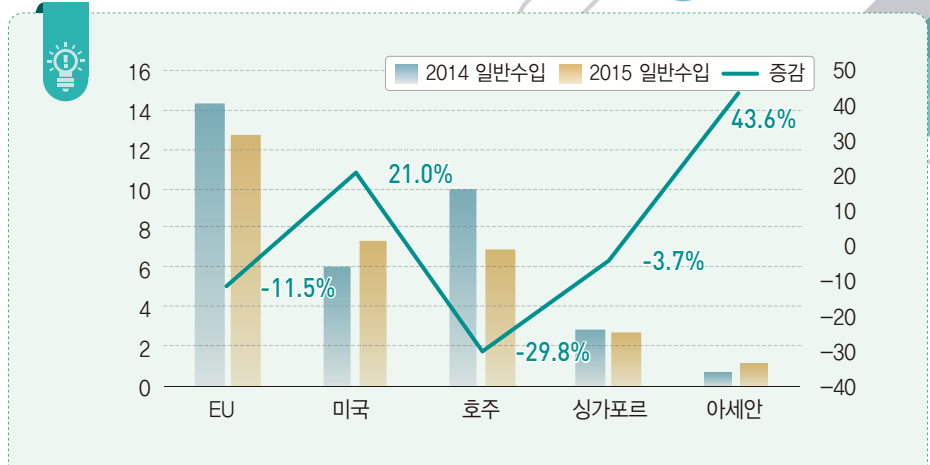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104,347	14,330,696	692,861	12,684,311	564.0	-11.5
미국	41,099	6,097,054	77,274	7,378,793	88.0	21.0
호주		9,907,299	-	6,953,616	-	-29.8
싱가포르	-	2,933,189	-	2,823,638	-	-3.7
아세안	-	861,458	-	1,237,343	-	43.6
EFTA	-	361,440	6,827	554,143	-	53.3
캐나다		172	-	12,352	-	7,081.4
터키	-	122	-	16	-	-86.9
인도	-	7,996			-	-100.0
합계	145,446	21,658,766	776,962	31,644,212	434.2	46.1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9 기타의 초과용 기기(제9018.49-8000호)

기타의 초과용 기기의 일반수입(14.1%) 및 FTA 수입(11.5%)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EU, 미국, EFTA로 EU로부터의 수입이 FTA체약국 총수입의 66%를 차지한다.

동 물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수입상위 의료기기 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FTA 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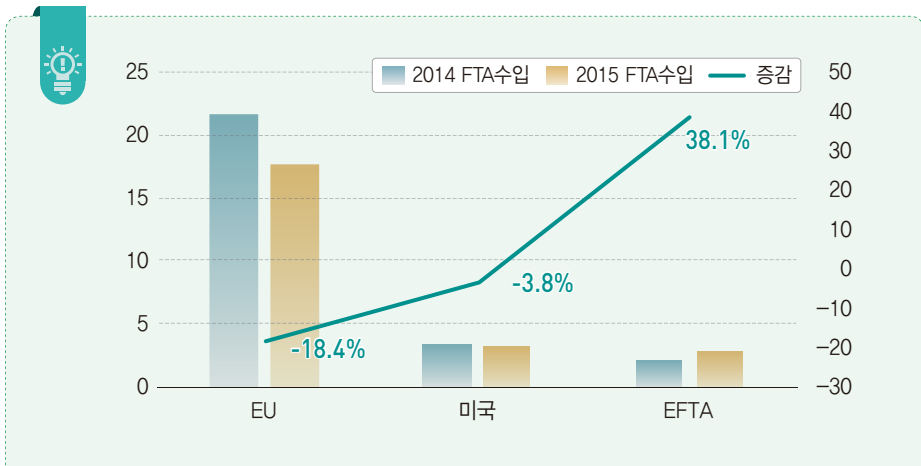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EU산의 FTA활용률은 80% → 87%으로 증가하였고, 미국산의 경우 2년 연속 평균 62%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초과용 물품 특혜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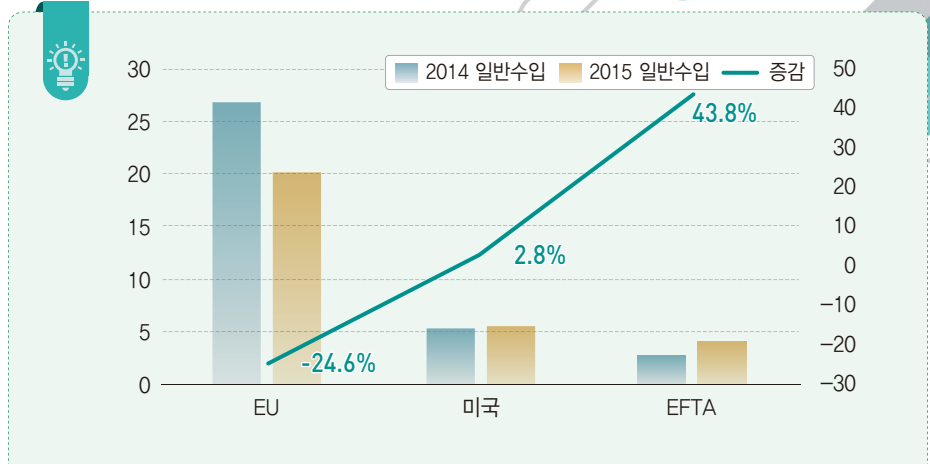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21,665,915	27,045,628	17,687,543	20,389,104	-18.4	-24.6
미국	3,509,078	5,460,296	3,375,208	5,613,991	-3.8	2.8
EFTA	2,135,287	2,881,744	2,948,647	4,143,960	38.1	43.8
캐나다		26,489	243,414	247,569	-	834.6
아세안	41,253	165,394	38,705	214,836	-6.2	29.9
터키	210,724	210,724	74,442	74,442	-64.7	-64.7
호주		23,168	33,555	34,233	-	47.8
싱가포르		52	-	12,134	-	23,234.6
인도	-	55	-	20	-	-63.6
합계	27,562,257	35,763,841	24,401,514	30,730,289	-11.5	-14.1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⑩ 주사기등의 부분품(제9018.39-9000호)

제9018.39-9000호에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분류된다. 동 물품의 경우 2015년 FTA체약국으로부터 전년대비 일반수입은 감소하였으나 FTA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수입비중은 미국산 33%, 터키산 32%, EU산 20%로 일반적인 의료기기 수입비중이 미국과 EU에 편중된 것에 비하여 터키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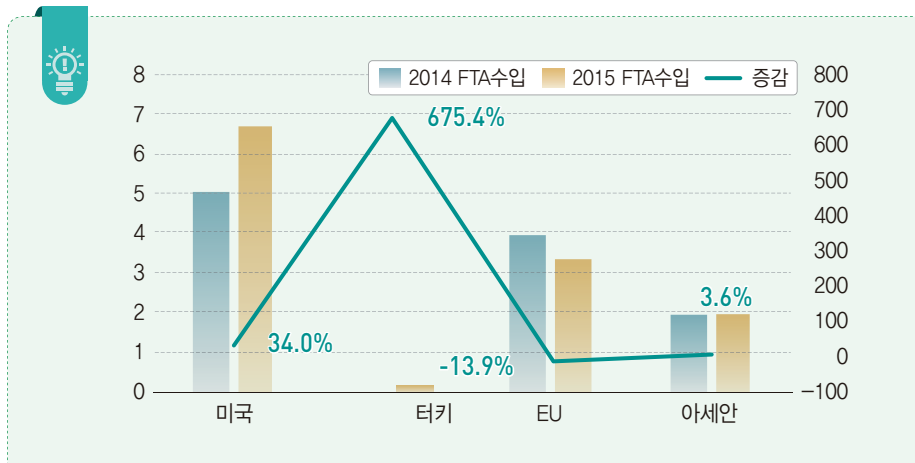
수입 1위를 차지하는 미국산이 일반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FTA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점, 수입 2위에 해당하는 터키산의 일반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FTA 수입은 675%의 폭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산의 FTA 활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터키산의 일반수입 대비 FTA 수입비중은 매우 저조하므로 동 물품의 한-터키 FTA 활용 저조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사기등의 부분품의 특혜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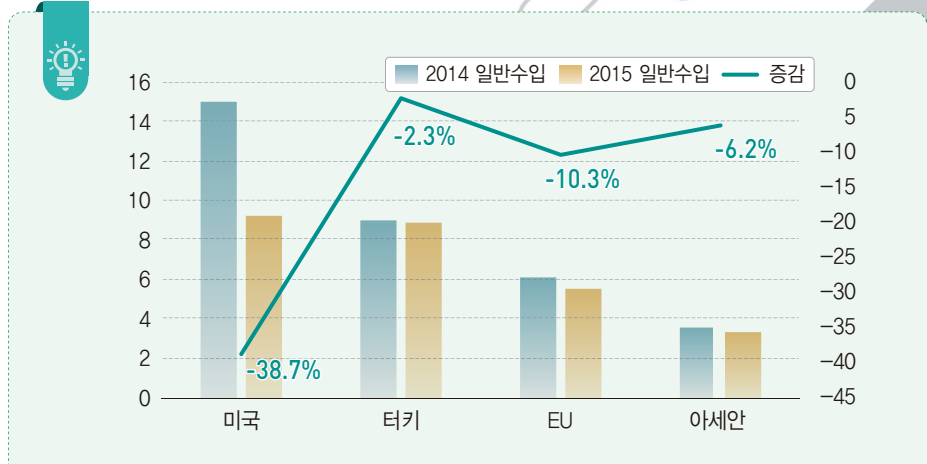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4,988,976	14,997,729	6,683,504	9,191,410	34.0	-38.7
터키	26,964	9,031,667	209,078	8,826,769	675.4	-2.3
EU	3,901,993	6,146,870	3,360,319	5,515,688	-13.9	-10.3
아세안	1,914,184	3,653,210	1,982,154	3,427,551	3.6	-6.2
EFTA	3,446	199,545	415,599	594,066	11,960.3	197.7
인도	62,843	73,829	167,568	176,673	166.6	139.3
싱가포르	23,132	47,726	20,865	36,412	-9.8	-23.7
호주			-	806	-	-
캐나다			-	684	-	-
합계	10,898,406	34,102,850	12,839,087	27,770,059	17.8	-18.6

(단위: US백만달러, %)



(단위: US백만달러, %)



4. 품목별 FTA 수출동향

2015년 기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한 의료기기 중에서 상위 10대 품목의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0대 품목 모두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치과용 기기 65%, 호흡용기기의 부분품 46%, 산부인과용 기기가 160%의 큰 증가세를 나타내어 의료기기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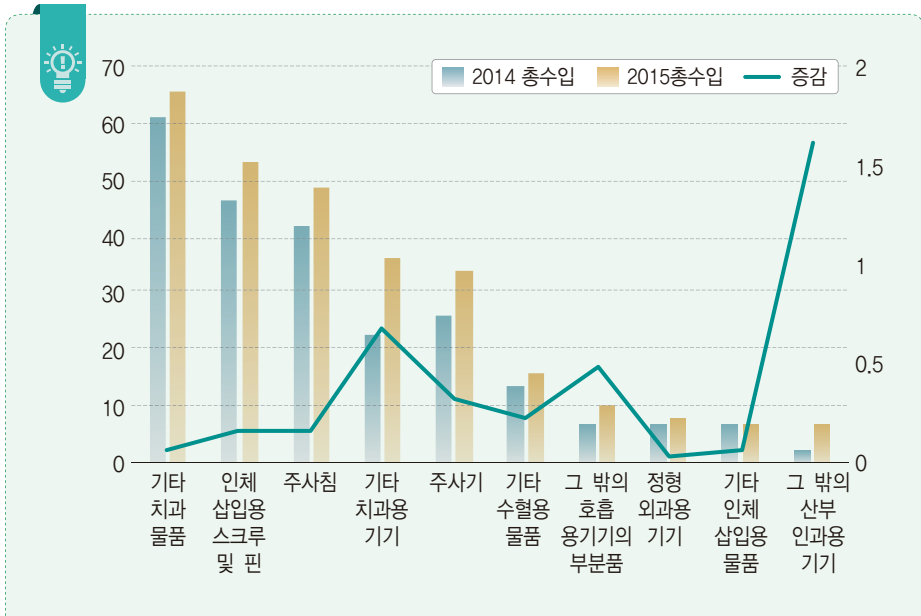
FTA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정형외과용 기기나 의료용품에 집중된 반면 수출의 경우 치과용 물품 및 기기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의로기기 10대 수출품목 현황 〉

(단위: US달러, %)

품명	HS code	2014총수출	2015총수출	증감
기타 치과 물품	9021.29-0000	61,080,815	64,970,403	6.4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	9021.90-1000	46,251,272	53,419,397	15.5
주사침	9018.32-1000	41,741,191	48,141,130	15.3
기타 치과용 기기	9018.49-8000	22,222,477	36,590,925	64.7
인조관절	9021.31-0000	25,414,625	33,470,397	31.7
기타 수혈용 물품	9018.39-8000	13,267,230	16,046,560	20.9
그 밖의 호흡용기기의 부분품	9020.00-9000	6,599,498	9,628,091	45.9
정형외과용 기기	9021.10-0000	7,309,462	7,444,699	1.9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	9021.90-8000	6,733,130	7,036,103	4.5
그 밖의 산부인과용 기기	9018.90-9020	2,706,352	7,027,824	159.7

(단위: US백만달러, %)



① 기타 치과물품(제9021.29-0000호)

기타의 치과물품의 FTA체약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수출1위인 EU로의 수출은 11.5%감소하였지만, 그 외 모든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EU와 미국으로 EU 41%, 미국 32%, 아세안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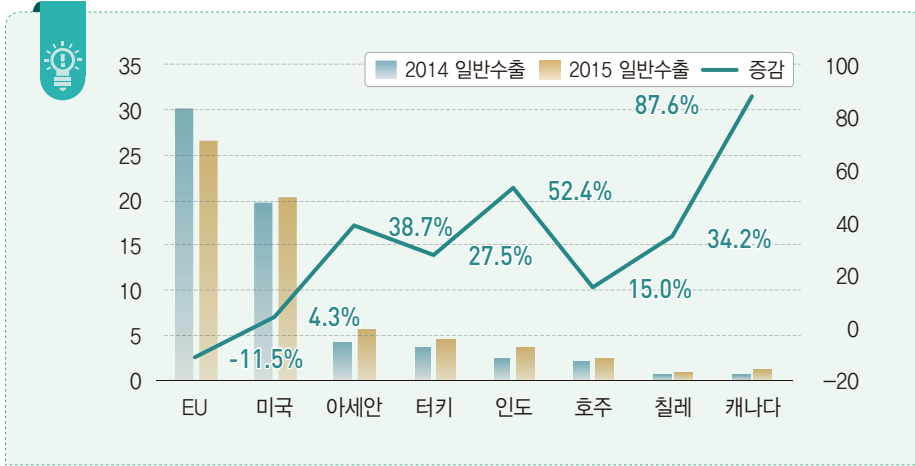
한편 동 물품의 수출시 FTA 수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협정국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EFTA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의료기기의 관세율이 무관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무관세를 통해 관세장벽은 낮추었으나 의료기기의 표준이나 인증제 등의 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이 높아 수출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 기타 치과물품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	30,081,707	-	26,632,467	-	-11.5
미국	-	19,640,732	-	20,484,365	-	4.3
아세안		4,177,927	230,629	5,793,574	-	38.7
터키	-	3,668,273	-	4,677,016	-	27.50
인도		2,418,846	129,020	3,685,658	-	52.4
호주		2,281,743	-	2,623,990	-	15.0
칠레	75,285	813,126	169,905	1,091,091	125.7	34.2
캐나다		686,175	-	1,287,417	-	87.6
페루	-	160,484	8,345	464,363	-	189.4
EFTA	-	119,720	-	353,021	-	194.9
합계	75,285	61,080,815	537,899	64,970,403	614.5	6.4

(단위: US백만달러, %)



②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제9021.90-1000호)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의 FTA체약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다. 수출 비중은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EU로의 수출은 1.2%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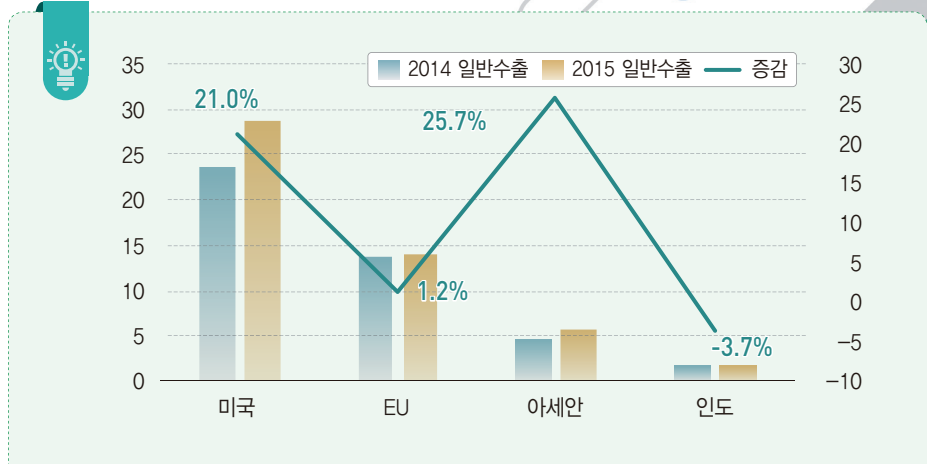
동 물품도 아세안, 인도, 칠레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국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의 여지가 없어 FTA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체 삽입용 스크루 및 핀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23,761,699	-	28,747,251	-	21.0
EU	-	13,815,019	-	13,979,318	-	1.2
아세안	-	4,548,066	142,600	5,718,531	-	25.7
인도	-	1,788,108	516,230	1,721,720	-	-3.7
EFTA	-	881,004	-	855,523	-	-2.9
호주	-	527,894	-	667,409	-	26.40
터키	-	1,169,049	-	593,626	-	-49.2
캐나다	-	473,196	-	538,591	-	13.8
칠레	5,506	254,946	-	458,472	-100.0	79.8
페루	-	33,381	-	138,956	-	316.3
합계	5,506	46,251,272	658,830	53,419,397	11,865.7	15.5

(단위: US백만달러, %)



③ 주사침(제9018.32-1000호)

주사침의 FTA체약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아세안, 터키 순으로 미국과 EU로의 수출이 FTA 체약국 총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주사침 또한 미국, EU, 터키, EFTA, 캐나다, 호주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FTA 특혜수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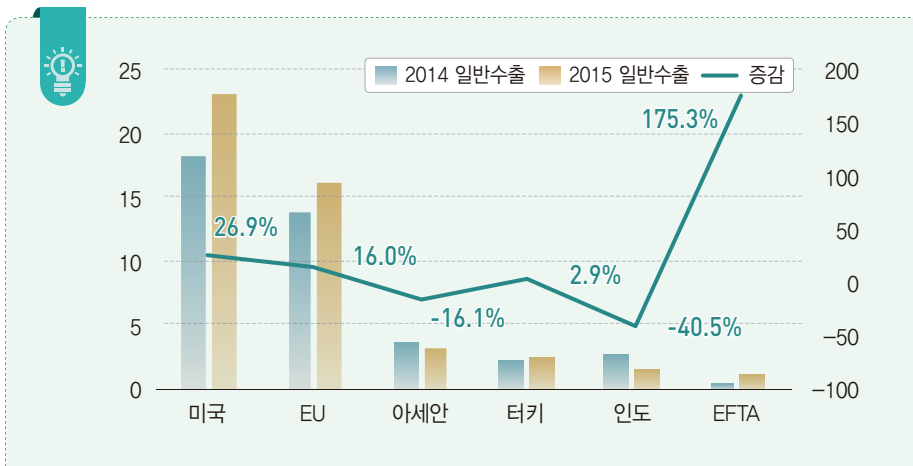
다만 수출규모는 미미하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세안, 인도, 페루 등으로의 일반 수출은 감소한 반면에 FTA 수출이 증가한 것은 향후 FTA를 통한 수출확대의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사침의 특혜 수출동향〉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18,304,697	-	23,236,008	-	26.9
EU	-	13,995,572	-	16,238,237	-	16.0
아세안		3,739,063	283,873	3,135,402	-	-16.1
터키	-	2,406,143	-	2,476,546	-	2.9
인도		2,682,235	817,141	1,596,148	-	-40.5
EFTA	-	396,509	-	1,091,684	-	175.3
페루	25,200	205,350	154,400	208,408	512.7	1.5
캐나다		422,767	-	118,769	-	-71.9
호주		30,083	-	23,548	-	-21.7
칠레	-	11,622	5,700	16,380	-	40.9
합계	25,200	41,741,191	1,261,114	48,141,130	4,904.4	15.3

(단위: US백만달러, %)



4 기타 치과용 기기(제9018.49-8000호)

기타 치과용 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수준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전협정에 걸쳐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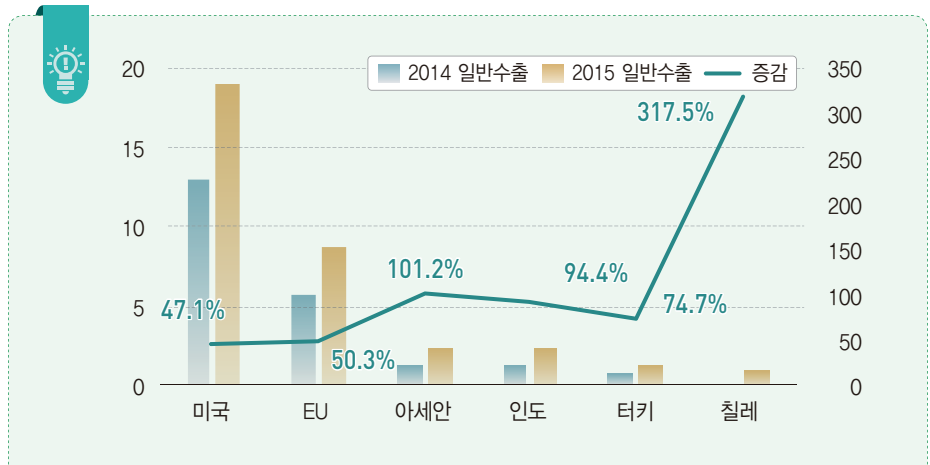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으로 모두 전년대비 대폭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세안, 인도, 터키, 칠레, 페루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 물품 역시 미국, EU 등은 무관세이지만 아세안, 인도, 칠레 등은 FTA 특혜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치과용 기기의 특혜 수출동향〉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12,900,165	-	18,970,218	-	47.1
EU	-	5,767,308	-	8,665,527	-	50.3
아세안		1,185,747	159,111	2,386,021	-	101.2
인도		1,222,724	297,080	2,377,514	-	94.4
터키	-	733,896	-	1,282,139	-	74.7
칠레	23,330	240,586	29,284	1,004,393	25.5	317.5
페루	-	48,928	-	699,707	-	1,330.1
캐나다		910,499	-	739,928	-	-18.7
호주		703,745	-	468,464	-	-33.4
EFTA	-	123,123	-	123,371	-	0.2
합계	23,330	22,222,477	485,475	36,590,925	1,980.9	64.7

(단위: US백만달러, %)



⑤ 인조관절(제9021.31-0000호)

인조관절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아세안, EU순으로 미국이 88%의 절대적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조관절의 미국으로의 일반 수출은 전년대비 30%, 아세안으로는 100%이상의 증가를 실현하여 총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아세안으로의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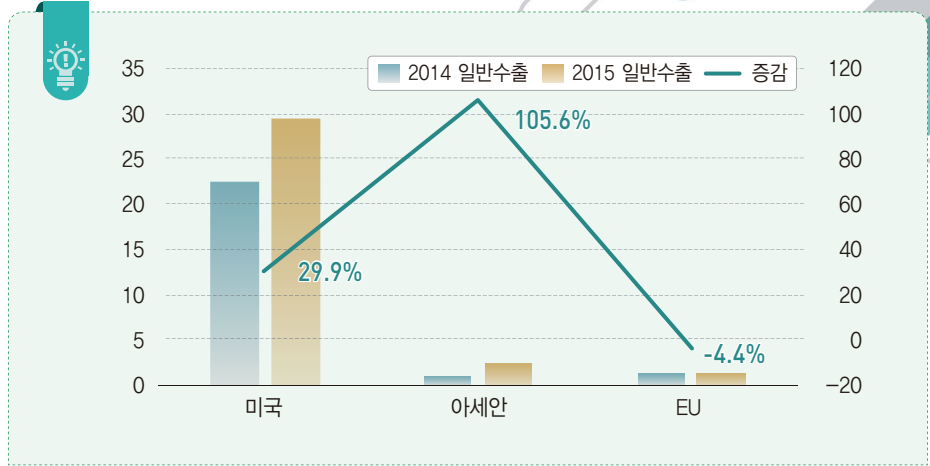
인조관절 역시 EU, 미국, 호주, 캐나다, EFTA 등의 경우 무관세 물품으로 FTA 활용여지가 없으나 아세안의 경우 FTA활용이 가능하고 2015년 FTA 수출비중도 큰편으로 확인된다.

< 인조관절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22,593,291	-	29,349,945	-	29.9
아세안	-	1,272,899	1,100,588	2,616,939	-	105.6
EU	-	1,371,278	-	1,310,397	-	-4.4
터키	-	94,035	-	78,260	-	-16.8
인도		78,144	750	52,493	-	-32.8
캐나다		314,757	-	29,987	-	-90.5
호주		63,272	-	28,704	-	-54.6
EFTA	-	2,420	-	2,760	-	14.0
칠레	648	758	-	912	-100.0	20.3
페루	1,800	1,800			-100.0	-100.0
합계	2,448	25,414,625	1,101,338	33,470,397	44,889.3	31.7

(단위: US백만달러, %)



⑥ 기타 수혈용 물품(제9018.39-8000호)

기타수혈용 물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수준이고 특히 미국, 인도, 터키, 칠레 등으로의 수출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요수출국은 EU와 미국으로 총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물품도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에서 무관세 물품으로 FTA 활용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도는 동 물품의 기본세율이 12.5%, FTA 특혜세율이 0%로 인도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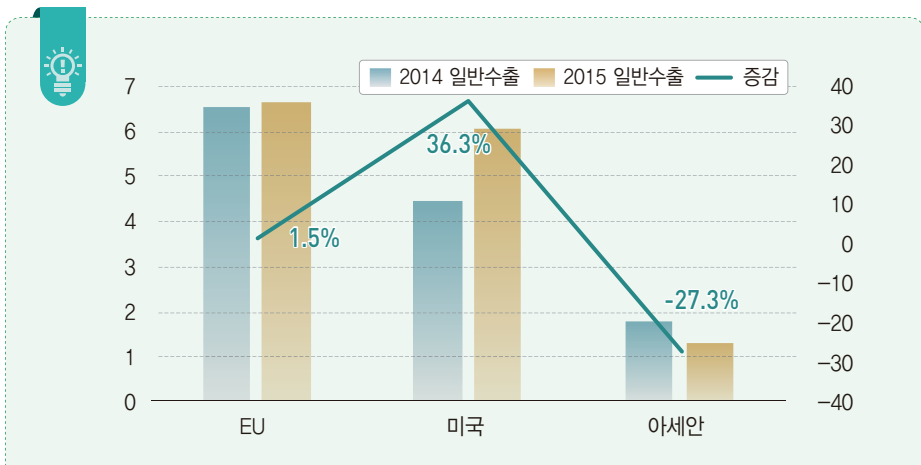


〈 기타 수혈용 물품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	6,515,928	-	6,614,930	-	1.5
미국	-	4,427,591	-	6,033,483	-	36.3
아세안		1,775,497	179,261	1,290,378	-	-27.3
인도		273,900	3,671	631,256	-	130.5
터키	-	209,016	-	565,609	-	170.6
호주		488,723	-	493,881	-	1.1
캐나다		216,421	-	304,388	-	40.6
EFTA	-	47,867	-	90,602	-	89.3
칠레	-	11,400	-	31,485	-	176.2
페루	-	6,031			-	-100.0
합계	-	13,267,230	182,932	16,046,560	-	20.9

(단위: US백만달러, %)



7 그 밖의 호흡용기기의 부분품(제9020.00-9000호)

그 밖의 호흡용기기의 부분품이 주로 수출되는 FTA 체약국은 아세안과 페루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수출이 미국에 집중된 반면 동 물품의 경우 아세안과 페루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06%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주요 수출국인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450%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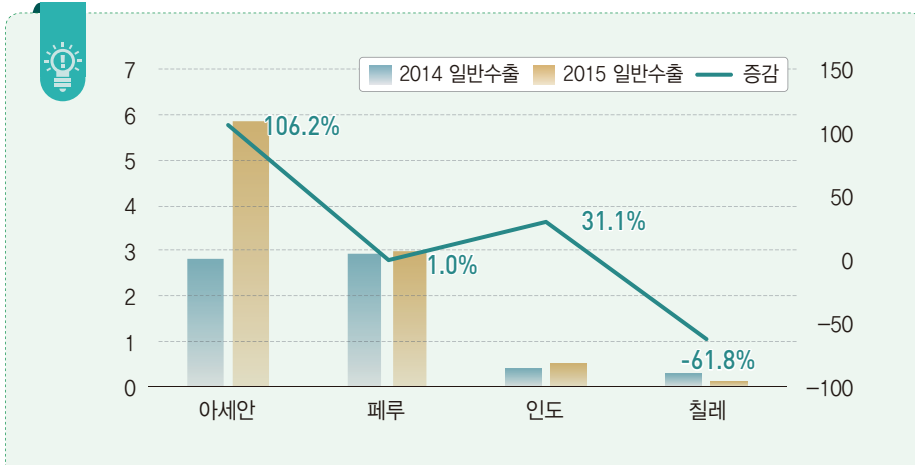
개별국가로서 절대적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페루의 경우 동 물품이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의 실익이 없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협정세율적용의 실익이 존재한다.

〈그 밖의 호흡용기기의 부분품의 특혜 수출동향〉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아세안		2,860,583	1,431,426	5,897,705	-	106.2
페루	-	2,964,231	-	2,994,426	-	1.0
인도		416,912	-	546,426	-	31.1
칠레	336,377	336,377	128,392	128,392	-61.8	-61.8
미국	-	5,316	2,518	29,966	-	463.7
터키	-	-	-	21,066	-	-
EU	11,814	16,079	4,875	10,110	-58.7	-37.1
합계	348,191	6,599,498	1,567,211	9,628,091	350.1	45.9

(단위: US백만달러, %)



③ 정형외과용 기기(제9021.10-0000호)

정형외과용 기기의 수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9% 증가에 그쳤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최근 FTA가 발효된 캐나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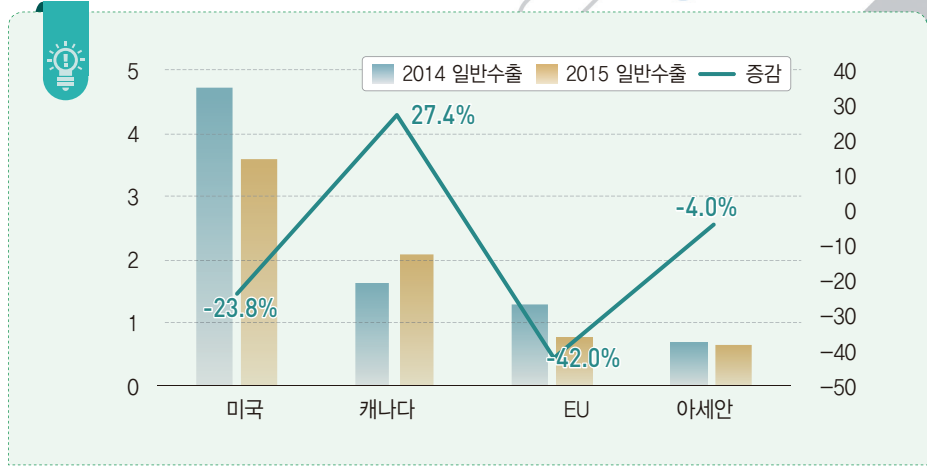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반면 캐나다의 경우 FTA 발효이후 27% 증가하였다. 동 물품은 캐나다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 실익은 없지만,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무역원활화 등의 제반 무역환경 개선 등이 수출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 정형외과용 기기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4,748,735	-	3,618,983	-	-23.8
캐나다	-	1,642,981	-	2,092,870	-	27.4
EU	-	1,311,445	-	760,593	-	-42.0
아세안	-	686,065	138,657	658,950	-	-4.0
인도	-	119,470	5,401	168,408	-	41.0
터키	-	398,628	-	98,734	-	-75.2
칠레	-	38,705	300	23,625	-	-39.0
EFTA	-	1,495	-	12,974	-	767.8
호주	-	902	-	9,519	-	955.3
페루	4,549	4,919	-	43	-100.0	-99.1
합계	4,549	7,309,462	144,358	7,444,699	3,073.4	1.9

(단위: US백만달러, %)



⑨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제9021.90-8000호)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약 4.5%증가한 수준이고 특히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중에서 EU로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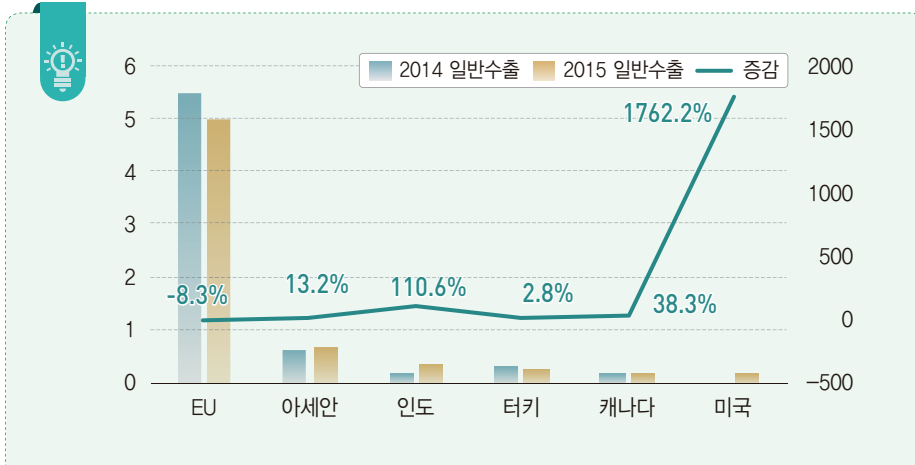
EU 수출 주요국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프랑스로의 수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 물품 역시 EU에서는 무관세 물품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인체삽입용 물품의 특혜 수출동향〉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EU	-	5,522,049	-	5,065,954	-	-8.3
아세안		624,846	249,231	707,289	-	13.2
인도		180,678	128,832	380,455	-	110.6
터키	-	279,394	-	287,201	-	2.8
캐나다		163,501	-	226,047	-	38.3
미국	-	11,943	-	222,397	-	1,762.2
칠레	114,217	114,220	136,994	137,004	19.9	19.9
호주		14,585	-	14,120	-	-3.2
합계	114,217	6,733,130	515,057	7,036,103	350.9	4.5

(단위: US백만달러, %)



⑩ 그 밖의 산부인과용 기기(제9018.90-9020호)

그 밖의 산부인과용 기기의 수출은 전년대비 16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363%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물품도 미국에서는 무관세 물품에 해당하므로 FTA 활용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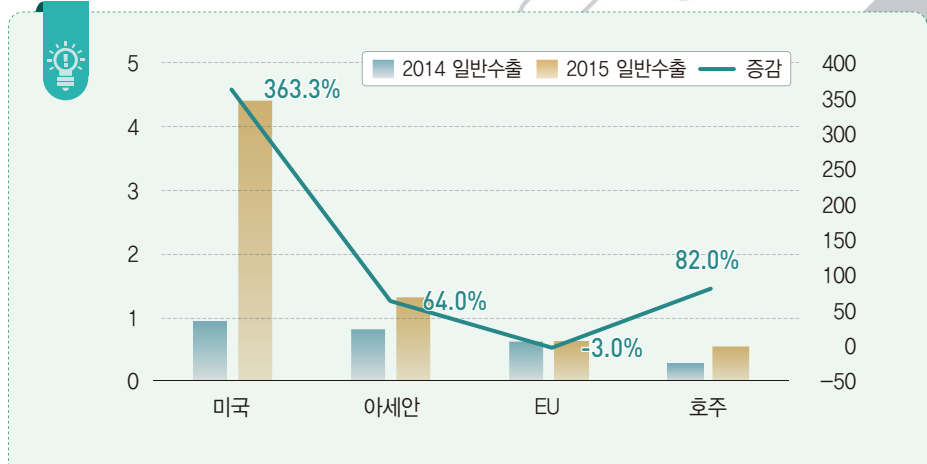
수출 2위에 달하는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는데 태국과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그 밖의 산부인과용 기기의 특혜 수출동향 〉

(단위: US달러, %)

구분	2014		2015		FTA 증감	일반증감
	FTA	일반	FTA	일반		
미국	-	956,186	-	4,429,821	-	363.3
아세안		813,182	315,431	1,333,386	-	64.0
EU	-	634,057	-	615,324	-	-3.0
호주		296,935	-	540,482	-	82.0
터키	-	237,197	-	96,823	-	-59.2
인도		6,250	6,288	11,988	-	91.8
EFTA	-	35,000			-	-100.0
페루	-	24,480			-	-100.0
합계	-	2,706,352	321,719	7,027,824	-	159.7

(단위: US백만달러, %)



5. 결론 및 시사점

FTA 체약국과의 의료기기 교역변화를 검토한 결과 비체약국에 비하여 체약국으로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FTA를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시장의 확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TA 활용의 측면에서 수입과 수출의 큰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의료기기의 수입의 경우 수입상위 품목 대부분이 각 협정별 FTA 협정세율에 따른 FTA 활용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의 경우 의료기기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가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FTA가 발효된 중국은 미국 및 EU와 더불어 의료기기 핵심 수출국이지만, 미국과 EU가 의료기기를 무관세 품목으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한 FTA 활용 실익이 큰 국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177.7억 달러로 세계 4위에 달하고, 2019년 까지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24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시 FTA활용이 중요한 수출경쟁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한중 FTA 뿐만 아니라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양 협정의 활용실익을 비교하여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를 중심으로 2016년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9018호 중에서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제9018.90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므로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의 적극적 FTA활용 전략이 요구된다.

제9018호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제9018호는 대체로 상품인 의료기기와 그 재료가 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동일한 4단위 호(제9018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산지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6년 중국의 의료기기 관세율 현황 및 FTA 활용실익 〉

6단위	8단위	MFN	한·중FTA	APTA	활용실익	한·중FTA양허유형
9018.11	90181100	5	3	x	한·중FTA	5
9018.12	90181210	7	6	6	한·중FTA	15
	90181291	5	4.8	4.5	APTA	PR-10
	90181299	5	4.8	4.5	APTA	PR-10
9018.13	90181310	4	3.4	x	한·중FTA	15
	90181390	4	3.4	x	한·중FTA	15
9018.14	90181400	5	4.3	x	한·중FTA	15
9018.19	90181930	4	2.4	3.5	한·중FTA	5
	90181941	4	0	3.5	한·중FTA	0
	90181949	4	X	3.5	APTA	E
	90181990	4	0	3.5	한·중FTA	0

6단위	8단위	MFN	한·중FTA	APTA	활용실익	한·중FTA양허유형
9018.20	90182000	4	2.4	x	한·중FTA	5
9018.31	90183100	8	6.4	7.6	한·중FTA	10
9018.32	90183210	8	6.4	7	한·중FTA	10
	90183220	4	0	3.5	한·중FTA	0
9018.39	90183900	4	2.4	x	한·중FTA	5
9018.41	90184100	4	0	x	한·중FTA	0
9018.49	90184910	4	3.2	x	한·중FTA	10
	90184990	4	2.4	x	한·중FTA	5
9018.50	90185000	4	3.4	3.5	한·중FTA	PR-35
9018.90	90189010	4	0	3.5	한·중FTA	0
	90189020	4	0	3.5	한·중FTA	0
	90189030	4	0	3.5	한·중FTA	0
	90189040	4	0	3.5	한·중FTA	0
	90189050	4	0	3.5	한·중FTA	0
	90189060	4	0	3.5	한·중FTA	0
	90189070	4	2.4	3.5	한·중FTA	5
	90189080	4	0	2	한·중FTA	0
	90189090	4	2.4	3.5	한·중FTA	5

자료 : 중국의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 EXP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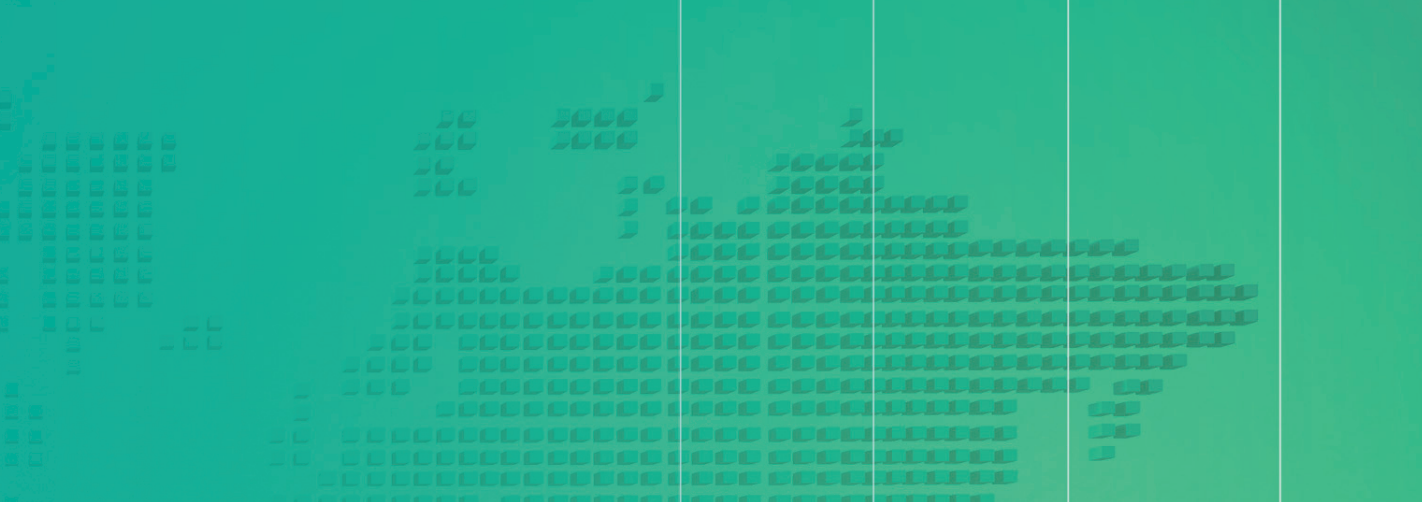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한-EU FTA 발효 5주년, 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한-EU FTA 발효 5년, 농산물 수입 동향 및 시사점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한-EU FTA 발효 5주년, 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에서 유럽연합(EU)은 2015년 기준으로 수출 5위(6.6% 점유), 수입 7위(3.6% 점유)를 차지한다. 경제권 규모에 비하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대비하여 수산물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발효 5주년에 즈음하여 한-EU 수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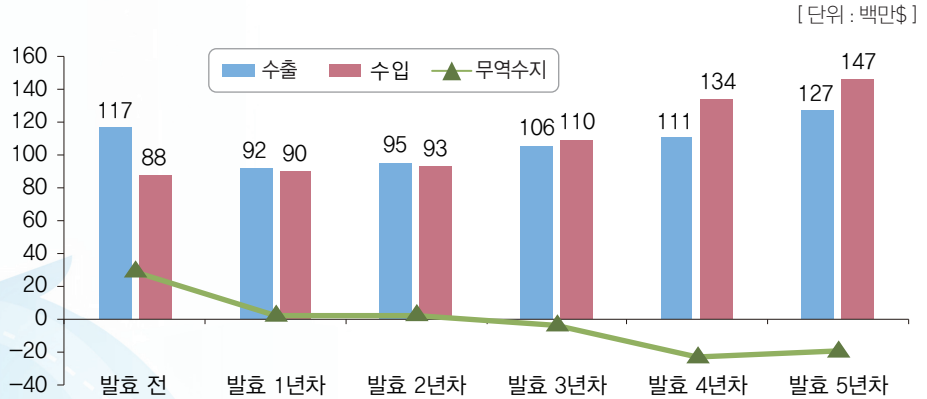
1. 한-EU 수산물 교역 개황

한-EU FTA 발효 5년차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로 발효 전 동기 대비 34.1%, 발효 4년차 동기 대비 12.0% 증가하였다.① 발효 전 대비 수출액은 9.0%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인 데 반해 수입액은 67.4% 증가한 1억 5천만 달러로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전후 흑자 기초였던 수산물 무역수지는 발효 3년차부터 적자세로 전환되어 발효 5년차에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발효 후 5년 동안의 교역 추이를 보면 對EU 수입은 발효 후 1~2년차에는 소폭 증가했다가 3년차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對EU 수출은 발효 직후 크게 감소했다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발효 5년차에 발효 전 수준을 초과했다.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한동안 지속된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발효 5년차 對EU 수출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으로 많으며, 발효 전 대비 프랑스가 3.4배 증가한 반면 스페인은 70%가량 감소하였다. 수입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으로부터 많으며, 발효 전 대비 영국이 1.2배, 스페인이 1.6배, 이탈리아가 1.1배 증가하였고 프랑스가 7%가량 감소하였다.

〈 한-EU 수산물 교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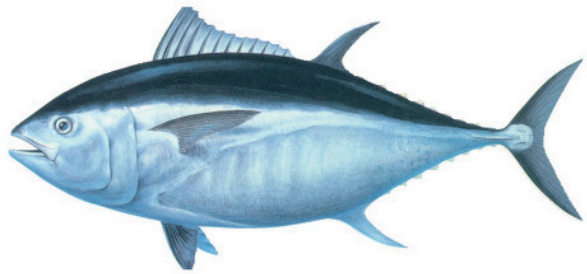


주: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① 한-EU FTA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양허 일정 상의 한 연차이다. 2016년의 경우 현재 5월까지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동기간 비교를 위해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한 연차로 간주하여 기술하였다(즉, 발효 전: '10.7.1~'11.5.31, 발효 1년차: '11.7.1~'12.5.31, 발효 2년차: '12.7.1~'13.5.31, 발효 3년차: '13.7.1~'14.5.31, 발효 4년차: '14.7.1~'15.5.31, 발효 5년차: '15.7.1~'16.5.31).

2. 對EU 수산물 수입

발효 5년차 수입액 1억 5천만 달러 중 어류와 패류가 각각 6천만 달러로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패류는 발효 전 대비 약 1.3배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으며 어류도 30% 정도 수입이 늘었다. 한-EU FTA에 의해 우리나라는 세 품목 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을 배정하였다.^② 이에 따라 주요 수입 품목인 참다랑어, 볼락, 골뱅이 등은 관세 인하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품목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다랑어는 발효 5년차에 4,100만 달러가 수입되어 어류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발효 전 대비 42%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1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되었고 국제 시세 하락으로 국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③ EU산 참다랑어는 냉동 피레트(fillet) 형태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다랑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볼락은 발효 5년차에 750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EU산 볼락 관세는 10%의 관세율이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5년차인 현재 6.9%이다. 관세 인하와 함께 국내 생산 감소, 식자재용 국내 수요 증가로 EU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산은 포르투갈산이 대부분이며 전체 볼락 수입량의 46%를 차지한다.

②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징어(냉동)이고, 고등어(냉동)는 9년 유예 후 4년 동안 관세가 철폐된다. TRQ 품목은 기타넙치(냉동)로 1,008톤(5년차 기준)에 한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③ 참다랑어는 지중해 및 남태평양의 자원 회복으로 어획 쿼터가 늘어나 공급이 확대된 반면 최대 소비시장인 일본의 엔화 가치 약 세로 일본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제 시세가 하락하였다.

이빨고기는 발효 5년차에 발효 전과 비슷한 수준인 280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EU산에 대해 1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되었으나, EU(프랑스)의 어획 쿼터 감소로 수입량은 감소하고 단가는 높아져 전체적인 수입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빨고기 수입량 중 EU산의 비중이 발효 전 42%에서 발효 5년차에 26%로 축소되었다.

〈 한-EU 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효 5년차 / 발효 전	발효 5년차 / 4년차
수산물	87,708	89,891	92,964	109,540	133,825	146,787	67.4	9.7
어류	48,382	47,115	44,869	46,227	58,130	62,442	29.1	7.4
- 참다랑어	28,622	30,432	25,468	27,474	35,785	40,695	42.2	13.7
- 볼락	3,693	3,191	4,533	4,975	4,410	7,523	103.7	70.6
- 이빨고기	2,740	2,849	1,752	1,790	2,447	2,774	1.3	13.4
패류	26,311	29,499	34,183	45,419	54,797	59,802	127.3	9.1
- 골뱅이	25,737	29,021	34,103	45,417	53,853	59,361	130.6	10.2
수산부산물	6,921	8,299	8,684	10,484	11,444	11,774	70.1	2.9
연체동물	4,286	3,038	3,125	4,047	4,621	6,176	44.1	33.6

주: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골뱅이의 발효 5년차 수입은 6천만 달러로 EU산 패류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품목으로도 가장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발효 전 대비 1.3배 증가하여 수입 증가폭도 가장 큰 품목이다. EU산 골뱅이 관세는 20%의 관세율이 6년에 걸쳐 철폐되어 5년차인 현재 3.3%이다.

골뱅이는 어류에 비해 관세 하락폭이 크고 수출경쟁국인 캐나다산의 공급 부족, 국내 가공품(통조림) 수요 증가로 발효 이후부터 큰 폭의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산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이들 원산지가 우리나라 골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對EU 수산물 수출

한-EU FTA 발효 5년차 수산물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이며 이 중 어류가 1억 달러, 해조류가 1,2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점하였다. 어류는 발효 전 대비 14.9%, 해조류는 1.8배 정도 수출이 증가한 반면, 패류와 갑각류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EU FTA에 의해 EU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최장 6년에 걸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어류, 황다랑어, 새치, 김 등이다.

가장 수출이 많은 기타어류는 대부분 기타다랑어 피레트로 발효 5년차에 7천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이는 발효 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18%의 관세가 철폐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황다랑어와 새치는 5~15%의 관세가 발효 5년차에 0~3%로 감축되었고 수출 실적도 두 품목이 1,300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황다랑어는 국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발효 전 대비 70% 감소한 반면, 새치는 다랑어 대체품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효 전 대비 93% 증가하여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김의 경우 조미김을 중심으로 발효 5년차에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는 발효 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FTA에 의한 9~18%의 관세 철폐, 다양한 메뉴 개발, 적극적인 판촉 활동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 한-EU 수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효5년차 / 발효전	발효5년차 / 4년차
수산물	116,597	92,061	95,469	105,826	110,800	127,121	9.0	14.7
어류	88,596	70,175	72,059	73,688	89,485	101,771	14.9	13.7
- 기타어류	26,957	30,459	37,234	41,593	49,470	69,816	159.0	41.1
- 황다랑어	43,053	24,602	20,440	7,899	22,883	13,025	▲69.7	▲43.1
- 새치	6,614	5,669	5,028	10,898	10,846	12,789	93.4	17.9
해조류	4,167	4,051	6,691	9,698	11,081	11,695	180.6	5.5
- 김	2,991	2,731	5,573	8,010	9,447	10,260	243.0	8.6
패류	9,844	8,520	4,979	7,435	4,543	5,154	▲47.6	13.5
갑각류	5,647	4,114	4,089	4,390	2,245	4,829	▲14.5	115.1

주: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수입 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한-EU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수산물 수출은 유럽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입은 참다랑어, 볼락, 골뱅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 증가가 국내 생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다랑어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국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이는 세계적인 공급 증가, 국내산의 상품성 하락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산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과 경합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④ 볼락과 골뱅이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발효 5년차까지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EU산에 대한 관세가 계속 인하되어 수입 증가 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피해보전 대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의 경우 EU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한-EU FTA를 활용하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청된다.



④ FTA로 인한 수입 증가의 영향이 일부 인정되어 2015년에 참다랑어에 대해 FTA 직접피해보전제도가 시행되었다.



한-EU FTA 발효 5년^①, 농산물 수입 동향 및 시사점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① 한-EU FTA 5년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이지만, 이 글에서는 관련 통계 가득성의 문제로 회계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함.

1. 개요

EU는 우리나라 4대 농산물 수입대상국(경제권)으로 미국, 중국, ASEAN 다음이며, 6대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EU FTA 발효 5년차이고, 7월 1일부터 발효 6년차에 접어든다. 따라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교역부문의 변화 추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보인다.

발효 5년차 농산물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4년차(2014년 1월~12월) 대비 4.5% 증가했고, 1년차(2011년 1월~12월) 대비 23.5% 증가했다. 농산물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1년차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전체 농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5.0%와 6.3% 감소한 가운데, 對EU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對EU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	21.6(9.1)	29.6(9.7)	28.8(9.7)	32.3(10.6)	34.9(10.9)	36.5(12.0)
수출	2.4(5.1)	2.8(4.8)	3.1(5.4)	3.0(5.1)	3.1(4.9)	3.4(5.4)

주1) 농산물에는 축산물, 임산물이 모두 포함됨.

2)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2. 특혜관세 활용률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그 비중은 12.0%로 이행 1년차 대비 2.3%p 상승했다. 반면, 對EU 농산물 수출 비중은 다소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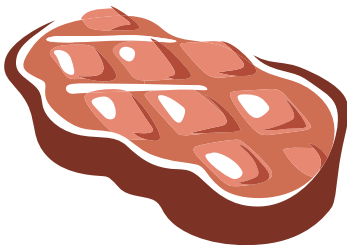
2015년 EU산 농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EU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중 'FTA 대상 품목(양허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2.5억 달러이고, 그중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26.7억 달러이다. 이는 2012년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63.6%)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도 활용률보다는 0.7%p 낮다. 2015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대비 11.0%p 상승하였다.



3. 주요 품목 수입 동향

EU산 농산물 수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호식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즉, 주요 수입품목에 곡물, 축산물, 유제품 외에도 맥주, 위스키, 포도주 등의 주류,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식용유,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EU산 농산물 수입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전환 효과로 곡물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곡물 주요 수출국과 비교할 때 EU산 옥수수, 보리 등의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결과 2015년 EU산 밀(65만 5천 톤), 옥수수(51만 9천 톤), 보리(4만 5천 톤)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1.1배, 2.6배, 38.7%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EU FTA 이행 1년차(2011년)에 비해서도 각각 11.7배, 1.8배, 2.9배 증가하였다. 곡물의 경우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으로 수입선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증가가 FTA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돼지고기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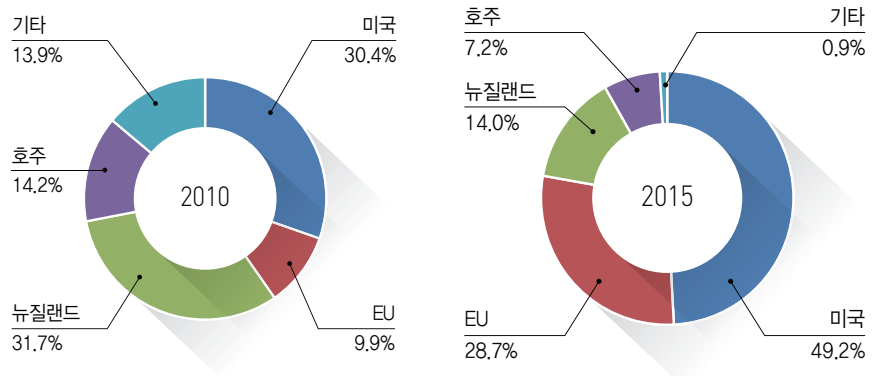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이다. 2015년 국내 돼지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국산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5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이는 EU산을 포함한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들이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U산 닭고기 수입량은 약 9천 톤으로 절대량은 많지 않지만, 2014년 대비 20.5% 증가했다. 닭고기 전체 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EU산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12월 미국에서 시가 발생함으로써 수입선이 브라질과 EU 등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유제품은 대표적인 EU산 수입품목이다. 그중 치즈와 조제분유 수입은 빠른 증가추세로 보였다. 2015년 EU산 치즈 수입량은 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국내 수요 증가 요인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선 전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최근 국내에서 치즈의 직접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치즈를 원료로 한 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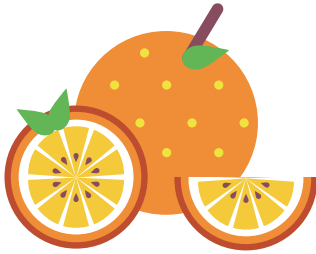
또한,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는 우리나라와 FTA를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국내 유제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실제로 2010년 국내 치즈 수입시장에서 EU산의 비중은 9.9%에 불과했으나, 2015년 그 비중이 28.7%로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호주는 14.2%에서 7.2%로 하락했고, 뉴질랜드산도 31.7%에서 14.0%로 하락했다.

〈 치즈 주요 수출국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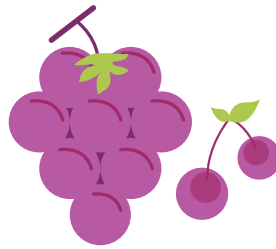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FTA 이행으로 EU산 주류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됨으로써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맥주와 포도주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EU산 맥주 수입량은 8만 3천 k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EU산 포도주 수입량은 1만 9천 k로 2014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이행 1년차 대비 34.9% 증가했다. 위스키의 경우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이행 초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오렌지



포도

EU산 과실류 중에서는 오렌지, 단일과일조제품, 기타과실, 포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각 품목의 수입량은 각각 5,065톤, 3,198톤, 3,035톤, 2,930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2%, 56.5%, 8.8%, 58.3% 증가했으며, 그 절대 수입량은 크지 않지만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 수입량은 FTA 이행 1년차 대비 약 9.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오렌지 수입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EU에서 수입되는 포도는 대부분 건포도이다.



초코렛



비스킷

EU산 기호식품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EU산 초코렛,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수입량은 각각 1만 2천 톤, 1만 1천 톤, 6,682톤, 3,372톤으로 FTA 이행 1년차 대비 각각 57.8%, 4.5배, 78.2%, 36.0% 증가했다.

그 외 국내 수입생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EU산 물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EU산 물 수입량은 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 EU산 주요 기호식품 수입 동향 〉

(단위 :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초코렛	5,459	7,416	8,467	11,053	11,583	11,702
캔디	1,357	2,007	2,973	3,999	7,418	11,067
비스킷	3,502	3,749	4,387	5,294	6,952	6,682
아이스크림	1,564	2,479	2,782	2,906	3,379	3,372
물	12,216	13,927	23,692	26,013	30,698	31,80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4. 시사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14건이 발효 중에 있다. 이처럼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다양한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EU는 비교적 조기에 FTA를 체결한 상대국으로 국내 유제품, 주류 등의 수입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EU와 수출경합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동식물 병해충의 잦은 발생으로 곡물, 축산물 등의 수입선 전환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농산물 수급여건 변화도 농산물 수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공급로케도 한-EU FTA가 발효되었던 2011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축산물과 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국내 관련 산업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수입구조가 고착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축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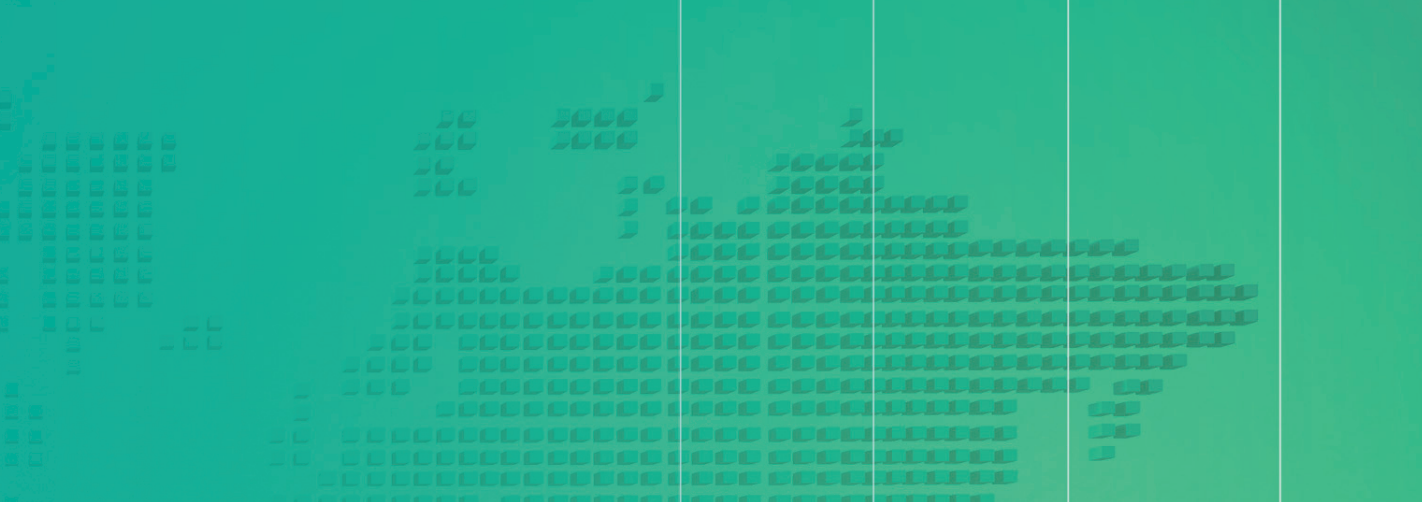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해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써야 한다. EU산 농산물 수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제품 개발이나 품종 개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FTA와 품목분류

블랭크의 품목분류가 왜 중요한가?

오수교 관세사·KPMG세정관세법인 고문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블랭크의 품목분류가 왜 중요한가?

오수교 관세사 · KPMG세정관세법인 고문

블랭크(반가공품)의 품목분류는 FTA 원산지물품의 인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호(CTH)나 6단위 소호(CTSH)의 변경기준으로만 된 경우에는 타국에서 블랭크(반가공품)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추가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더라도 품목번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물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블랭크는 완성품과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블랭크와 관련된 품목분류규정과 각종 사례의 설명을 통하여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분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블랭크(반가공품) 정의와 분류

“블랭크(blank, 반가공품^①)”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부분품^②은 아니나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HS 해설서 통칙 제2호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합한 블랭크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별도의 규정이 없는)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과 함께 분류한다.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HS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③되어 있지 않은 블랭크에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서 다음을 소개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tube)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preform)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는 제품이다. 그 예로서 다음을 소개하고 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하는 물품이다.(그림4의 가운데 페트병 블랭크 참조)

① 블랭크는 중간정도로 성형하였거나 또는 예비적으로 성형한 것이라 하여 “preform(중간성형품 또는 예비성형품)”이라고도 한다.

② 블랭크로 만든 물품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일 수도 있고, 특정 물품의 일부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블랭크는 부분품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된다.

③ 제8212호(면도날에는 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와 제9606호(단추 블랭크)가 그런 호에 해당된다.

즉, 다음 그림1부터 그림4까지에서 가운데의 중간성형품이 블랭크에 해당된다. 이 블랭크는 좌측의 반제품(semi-manufacture)이나 원재료를 이용하여 블랭크로 만든 후에 추가 가공을 통하여 우측의 최종 제품(예: 그림4의 페트병)이나 부분품 (예: 그림1의 볼트와 그림2의 골프 용 헤드)을 만들게 된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블랭크는 최종 제품이나 부분품과 같은 호(소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본질적인 형상을 갖추지 않은 봉·디스크·관 등과 같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블랭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반제품은 일반적으로 구성 재료의 종류나 성분에 따라 분류하므로 제품이나 부분품과는 다른 호에 속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반제품에는 봉(bar and rod)·제재목(각목)·판(sheet)이나 스트립(strip)이 해당되며, 알갱이상태^④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원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블랭크라도 문맥상 달리 해석되면 그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철강으로 만든 형강(形鋼)의 블랭크는 형강(제7216호·제7222호·제7228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제7207호·제7218호·제7224호)으로 분류토록 제72류 주 제1호자목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천연코르크로 만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제4502호)는 완성된 마개용의 코르크 제품(제4503호)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제4502호의 용어에 그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④ 제39류의 주 제7호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을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하고, 반제품 (semi-manufacture)이나 제품(article)과는 품목번호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이 기준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다른 물품에도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

⑤ 볼트블랭크는 봉을 단조(프레스)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용융된 쇳물을 주형에 부어 만들거나 쇳가루를 주형에 넣어 고압과 고온에서 소결하는 방법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 때마다 원재료(예: 임곳이나 쇳가루)는 달라진다.

〈[그림1] 볼트(나선 가공된 것)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철강으로 만든 봉 (제7214호)	볼트블랭크 [®] (제7318.15호)	완성된 볼트 (제7318.15호)
		

〈[그림2] 골프채헤드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제재목 (제4407호)	골프채헤드블랭크 (제9506.39호)	완성된 골프채헤드 (제9506.39호)
		

〈[그림3] 면도날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스테인리스강 스트립(strip) (제7220호)	스트립모양의 면도날 블랭크 (제8212호)	완성된 면도날 (제8212호)
		

〈[그림4] 페트병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PET) (제3907호)	페트병블랭크 (제3923.30호)	완성된 페트병 (제3923.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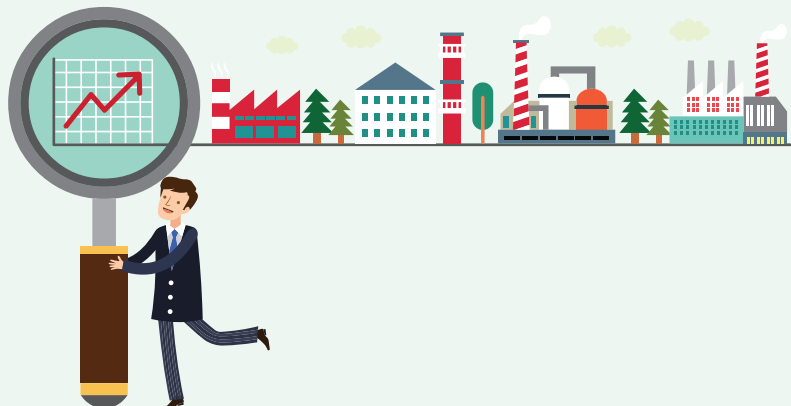
참고적으로 이 글과 관련된 물품의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나타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련 물품의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물품명 (HS 코드)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PSR)	블랭크 적용여부
페트병 (3923.30)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볼트 (7318.15)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크랭크샤프트 (8483.10)	한-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중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골프채부분품 (헤드 포함) (9506.39)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표1에서 “블랭크 적용 여부”란 세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같은 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크랭크샤프트는 블랭크(제8483.10호)를 수입하여 완성품(제8483.10호)을 만들면 한-미 FTA나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물품이 될 수 없으나, 한-EU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 부합되면 원산지물품이 된다. 볼트는 세 개 FTA협정 모두 세번변경기준(CTH)만이 적용된다.



2. 블랭크(반가공품) 분류사례

블랭크에 해당되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 WCO 품목분류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

① 물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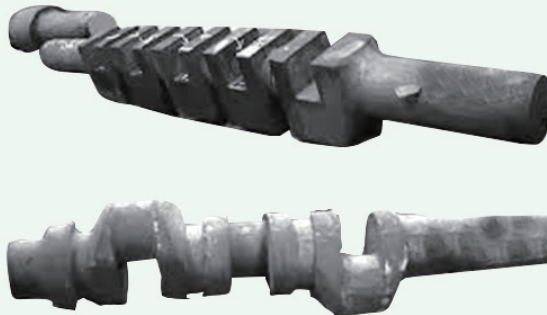
반가공품(blank) 상태의 철강으로 만든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이다. 단조공정외의 추가적인 가공이나 성형은 되어있지 않다.

② 사례해설

WCO 제27차 HS 위원회에서 반가공품(blank) 상태의 철강으로 만든 크랭크샤프트를 통칙 제2호가목과 제15부 주 제1호바목을 적용하여 제8483.10호로 분류한다.

참고적으로 HS 해설서 제73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블랭크로 볼 수 없다면 철강의 단조물에 해당되어 제7326호로 분류한다.

< [그림5] 크랭크샤프트블랭크® >



⑥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다른 것이다.

⑦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례2) 외과용 바늘 블랭크

① 물품설명

길이 44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관(tube)으로 되어 있으며, 내측 직경 1.3밀리미터와 외측 직경 0.9밀리미터인 원형 횡단면을 갖고 있다. 한 끝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또 다른 한 쪽 끝은 예각으로 절단되어 있다. 후자의 끝 부분은 날카로운 뾰족한 촉이 형성되게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평면상에 세워져 있다.

〈그림6〉 외과용 바늘 블랭크^⑦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외과용 바늘의 블랭크이므로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제9018.32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3. 블랭크(반가공품) 적용대상 물품

블랭크는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부터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부터 제21부(예술품·수집품·골동품[®])까지로 적용되는데, 그럼에도 이 범위에 속한 물품 모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블랭크는 원재료를 주형틀에 부어 만들거나(주조), 재료를 불에 달궈 두들기거나(단조) 또는 성형(조각을 포함한다)이나 틀에 맞춰 찍어내는 방법(stamping)으로 만든다.

^⑦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⑧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예술가가 직접 만든 블랭크 상태의 조각품이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공에 적합한 플라스틱(제39류)·고무(제40류)·목재(제44류)·돌(제25류)·유리(제70류)·귀금속(제71류)과 비금속(卑金屬)(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3류까지)·동물의 뿔이나 뼈(제5류)·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재료(제14류나 제25류) 등이 주로 이용된다.

4. 블랭크(반가공품) 분류의 쟁점사항

블랭크를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큰 쟁점사항은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HS 해설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유익한 내용의 몇 가지의 사례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

〈표2〉 블랭크의 적용 범위와 기준(HS 해설서)

대상물품	범위와 기준
제7207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p>제7207호의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은 외부 모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많은 반제품으로 블록이나 잉곳을 파워 해머를 사용하거나 단조용 프레스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을 만들 때 필요 이상의 웨이스트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상을 만든다.</p> <p>그러나 단조·프레스·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하여야만 최종 제품의 형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을 분류한다.</p> <p>예를 들면 잉곳이 평평한 지그재그 형상으로 거칠게(roughly) 단조되고 선박용 크랭크샤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가공되어야만 하는 것은 제7207호로 분류하지만, 최종 가공(final machining)에 알맞도록 단조된 크랭크샤프트는 제외된다. 주형 사이를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품과 프레스 물품은 최종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¹⁰⁾</p>

<p>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p>	<p>제7325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조물(예: 기계류나 기계식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p>	<p>제7326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단조물(예: 기계류나 기계식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제8301호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이하 생략, 이들 물품에 사용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p>	<p>(B)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의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완성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거칠게 주조된 블랭크·단조된 블랭크나 타발(stamped)된 블랭크를 포함한다)</p>
<p>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부분품, 이하생략)</p>	<p>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로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 만든 조단조품(rough forging)^⑩은 제7207호로 분류한다.</p>
<p>제94류 (가구 등)</p>	<p>부분품 제94류에는 오직 제9401호부터 제9403호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에는 거칠게 만든 것(rough)인지에 상관없으나 형상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p>

⑨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블랭크가 어떤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특성을 따져 분류할 때에는 각 물품의 생산방법이나 공정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각 물품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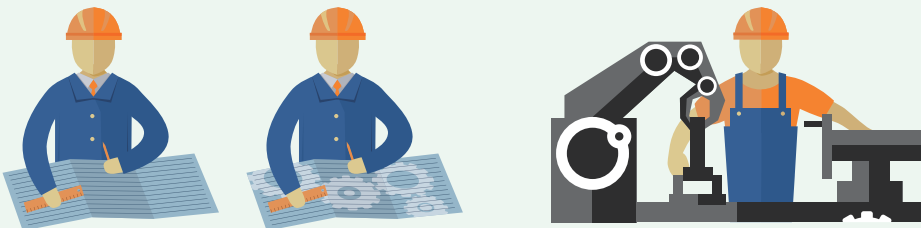
⑩ 이 경우는 주로 제8483호로 분류한다(HS 해설서 제8483호 제외규정 (a)항 참조)

⑪ 블랭크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랭크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제94류도 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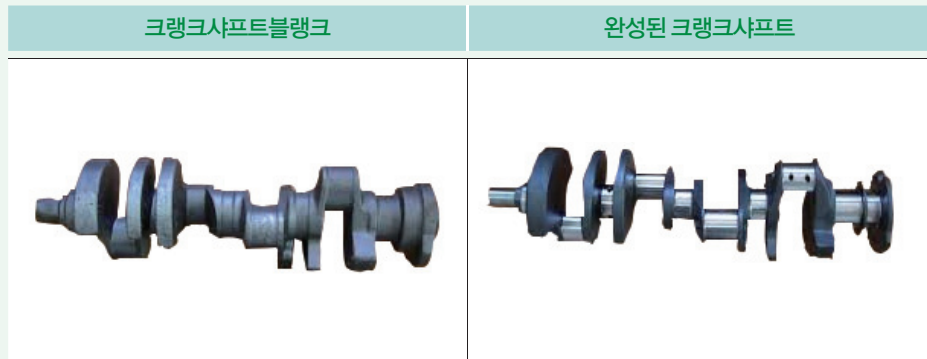
<p>제9606호 (단추와 단추블랭크)</p>	<p>(3) 단추블랭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p> <p>㉔ 성형으로 만든 것으로서 아직 단추로 사용할 수 없는 단추블랭크: 이 물품은 보통 깎아 다듬고 구멍을 뚫고 연마하는 공정이 필요하며 단추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p> <p>㉕ 톱(top)과 베이스(base)의 두 개의 부분품으로 구성되며, 양쪽이 꼭 들어 맞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스탬프핀(stamped) 금속블랭크</p> <p>㉖ 자개(패각)·목재 등으로 된 블랭크로서 단추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예: 한 면이나 양면을 원형 중공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테를 만들고 연마하거나 구멍을 뚫은 것). 반면에 단지 톱으로 절단하고 연마한 디스크의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을 하지 않은 원반상의 것은 단추 블랭크로 취급하지 않고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p>
-------------------------------	--

앞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다음 그림7은 제7207호나 제7325호(또는 제7326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제8483호로 분류되는 크랭크샤프트의 블랭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블랭크의 분류 사례1.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 참조).

그 이유는 완성된 크랭크샤프트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가공(주 공정은 선반이다) 외에 단조나 프레스와 같은 가공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림7] 크랭크샤프트블랭크와 완성된 크랭크샤프트 〉



다음 그림8의 좌측 물품도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블랭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분류사례가 없어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㉔, 표면에 골프채헤드의 모양을 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골프채헤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만은 명백하다. 만약 블랭크에 해당되면 제9506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4421호(그 밖의 목제품)로 분류한다.

〈 [그림8] 골프채헤드블랭크와 완성된 골프채 헤드 〉



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 비록 완성된 골프채헤드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은 있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절단면 모두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점과 정확한 치수에 맞춰 어느 정도까지는 기하학적으로 가공하여야만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의견이다. 그럼에도 한-EU 제9506.3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거칠게 성형한 블록성(그림8의 좌측 물품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기가 어렵다)'의 것도 블랭크에 해당되어 같은 소호로 분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5. 결론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미완성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많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의 추상성과 함께 같은 물품이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 때에 특정 국가의 상관습이나 결정 주체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블랭크는 통칙 제2호가목과 HS 해설서의 규정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지만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완성된 물품과 같은 호로 분류한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S 해설서의 각론이나 세계관세기구(WCO)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블랭크를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필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블랭크는 반제품(semi-manufacture)과 제품(부분품을 포함한다)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미완성된 물품으로 볼 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품목분류의 원리와 좀 더 부합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는 통칙 제3호다목^③을 근거로 한다. 당연히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반제품보다는 제품이 뒤의 번호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제품은 일정한 모양에 따라 분류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특정 모양으로 가공하면 반제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다. 반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면 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마지막 호가 대안이 된다. 이러한 호로는 제3926호(플라스틱)·제4016호와 제4017호(고무)·제4421호(목재)·제6815호(돌)·제7020호(유리)·제7325호와 제7326호(철강) 등이다.

^③ 물론 통칙 제3호다목은 통칙 제3호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과 나뉘(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한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호에는 최종 제품(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 것이지 중간성형품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므로 블랭크로 분류할 수 없으면 몰라도 이들 호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제84류부터 제96류까지에 속한 부분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구성 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분류하는데, 만약 블랭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블랭크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되면 상호 교류증진이라는 FTA협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의견이 부딪치게 된다. 이때에는 법의 제정목적이나 법적 용어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런 관점에서 FTA협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주석9와 같이 블랭크를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FTA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고 개인의 견해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만 적용되는 물품으로 블랭크 판정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마다 분류견해가 다를 수 있고, 추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사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현명한 담당자가 취할 조치이다.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필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FTA 활용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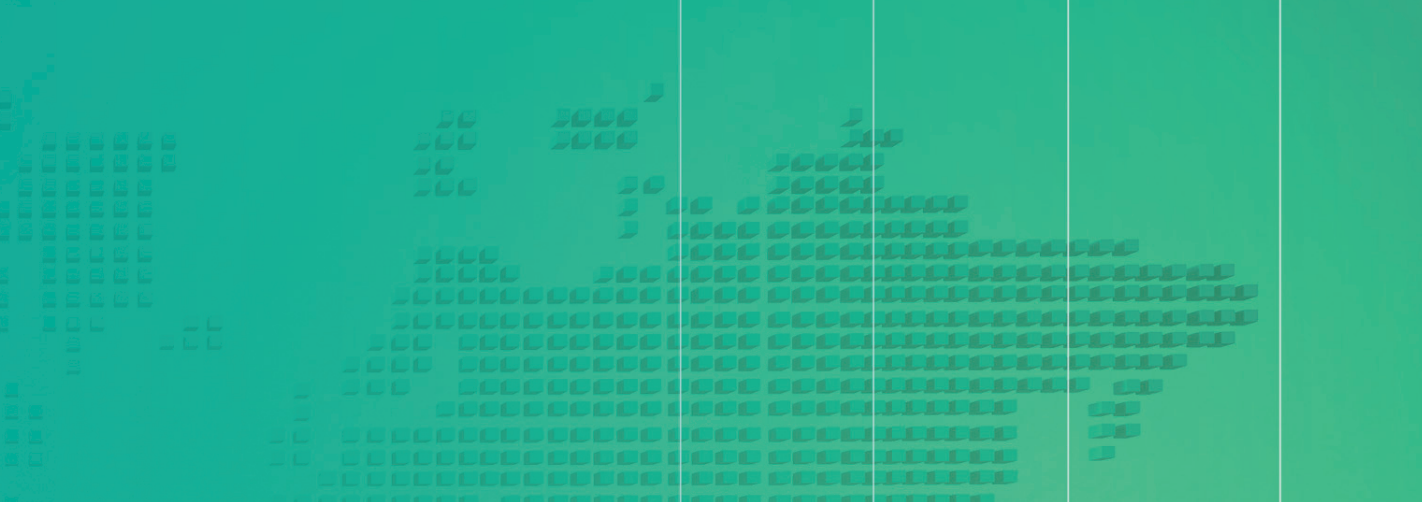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기술력과 FTA 인하효과 활용 모델

동반성장 모델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01

[FTA 활용 성공사례]

기술력과 FTA 인하효과 활용 모델

개요

- 제품 개발능력 등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FTA시장별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공략할 경우 FTA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
- *[예시] 주류의 경우 각 국가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알콜 도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공략형 제품 개발이 선행될 경우 수출가능성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대륙권별, 국가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FTA 혜택을 활용하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시너지 효과 발생

〈 기술력과 FTA로 시너지효과 창출형 모델 〉



활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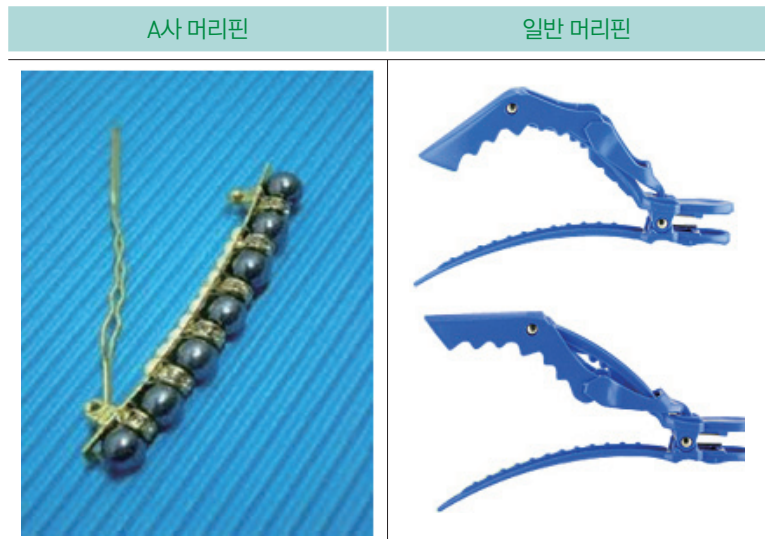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FTA를 적극 활용할 때 수익창출을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는 곧 국가경제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선순환적 FTA 활용 체계 구축에 기여

짜통과의 전쟁, 승리의 FTA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대표자의 적극적인 실험정신과 25년 미용학원 운영 노하우를 결집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미용전문 회사
- 주력 수출품목은 여성용 헤어 뷰티 제품인 헤어핀으로 동 헤어핀의 특징은 일반 헤어핀의 작용면은 평행하게 작동하는 반면, 동 업체의 헤어핀은 머리 카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용면이 곡선인 형태
 - 사업주가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국내외에 「특허등록」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타제품과 경쟁



② FTA 활용 전상황

- 중국산 짜통의 맹렬한 도전
 - 중국산 헤어핀은 저가 판매 공세로 한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국내 헤어 잡지나 해외 전시회 등에 실린 제품들은 중국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카피하여 판매함으로써 위협이 되는 상황

짜통과의 전쟁, 승리의 FTA

- 한국산의 우수성
 - “한국산”의 품질 우수성은 해외시장에 이미 알려져 30% 정도 비싸더라도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하는 상황으로 헤어핀 제품도 품질적인 면과 함께 최첨단 소재를 원료로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필요성 절감

③ 장애요소

- 원산지관리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데.....
 - 사업주 1명, 경리직원 1명, 생산반장 1명이 회사 구성원 전부로 새롭고 복잡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검증 대비 관련 자료의 생산·보관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
-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바이어의 요구대로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의문

④ 극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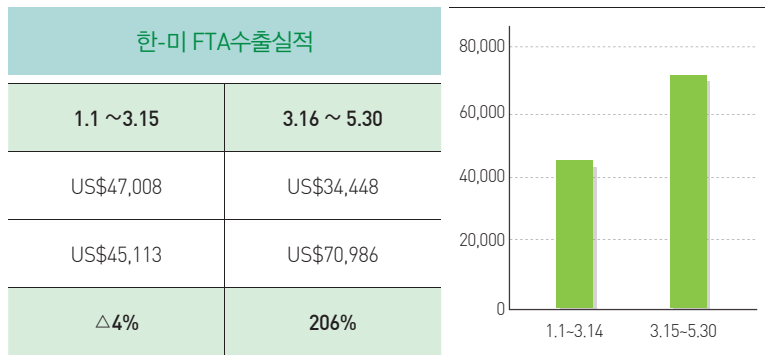
- 세관의 타겟팅 컨설팅
 - 세관직원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충족여부	플라스틱수지로 몸체를 사출하고 스프링과 조립하여 생산하므로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가 변경되므로 충족
주요원재료	ABS(플라스틱 수지), 스프링
주요공정	사출 → 조립 → 검사 → 포장

짜통과의 전쟁, 승리의 FTA

⑤ 활용 효과

- 기술력과 FTA로 시너지효과 창출
 - 기업의 기술개발 상품 **선제적 미국시장 “특허등록”**
 - 기업주의 미용학원 경험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한·미 FTA 협상 단계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추가 등록 추진 중
 - 한·미 FTA 발효는 해당 제품의 짜통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난관을 넘어 미국시장의 “절대 강자” 입지 구축 절호의 기회 • “30원” 가격경쟁력! 한국산이 시장점령
 - 단가가 260원(0.3\$)인 헤어핀에 있어 FTA 효과로 생긴 “30원”의 가격 경쟁력은 해당 제품의 거래 특성상 미국시장에서 큰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어 對미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



⑥ 시사점

- 수출 판매 단가의 재협상으로 “수익 재창출” 기대
 - 수출자의 C/O 발급에 따른 바이어의 관세절감 혜택은 조정의 여지가 없던 수출 판매가격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의 창구가 되어 수출 증대 기대 외에 추가적 수익 창출 효과 발생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K사는 탁주(전통 막걸리) 주력회사인 [주]조00'에서 세계화된 신세대의 입맛을 겨냥하여 '13년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탄산와인 전문 제조업체
- 탄산와인은 포도원액으로 제조한 와인의 고유한 맛과 향이, 탄산과 어우러져 자아내는 특유의 스파클링(탄산) 와인으로 젊은 층과 여성들을 위한 저알콜 리큐르(과실주)로서,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음용 가능

제품명·규격·품목분류	제품사진	제품 우수성
쓰아(레몬·포도·자몽·망고 맛) [SSOA Lemon] 355m(캔) HS 2208.70 (또는, HS 2208.90)		- 우수한 국내산 포천 포도를 와인으로 제조 - 동시에 탄산의 특 쓰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저알콜로 목 넘김이 좋음

2 FTA 활용전 상황

- **<외부환경>** 막걸리는 이제 수출 내리막길,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 한동안 수출효자 노릇을 했던 '전통막걸리'의 수출둔화세로 반전
 - ⇒ 업계내 수출도약을 위해 새로운 맛과 향을 덧입은 세계의 술을 거듭 나아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 전통막걸리(HS 2206.00-2030) 수출 추이 >

품명 : 탁주(HS 2206.00-2030)	
연도	수출금액(천불)
2011년	53,960
2012년	37,372
2013년	20,035
2014년 7월말	9,238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 (내부환경) (주)조00'의 전통 막걸리 또한 국·내외 매출 하향화 스타트

〈(주)조00'의 전통주 국내외 매출 추이〉

품명 : 탁주(HS 2206.00-2030)	
연도	매출금액(억원)
2007년	13.8
2008년	15.2
2009년	18.8
2010년	22.6
2011년	27.4
2012년	26.6
2013년	21.4

- 업체는 매출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한때 일본인 대상 '막걸리 제조시설' 투어 상품
 화까지 도입하였으나, 제조업체는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는 각성에 업체 경쟁을
 위한 '세계인과 시대가 원하는 제품 개발' 에 돌입

⇒ 포천시와 대전대학교의 공동연구 개발(24개월)로 신세대 입맛에 맞는 저알콜
 리큐르 '쏘오-아(SSOA)' 개발에 성공, 신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A(주) 회사
 설립

* 쏘오-아(SSOA) : '한턱 쏘아~'에서 착안한 상품명으로 신세대 여성의 애교스러
 움을 표현한 'AN*'과 더불어 상담 때마다 바이어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
 으며, 본 상표에 대한 '독점공급계약 및 브랜드 사용계약' 완료

③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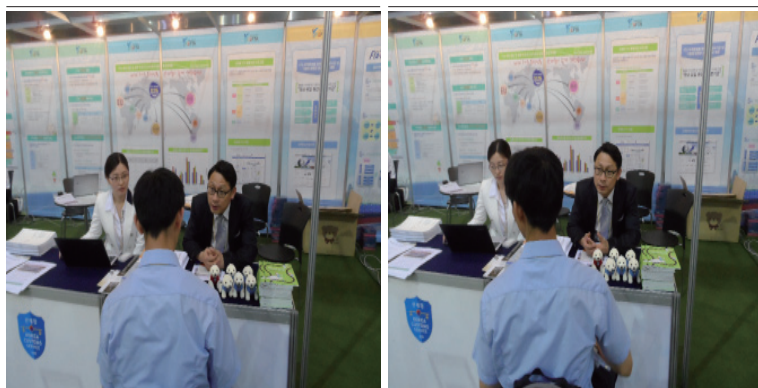
- [FTA지식 전무] 對일본 소액수출 이외 수출실적이 없어 FTA 동향 및 활용에
 필요한 FTA기초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바이어가 제시하는 가격협상에 실
 패 ⇒ 수출판로 개척에 발목 잡히다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 [품목분류 난해] 주류는 제조방법 및 배합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상이함에도 주류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통보했던 '발포성 포도주(2204호)'로 분류 ⇒ 바이어 상담 및 원산지증명서 초안 기재 오류 발생으로 바이어 혼란 초래
- 국산 원재료 사용 필요 및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개념 부재
 - 對미 FTA 활용수출을 위해 일부 원재료가 필히 '한국산'이어야 하나, 업체는 원재료 공급자의 포장박스에 표기된 'MADE IN KOREA'로 한국산 원재료 판단·관리하여 미국 바이어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장시설 점검 결정
- [FTA 컨설팅 활용]:현장을 찾아가는 YES FTA 센터⇒적극적 애로 발굴
 - 서울세관 'aT 센터 Buy Korean Food' FTA 활용 컨설팅 시 동 행사에 참여한 업체에 FTA활용애로 컨설팅을 받고, 현장에 참여한 미국·아세안 바이어 상담 시 업체의 FTA 활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유리한 가격에 협상 가능 의사를 전달

④ 극복 방법

< aT 센터 'Buy Korean Food' FTA 활용 컨설팅 사진 >



- [FTA 활용교육 참여]:서울세관 FTA 상설교육으로 FTA기초 입문!
 - 원거리(경기 포천)임에도 불구하고, FTA활용에 대한 의지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바이어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 매주 서울세관 상설교육에 참석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 [FTA 행정지원 활용]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 · 품목분류 지원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신청함과 동시에 분석실과의'맞춤형 FTA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을 통한 신청업체 세번분류 지원

FTA1과-분석실 간 「맞춤형 TA비즈니스지원단」	분석의견 회보
<p>주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출한 당국-우봉이 필요하고, 적절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은 수출입 300만달러가 초과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 세제 및 원산지확인서 능력에 모든 주목할 사항 □ 모든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한 맞춤형 FTA 활용지원 필요 <p>주요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와 분석실 협의에 구축을 통한 품목분류와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세관에서 원산지확인서 발급하여 중소기업 FTA 적용 가능 ○ (기간) '14.1.13. - '14.10.30 ○ (대상업체) 중소기업(초기업)이 우선 대상일 것 ○ (대상품목) 원산지확인서 및 세관장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협력부서) FTA 1과 2과와 원산지확인서 심사팀, 수출세관 분석실 <p>주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기업) 수출액(1억) 이상이며 수출-수입 50% □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등록, 심사 및 서류관리 □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등록, 심사 및 서류관리 * 원산지확인서 발급-등록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제출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액(1억) 이상 조차회 및 각 구상된 기업지원단(14년 1회) <p>보 고 자 : *1급 관리사(2014년) *2급 관리사(201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및 대한민국 주류 분류를 검토한 결과, HS 2208.70호에 분류함이 적정 - 다만, 주류는 각 국가별로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므로, 해당 수입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 - 동 제품은 'HS 2208.70' 이외 'HS 2208.90' 호에도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세관 YES FTA 센터, 수출자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제 안내

- [FTA 전문인재 채용]: '14 고졸취업박람회'에 참가신청서 제출
 - 업체내 FTA · 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전문인재 발굴 필요성으로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행사에 참석하여 인재 채용
-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對EU FTA수출 대비한'인증수출자' 획득 진행 중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인증수출자' 자격획득을 위한 서류 준비 착수

5 활용 효과

- [대한민국 수출 제1호점] 서울세관의 FTA 활용지원 및 차질 없는 컨설팅을 통해 미국 최대소핑몰인 QVC와 최소 월 300만켤(355ml) 수출 계약, 연간 1,485만 달러 매출 창출 예상(*355ml 1켤당 FOB 0.4125\$에 계약 완료)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對미 FTA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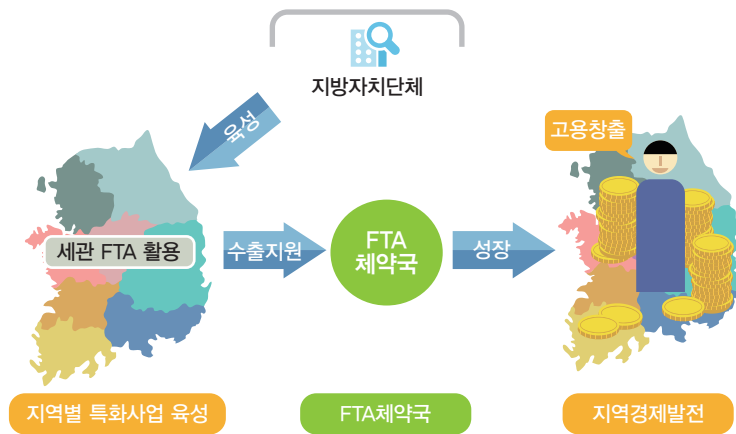
대상	항목	경제적 효과 수치
수출 업체	- QVC 수출로 매출이익 창출 - H마*(FOB 0.45\$)	- QVC수출 148억원 매출이익 - 수출량에 대한 계약 네고 증
수입 업체	- 관세 절감 -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 미국CBP HS 2208.90으로 결정시 연간 25,446천불 절감 - 송장금액의 021%, 25~485달러 ⇒ 연 간 3~4천만원 절감

- [한-아세안 FTA 등 수출의뢰 쇄도] 말레이시아·중국·일본 등지에서 수출 계약 콜 쇄도~!
 - ① 말레이시아 000과 수출계약 협상 중으로 분석실 분석회보 결과 상대측에 전달 및 7월 20 BOX 샘플 수출
 - ② 일본 M**에 성분분석표 전달, 홍콩·중국 대리점 시장조사 돌입 및 샘플 요청 쇄도
- [추가 제품 출시] 저장성 및 이동성을 위한 '병'제품(750ml)을 추가로 출시하고 기존 4가지 맛 이외 '라임' 맛을 추가하여 생산 중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⑥ 시사점

- [수입대체효과] 저알콜 탄산와인 수입종주국 이미지 탈피
⇒ 적정가 한국산 탄산와인으로 다세금 고가제품 수입대체 효과 발생 및 외화유출 차단
- [지역경제 활성화] 막걸리를 대신할 탄산와인 제품 개발에 따른 수출판로 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수출품 주문 쇄도 시 공장시설 확충 및 아웃소싱 제조업체에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FTA 원산지관리 인재 및 생산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효과 발생
- [유리한 가격협상] 그동안 바이어 측의 판매가격 인하 압력을 FTA 활용 시의 혜택(금)*으로 협상 타결 유도
* 미국 QVC 계약 시, 호주 업체와 가격 차이가 매우 근소하였으나 미국 바이어에게 FTA 활용 효과 제시로 계약 성사
- [창조적 이름에 창조적 FTA 활용] 업체 SSOA 제품 브랜드 독점 공급계약 체결 등 브랜드 사용 상표권 등록으로 고급 이미지 향유
- 「지역특화산업+FTA 활용」 모델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개발 가능



- FTA협정 체결 시보다 수출 둔화된 FTA산업에 상품개발 유도 모델

02

[FTA 활용 성공사례]
**동반성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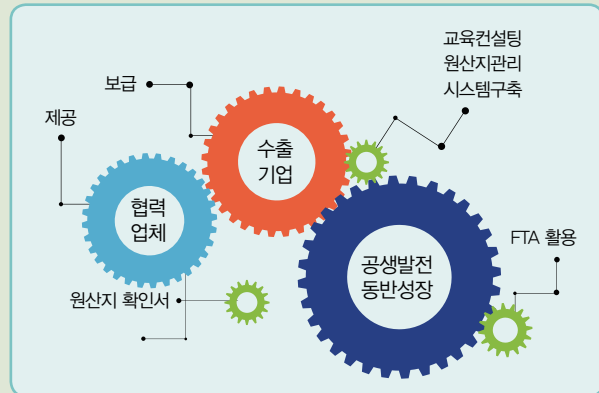


개요

- 수출기업(대기업)의 FTA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수적,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모델
*공급(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수출기업(대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업체(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제공 등 FTA활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FTA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중소기업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성장을 거인



활용효과

- FTA활용효과 거양을 통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공생발전 가능
- FTA활용능력 개선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가능성 증대
- 국내 거래단계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사후검증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위험 예방 가능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L사는 공작기계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 지역으로 2013년 약 3,870대를 판매하여 4,730억원의 매출(미국 약 1,860대 2,050억원, 유럽 약 2,010대 2,680억)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중심기업
- 제품소개 : 공작기계(HS Code : 8457.10, 8458.11 등)

② FTA 활용 전상황

- FTA 발효전 A사는 EU 수출 시 2.7%, 미국 수출 시 4.2%의 관세를 지불하여 가격경쟁력 저하
 - 해당 평균 1억을 상회하는 제품가격으로 공작기계 1대당 EU는 약 270만원, 미국은 약 420만원의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A사에게 있어 FTA혜택은 원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무기

③ 장애요소

- A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관리 부담
 - 원산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400여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다 보니 협력사 입장에서 사후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

④ 극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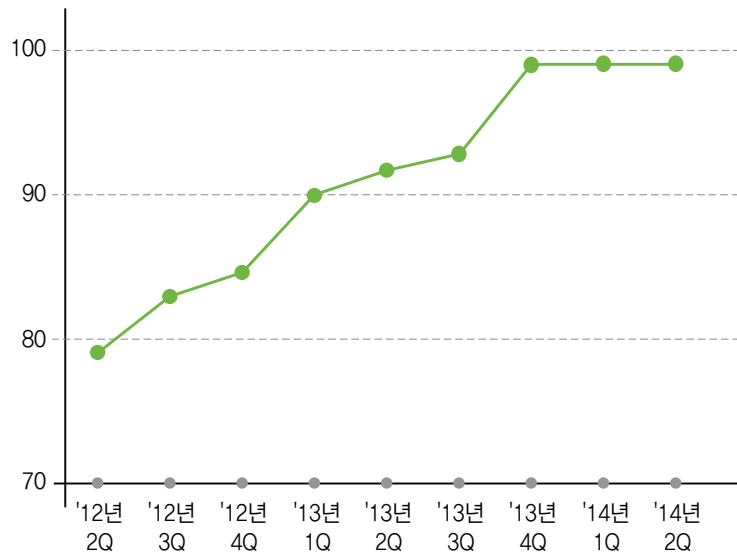
- 실무자의 원산지관리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인력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4명)
- 400여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경영진 및 담당자에 FTA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합교육(년 8~10회 실시, 누적 35회)을 실시하고 240여개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지도 실시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⑤ 활용효과

- 원산지 비율이 낮아 한국산 판정을 받기 어려운 기종의 주요 수입산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주요부품 중 대만산 ATC(자동공구교환장치)는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협력사 D사의 경우 현재까지 17.4억 매출 달성
 - 또한 중국산이던 주물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한 후 현재 6개 협력사에서 23.8억의 매출 발생
- 발효초 80% 이하이던 FTA협정 적용 물품수가 99%수준으로 향상

〈A사 수출제품 한-미 FTA 적용 비율〉



⑥ 시사점

- FTA활용을 위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FTA활용 성공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가 개발에 참여한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03

[FTA 활용 성공사례]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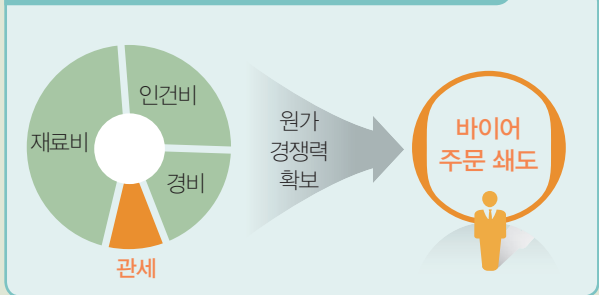
개요

-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 증대 → 생산시설 확충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

〈고용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모델〉



활용효과

-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바로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효과 거양
-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pie)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효과 기대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① 기업소개

- M사는 17년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지폐계수기를 각고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국내시정 석권 (국내시장점유율 1위)
- 동 제품은 원화, 외화의 위폐감별기능 외에 외화계수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제품으로 「국산신기술인정서」 획득

② FTA 활용전 상황

-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시장(약 30%)이 재정위기 여파로 '11년 초부터 급속도로 냉각되어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1달간 공장가동을 정지하는 등 총체적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의 낭보가 들려왔지만 실효관세율 2.2% 철폐는 가격경쟁력에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CEO 등 관리자는 FTA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
-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위주 150여개 영세협력업체의 CEO 또한 종전 거래관행 선호 및 FTA 무관심 등으로 전형적으로 FTA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

③ 장애요소

- '11.7.1.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 바이어들은 K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자 CEO 등은 FT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적이나, 처음 접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준비소홀 및 수많은 부품공급 협력업체의 관리시스템 부재로 FTA 준비는 거의 제로(0) 수준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④ 극복방법

- [정부지원 적극 활용] 우선, 세관과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설명회와 컨설팅 등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여 FTA 실무능력 배양에 주력
 - * 초기에는 FTA 업무에 대한 추가부담과 책임으로 직원들이 기피하였으나, 참석자에게는 별도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교육참여 분위기 확산
- [문제해결팀 구성] 그간 배운 FTA지식을 토대로 사내 FTA해결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새로운 FTA 경영환경 구축
 - *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을 위해 1차 소요부품별 품목분류를 정립하였고, 모호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 [FTA인프라구축]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이 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관세청에서 개발한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
 - * 전산프로그램개발자에게 의뢰한 결과 약 4~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
- [협력업체 교육] 150여개 부품공급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징구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뒤 협력도를 측정하여 그에 걸 맞는 수주량 조정
 - * 원산지확인서 징구에 대한 협력도가 낮은 부품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거절 등 고강도 대응으로 FTA경영체제로 흡수

⑤ 활용효과

- 다각적 노력을 통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럽 바이어에게 당당하게 C/O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무관세 통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매출실적 3배 거양*
 - * 이탈리아 ○○바이어 대상 '10년 2백만불 매출 → '11년 6백만불 매출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 한·EU FTA 학습효과로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져 對미 수출액이 87% 증가(283천불→530천불)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 매출상승 추세
- FTA 활용은 결국 주문량 증가로 이어졌고 동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라인증 설과 아울러 30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조립공정을 일부 위탁하여 장애인 근로 창출(35명)



⑥ 시사점

- 치열한 원가경쟁 하에서는 낮은 수준(2%)의 관세인하 효과도 가격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인 변수인 점을 감안, 관세철폐를 가격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도록 FTA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
- FTA 활용을 통한 수출(매출)액 증대는 생산시설 확충과 고용증대를 견인하여 기업의 외형적 성장 유도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1 기업 및 제품소개

- N사는 끊임없는 자동차엔진 R&D투자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분야인 Starter와 Alternator의 No.1 Maker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주요수출국은 멕시코(65%) → USA(12%) → EU(8%) → 중국(8%) → 브라질(5%) 順

• 제품소개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고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 (Heavy duty Starter & alternator)	20%
저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 (Light duty Starter & alternator)	13%

2 기업 및 제품소개

-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

01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경쟁구도 심화

☞ '09년 대비 업체수 2.4% 증가

02

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

☞ '09년 대비 매출액 10.2%감소

03

국제유가 ·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

☞ 최근 20년간 유가 · 원자재
400%, 300%이상 증가

04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경쟁 심화

☞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
목적 비관세장벽강화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③ 장애요소

무역부 김과장: 설명회란 설명회는 모조리 다녀 이제 FTA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① FTA 이해부족 : 각 기관의 설명회 및 교육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 ② 직원들의 무관심 : “FTA는 무역팀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인식 팽배
- ③ 협력업체 무관심 :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정보부족 등 이유로 FTA 활용포기
- ④ 협정위반의 강도 높은 제재와 업무과부하에 대한 두려움

④ 극복방법

- (1차 진단) 세관 FTA집행센터 컨설팅을 통한 회사 진단/처방 파악

진단결과 문제점

- FTA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 부족
- 고객사 주관의 주입식 원산지확인서 관련 교육의 한계
 -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어려움
-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 문제 및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팽배

Solution제시

-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FTA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전환 유도
- 완성품 제조 · 공급기업 및 협력업체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유도
 - 신뢰성 있는 FTA관련 서류 발급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대비
- 향후 협력업체에 FTA교육을 실시하고 1:1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함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 (2차 실천계획) FTA활용을 위한 로드맵수립

중점 추진 활동	세부 실행 계획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원 총원(전담자 1명+담당자 1명) •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전담자)
전사적 원산지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추진 TFT 구성확대 • 원산지관리 사내 경영규정 제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ERP SYSTEM 개선 • 협력사관리시스템 개발추진(Partner System개발)
협력사 관리 방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교육/검증 계획 수립(Top&Down 맞춤형) • 인증수출자 취득컨설팅 진행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품목 5개 선정 • 협정별 원산지소명서 작성

• (3차 검증대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role model 수립

-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낮음

* 본부세관 사전검증(11.8월), 고객사(현대차, 모비스) 검증(11.9월, 11월)

⇒ FTA상대국의 고객사대상 원산지검증시 “1차 협력업체 자격”으로, “당사에 대한 원산지검증”, “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검증” 필요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 협력사와 상생적 ·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 협력사에게 원산지검증,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원산지검증을 자체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성과 거양
 - * 검증방법 : 자율사전+세관합동 현장검증 (68개 업체)

구 분	결과 및 시사점
자율사전검증 ('12년 3월)	S등급 3개, A등급 3개, B등급 5개업체 (원산지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협력사의 인식변화가 큰 성과)
현장검증(6월)	B등급 이상 11개에서 30개로 비약적 향상

- 협력업체들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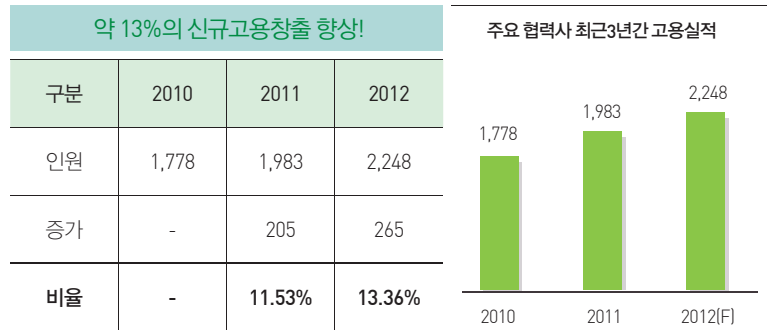
⑤ 활용효과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협력사로의 FTA성과 향유
 - 한-EU 및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 338,539불
 - 협력사 매출액 30% 향상 등 협력사로의 FTA 성과 확산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 국내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위 12개 업체 평균 13%의 고용창출



- (신성장동력 확보) 신규사업분야(Alternator) 확장, 제조라인 증설

⑥ 시사점

-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공동노력은 수출량 증대로 이어져 발주량 증가 등 협력관계의 공고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기업규모 확장 까지 견인할 수 있어 Win-Win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구조라는 인식 필요



04

[FTA 활용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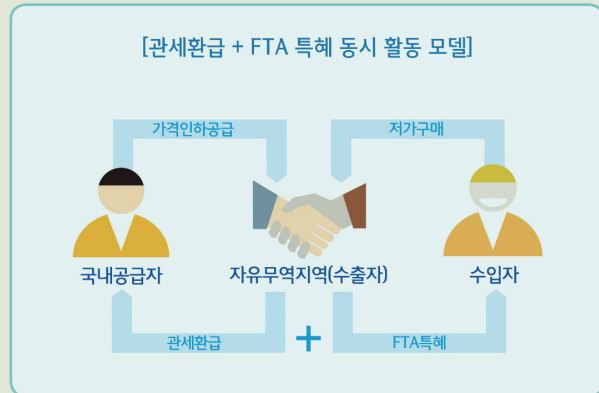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당해 지역에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함께 FTA특혜와 관세환급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수입원재료 국내 구매시 관세환급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구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FTA를 활용하여 수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FTA특혜관세 혜택(수입자)+관세환급 혜택(국내공급자)' 동시 수혜



활용효과

-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 강화와 관세환급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증대

원재료는 관세환급,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H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LED조명기구를 생산하여 EU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조명기구의 대체코 전체 수출액 중 약 80%를 차지

② FTA 활용 전 상황

- 경쟁심화 · 생산비효율 · 발주량 급감으로 국내 공장철수 위기
 - 누적적자 지속 및 생산비효율을 이유로 일본 본사가 한국지사 철수 압박
 - 체코 조명기구 시장에 국내 업체들이 신규 진출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체코 구매자의 지속적인 제품가격 인하 요구로 공급처 상실 우려

③ 장애요소

- 위기에서 부각된 FTA, 그러나 난항
 - 【장애발생 1】
한-EU FTA 체결 이후 FTA활용을 위해 부서간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였으나, ①FTA이해부족, ②사내직원의 무관심, ③협력업체의 무지와 무관심, ④업무과중(인력부족), ⑤FTA협정위반 두려움 등으로 착수단계에서 어려움 봉착
 - 【장애발생 2】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던 주요 부품(Jumpwire, HeatSink, Diode)을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본사 입장 확인

→ 품질저하 및 원산지결정기준(MC 50%)을 불충족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④ 극복방법

- FTA 민 · 관 합동 솔루션팀의 해결방안 제시
 - 생산비용 절감 대신,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로 영업이익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AA사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 내역(BOM, 원재료 등), 원산지결정기준인 MC 50%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등 세부내역 검토
 - 한-EU FTA활용 지원 회의에 도출된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

원재료는 관세환급,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

현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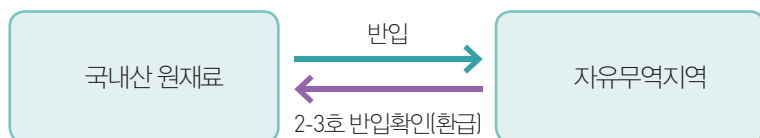
- 제품가격 인하를 위한 중국산 원재료 수입 계획 하달
- 역외산원재료 중 일본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일본산 부품의 가격 비중 높음(84%)
- 수출국인 체코로부터 지속적인 제품가격 인하 요구

Solution

- 국내 공급(국내산)재료의 단가 인하로 국산 사용 증가
- 일본 본사와 공급단가 관련 협의 필요
- 한-EU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방안 강구
(역내산 누적기준 활용)

- 비원산지재료 비율 증가 시 한-EU FTA PSR인 MC 50%를 불충족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출품의 원재료 변화 계획에 대해 관계자와 정보공유
⇒ 시간·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의견교류시스템(Band) 신설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지위를 활용한 新모델 개발
 - 국내산 원재료를 값싼 외국산 원재료로 대체
 - 자유무역지역 반입 국내산 원재료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델 제시하여 환급가능한 국내산 원재료는 단가인하 협상이 가능함을 안내



원재료는 관세환급,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

-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외국산 원재료는 직접 수입하는 방안 제시
- 물류 단계 축소로 외국산 원재료의 단가 인하 가능성, 과세보류 활용

⑤ 활용효과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 FTA 활용 후 최근 1년간 미화 16.7만불 관세절감 효과로 수출경쟁력 향상
- '13년 8월 ~ '14년 7월, 對EU 수출액 USD 2,844,713 x 4.5%(체코 기준세율) = USD 166,656
 - 한국산 조명기구의 체코시장 점유율 획기적 상승(70.9% → 80.4%)
- EU지역 수출실적의 획기적 향상
 - 체코시장 수출액 51%증가와 더불어 체코 외 EU국가 신규시장 진출(미화 86만불, 전년 동기대비 104배 성장)로 EU지역 95% 급증
-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
 - 수출증대로 영업이익 적자폭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
 - 국내공장 존속가치 확보 및 종업원 117명의 일자리 유지

⑥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라는 경영·입지환경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모델 제시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해외신규시장 개척
- FTA 활용 지원방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상시 피드백을 통해 FTA 혜택 향유 지원

FTA로 “관세환급+FTA특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 기업소개

- A사는 방역관련제품 18가지 종류(HS CODE 6단위기준)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7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 제품소개(방역용 연무기, HS 제8424.89호)

구분	MFN 세율	FTA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태국)	20.0%	0%	CTH or RVC 40
한-EU FTA	1.7%	0%	CTH or MC 50
한-인도 CEPA	7.5%	0%	CTSH and RVC 35

2 FTA 활용전 상황

- A업체는 국내 12개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수출주력형 기업으로 수출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 발생

3 장애요소

- FTA가 회사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것으로 확신하고 원산지증빙자료 제공 등 협력사(제조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완제품에 대한 대외비 정보(투입원재료 리스트 및 재료비등) 공개에 대한 협력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 발생

4 극복방법

- 중소기업 지원 FTA컨설팅을 통해 제조사 설득방법 강구
 - 수출비중이 높고 FTA활용 실익이 있는 물품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제조사 설득
- ▶ 아세안(태국) 및 EU협정 활용에 실익이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방역용 연무기 제품(HS 제8424.89호)을 대상 물품으로 선정하고해당물품 제조사를 설득하기로 결정

FTA로 “관세환급+FTA특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방역용 연무기제품(HS 제8424.89호)은 아세안과 EU협정에 공통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고 있어, 제조사에 BOM내역 중 원재료 가격을 제외한 투입원재료 정보를 요청하여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진행

▶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비중이 낮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최소(미소)기준 적용

- 제조사에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2개 원재료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수출가격(FOB, EXW)의 10% 미만임을 확인

⑤ 활용효과

- 아세안(태국)은 20%, EU는 1.7%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향후베트남(2% 실익) 및 인도(7.5% 실익) 수출에 대해서도 바이어에게 FTA특혜관세혜택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신규거래 확장
- 수출자와 제조사간 쌓인 업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그간 발행되지 않았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통한 관세환급 가능

⑥ 시사점

- FTA 원산지관리 업무를 통해 수출자와 제조사간 업무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해지게 되어 수출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익 발생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발로 뛰어가며 합격한 원산지관리사

서학원 원산지관리사 최고령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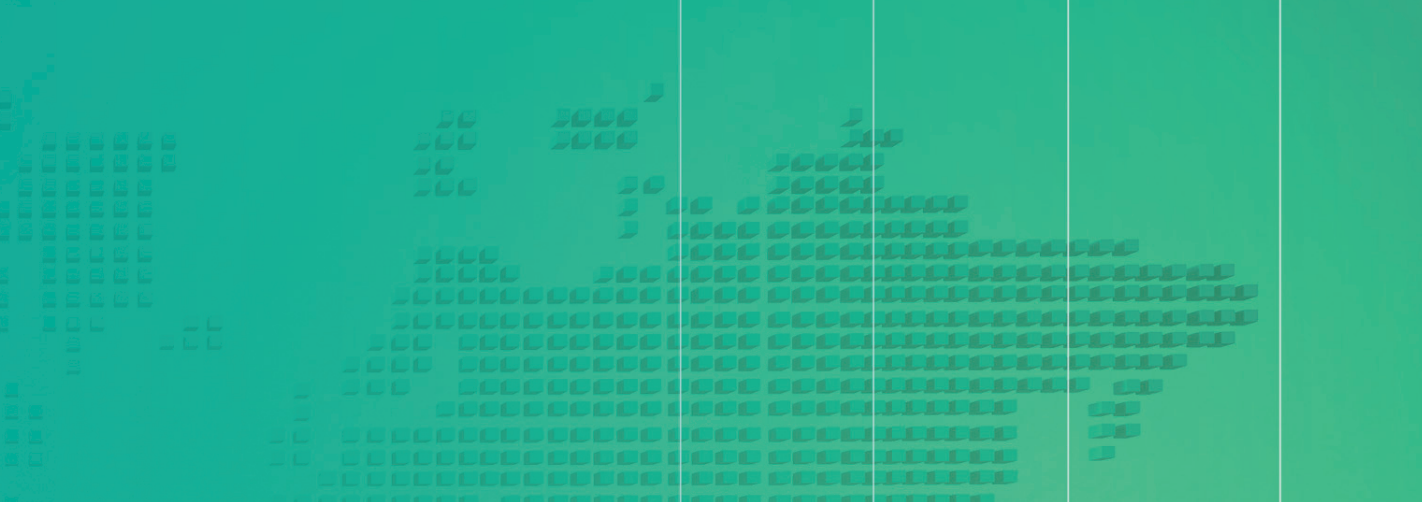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FTA 전문인력이 될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다

신아형 원산지관리사 최연소 합격자

각과목들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합격하다

호성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로 뛰어가며 합격한 원산지관리사

서학원 원산지관리사 최고령 합격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무역분야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시 수출입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총족여부확인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및 중장년층 등으로 시험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중 최고령자인 서학원(1947년생)씨, 최연소 합격자인 신아형(1995년생)씨로부터 원산지관리사 합격수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지관리사 서학원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1972년부터 대기업에서만 해외 Sales, 해외근무 및 관련 수출입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정년 후 지금은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FTA 업무를 포함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 FTA라는 단어는 2000년대 초까지는 다소는 생소했던 것으로, 대기업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던 당시 뜻밖에도 FTA 관련된 요청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무척 당황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0여년 전 중소기업에선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사내엔 무역은 물론 FTA업무를 아는 사람이 전무했습니다. 수십년을, 그것도 대기업에서 해외근무도 하며 무역을 했다는 사람이 무역업 무인 FTA를 모른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 세대 무역에선 지금 개념의 FTA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무역기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에서 무료 FTA 세미나 교육 등을 무차별로 쫓아다니며 배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세미나 강사분들께 직접 묻고, 그분들과 친분을 쌓아 e-mail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FTA 관리업무(원산지관리업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시행하던 필수교육 (3일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으나 오랜 무역업무 경험으로 수출입에 대한 개념이 도움이 되어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국가공인으로 변경되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을 통해 FTA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얼마간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면, 저는 무역협회에서 시행한 "국제무역사 시험" 에서도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입으로 먹고 살아야하는 숙명을 타고난 대한민국에선 FTA 관련업무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역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장년층 여러분들, 늦다 생각치 마시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에 꼭 도전해보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FTA 전문인력이 될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다

신아형 원산지관리사 최연소 합격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업에 꿈이 있는 대학생 신아형입니다. 원산지 관리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무역에 대해 배우는 이론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선배님과 교수님이 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서 FTA에 대한 지식은 큰 메리트이고 원산지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산지관리사가 되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것은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나중엔 학교와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각종 과제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향후 FTA 전문인력이 될 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제 공부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강의를 들으며 과목별 정리노트를 만든 것 입니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과목은 X, Y좌표를 만들어 가로축엔 분야별 특례, 세로축엔 협정을 쭉 써가며 외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나오는 계산문제는 특히 주의깊게 계산방법과 수치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4과목 중 가장 생소한 과목인 품목분류실무는 암기가 쉽지 않아 눈에 익숙해지게끔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학교와 집을 이동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틈틈이 자주 보면서 익숙하지 않던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저는 최연소 합격자이긴 하지만,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할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시험합격 역시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자 시험을 통해 몰랐던 품목이름도 알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합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원산지 관리자 취득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원산지 관리자 자격증으로 인해 조금 더 제 꿈을 이루는데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실무에 나가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며 저의 꿈을 실현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각과목들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합격하다

호성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호성훈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중국학,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막연히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학과생을 위한 자격증 교육 지원으로 국제무역사를 취득하게 되면서 더욱 더 무역과 연관된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역사 취득을 계기로 무역영어1급, 물류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무역학과 계열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시기에 ‘원산지관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FTA’라는 용어만 들어봤을 뿐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듣다 보니 과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3일 과정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료 후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미리 교재를 구매하여 읽어 보기만 했더라도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였습니다.

강사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저 빨간펜으로 표시만 할 뿐 외워지거나 이해할 수 없던 내용들이 혼자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부터 학교 공부든 자격증 공부든 이해도 되지 않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정독하면서 공부 하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는 교재를 대충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읽어본 후 최신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과 시험문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FTA협정 및 법령을 기초로 어떠한 원산지 결정기준들이 있고, 그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품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품목 분류, 그리고 물품이 수출입 될 때 활용되는 수출입통관 과목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흐름을 정리하고 외우면서 준비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조차 외우지 않고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과목을 그저 읽고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목들이 연계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저 자격증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FTA의 기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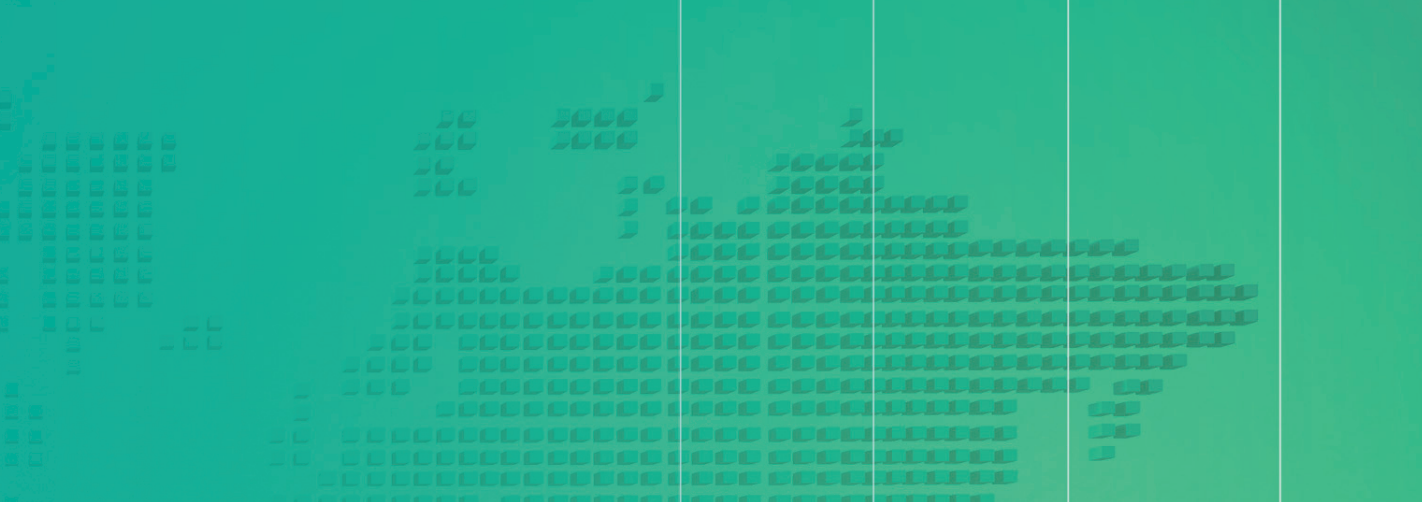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저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이행지원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익힌 FTA 전문지식을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FTA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각자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여 합격하시고 FTA 전문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둘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PASS 둘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국가관세종합행정망 4세대 시스템이 개통되어 원산지 통합 관리 시스템인 FTA-PASS에서도 유니패스 4세대 증명서(기관)신청 연계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참고로 관세청 국종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9개 기관, 수출입 회사,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금번 국증망 4세대 시스템의 도입으로 FTA-PASS 프로그램에서는 일반특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관세청 유니패스로 일반특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해당메뉴는 기존처럼 FTA-PASS를 로그인 하면 서류관리 메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FTA-PASS 새 기능으로 신규협정의 원산지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다. 한-중, 한-베트남,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에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에서는 6월 20일 서울에서 FTA-PASS를 사용하는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교육은 7월에도 개최될 예정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FTA-PASS 활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사후관리팀은 아래와 같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다. FTA-PASS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자료준비 후 최소 2주전에 신청하면 방문일정에 대해 협의 후 무료로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FTA-PASS 현장지원

현장지원 신청 조건

- ☑ FTA-PASS를 처음 사용한다.
- ☑ FTA-PASS를 사용하기 막막하다.
- ☑ FTA-PASS를 기업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싶다.
- ☑ 원산지 관리 비용이 부담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지원 신청 조건




1. 신청서 접수

- 사이트접속 (ftapass.or.kr)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사전준비

- 방문일정 협의
- 입력자료 작성
- 증빙서류준비 (원산지확인서 등)




3. 현장방문

- 신청기업 직접방문
- 준비자료 검토
- FTA-PASS 적용
- 사후관리안내

사전준비 사항

1. 관리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2. FTA-PASS 입력자료 준비
 - 거래처 정보(거래코드, 거래처명)
 - 제품 정보(제품 품번, 제품명, HS코드)
 - BOM 정보(재료 품번, 재료명, 소요량, 단위,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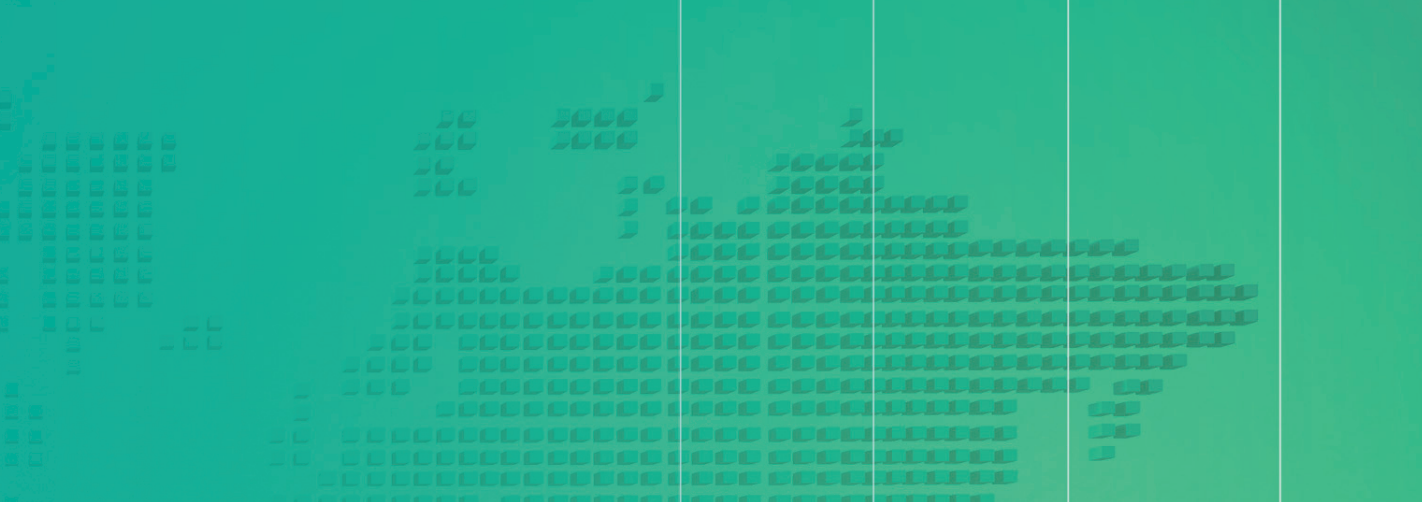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신청 기업의 자료가 준비된 후 현장지원을 신청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팀(031-600-0770)

FTA 100% 활용하기

EU 통관환경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법학박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EU 통관환경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개편된 EU 신 관세법 (Union Customs Code: UCC)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법학박사

2016년 5월부터 EU 신 관세법이 전면 발효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관세법을 보다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며 통관절차의 많은 부분을 전산화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EU 차원의 단일 통관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EU의 목표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기존 관세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 . EU 신 관세법 (Union Customs Code: UCC)의 배경

EU 통관행정에 관한 기본법은 1992년 제정된 Community Customs Code (CCC)^① 및 그 이행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인데, 지난 2008년에는 간편하고 전자화된 세관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Modernised Customs Code (MCC)^②를 제정 및 발효시켰으나 모든 회원국에 전산화를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그 시행일자를 준수하지 못하고 CCC가 계속 적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에는 그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보류중이던 MCC를 폐지하고 EU 통관행정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Union Customs Code (UCC)라 불리는 신 관세법을 제정하였다.^③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UC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④

- ① 관세법령과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 ② 기업에 대하여 향상된 법적안정성 및 법적통일성을 제공하고 EU 역내의 모든 관세행정담당 공무원을 위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③ 통관규정 및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현재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포함
- ④ 완전 전자화되고 회원국 세관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관행정 환경으로의 전환을 완성함

①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J L 302, 19.10.1992.

② 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the Community Customs Code (Modernised Customs Code). OJ L 145, 4.6.2008.

③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269, 10.10.2013.

④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code/union_customs_code/ucc/introduction_en.htm.

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of 28 July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detailed rules concern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OJ L 343, 29.12.2015.

⑥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of 24 Novem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343, 29.12.2015.

⑦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341 of 17 December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nsitional rules for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where the relevant electronic systems are not yet operational and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 OJ L 69, 15.3.2016.

- ⑤ 법령을 잘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자, 특히 종합인증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를 위한 신속 통관절차를 강화함

한편, UCC는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위임입법 (Delegated Act: DA) 및 이행법 (Implementing Act: IA)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에 DA,^⑤ IA^⑥ 및 완전한 전자통관환경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시까지 적용될 경과규정인 Transitional Delegated Act (TDA)^⑦를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TDA와 관련하여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인 Work Programme^⑧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EU는 2020년 말까지 전자통관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UCC의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 집행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UCC는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II. UCC의 주요내용

① EU 기준을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상의 편의 확대

CCC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게 보다 쉬운 세관신고, 보다 적은 세관통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AEO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물건의 공급사슬이 안전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업체는 간편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통관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UCC는 간편 통관에 관한 종합인증 우수업체 (AEO Customs Simplifications: AEOC)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① AEOC는 일반적인 세관신고 대신 자신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 세관신고방법인 Entry in Declarant's Records (EIDR)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578 of 11 April 2016 establishing the Work Programme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provided for i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99, 15.4.2016.

EIDR은 자신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1개월 이내에 보충신고를 제출하는 2단계로 구성되는 절차로서, 신고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자신의 장부에 기재되었음을 세관에 전자통보해야 한다.

또한 AEOC는 감독권한을 보유한 세관의 요구시 상품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상품을 물리적으로 세관에 제시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EIDR 세관신고절차를 이용하는 AEOC는 관세액을 스스로 평가 (Self-Assessment)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관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관세 납부의무 및 세관의 관세평가액 확인을 위한 정기적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Self-Assessment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직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 ③ 중앙집중식 통관 (Centralised Clearance)과 관련하여, 2020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AEOC는 전자신고를 통해 수입지와 관계 없이 한 세관에서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 시 관세 외에 부담해야 하는 국가별로 상이한 내국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지가 아니라 상품 수입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AEOC가 되기 위한 기준 중 업체의 능력에 관하여 새로운 조건이 도입되었고 현재의 기준 중 관세법령 준수에 관한 것을 일반 세금에 관하여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UCC 하에서 AEOC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관세법령 및 기타 세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사내에 통관 문제를 담당하는 상당 수준의 전문인력을 운용 중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의 AEO 지정은 2019년 4월까지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기존의 AEO 지정은 그 전까지 유효하며 별도로 AEO 재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② 관세평가 (Valuation) 규정의 변화

관세평가에 관하여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 방식인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s Rule)이 최종판매원칙 (Last Sales Rule)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에 의하면 수입자는 중간인이 생산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평가된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UCC는 상품이 EU 역내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시장에 풀리기 직전 지불한 금액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하는 최종판매원칙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상품가격이 상승하므로 UCC의 적용으로 관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UCC IA가 발효된 2016년 1월 18일 이전에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그 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에 의해, 그 때까지는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CCC하에서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료는 그것이 상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지급이 상품판매의 조건인 경우에만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으나, UCC는 모든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관세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UCC는 상품 수입시 관세평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 관세행정당국이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관세평가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자가 간편 관세평가절차 (Simplified Valuation Process)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추가요건을 정하고 있다.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의 변화

BTI란 업체가 EU 역내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관세당국으로부터 당해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이다. 업체는 BTI를 통해 수입하려는 상품의 정확한 품목을 확인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BTI 제도는 심사청구를 받은 EU 역내의 관세행정기관이 당해상품에 적절한 세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판단결과는 역내의 다른 모든 관세행정기관을 구속한다. BTI를 통해 세번이 확인된 상품에 대하여는 장차 EU 역내의 어느 지역에서 수입 통관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같은 품목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BTI는 통관행정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CC 하에서는 BTI가 관세행정기관만을 구속하고 있었으므로, BTI 품목분류에서 높은 관세율의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세관신고와 통관절차시 BTI와 다른 세번을 적용하기 쉬웠다. 그러나 UCC 하에서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 BTI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확인된 BTI를 포함한 모든 BTI는 EU 역내의 관세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도 구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BTI의 유효기간이 교부 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도 UCC로 인한 변화이다.

④ 상품 품목분류 (Classification of Goods)의 통일성 강화

UCC는 회원국들 사이에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품목분류방식이 다른 경우, 그 회원국

들의 전문가와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EU차원의 특별위원회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단일 세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한 토의를 위해 엄격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통일된 개별상품 품목분류가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원산지규정 (Origin Rules)의 변화

FTA나 GSP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구제조치의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모든 상품은 EU 역내로 수입될 때 그것이 이러한 특혜가 적용되는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의 상품인지, 아니면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의 상품인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혜가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CCC의 규정들은 2012년에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UCC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는 특혜대우를 요청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대신 상품수출자 자신의 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 이러한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에 관한 CCC의 규정들은 UCC에서 상당히 변경되었다.

즉, CCC에서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란 “당해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last), 상당하고 (substantial),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economically justified) 공정 또는 작업 (processing or working)이 이루어진 곳”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발생시켜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CC는 WTO 원산지규정협약에 따라 설립, 가동된 원산지조화프로그램 (Harmonized Working Programme) 아래서 제정된 List Rules를 일부 수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6 통관보증 (Guarantees) 확대적용

CCC에서는 EU 회원국에게 통관보증 요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UCC에서는 모든 통관절차에서 현존 또는 잠재적 관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통관보증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나, AEO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통관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포괄보증 (Comprehensive Guarantee)을 제공하거나, 포괄보증 제공시 인정되는 보증금 감면 (Waiver

or Reduction of Guarantee)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경과규정으로서 역내가공 (Inward Processing), 보세창고 (Customs Warehousing), 장치 (Temporary Storage) 등 UCC 발효 전 보증이 요구되지 않던 경우는 장치 UCC에 의한 승인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증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다.

① 보다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특별통관절차 (Special Procedures)

UCC는 기존의 다양한 특별통관절차를 통과운송 (Transit: 역내 및 역외), 보관 (Storage: 보세창고 및 통관절차가 없는 free zones), 특정사용 (Specific Use: Temporary Admission and End Use), 가공 (Processing: 역내 및 역외가공)의 네 가지 절차로 재편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업체가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관과 관련한 몇 가지 절차의 적용이 유연해졌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관세납부를 유예하는 절차에 대한 승인기간이 연장되었고, 보세창고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역내가공을 위한 상품 수입시 관세납부가 유예되기 위하여 필요한 역내가공상품 재수출요건이 폐지되었고, 역내가공상품이 EU 역내로 유통되기 위해 통관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이자 (Compensatory Interest)가 폐지된 것 등이 있다.

Ⅲ.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

지금까지 금년 5월부터 발효한 UCC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EU 통관환경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한다. 먼저, UCC로 인해 변경된 사항들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EU는 관세동맹으로서 EU 차원의 관세행정 통일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고 UCC의 제정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EU는 아직 완전한 단일 관세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국가별로 다른 통관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EU차원의 강력한 중앙 관세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UCC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관세당국별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원국에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회원국별로 통관행정문화가 서로 다른 점도 문제이다.



이에 더하여 UCC는 통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각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같은 위반에 대하여도 통관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U 회원국 별 관세행정 실무상의 미세한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도 EU 관세행정이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AEO, 업체등록식별시스템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등의 전자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EU는 전자기술에 기반한 역대 통관행정의 전면적 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EU가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EU 차원, 개별국 차원의 규제가 섞여 있어 사안별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0년 말까지 전자통관환경으로 완전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발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체들은 서로 다른 다수의 전자통관시스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UCC하에서 확대된 간편 통관절차 및 보증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AEOC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 기업들도 EU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다면 AEOC가 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 경우 AEOC가 되려면 내부적으로 준법정책 강화 및 통관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EU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사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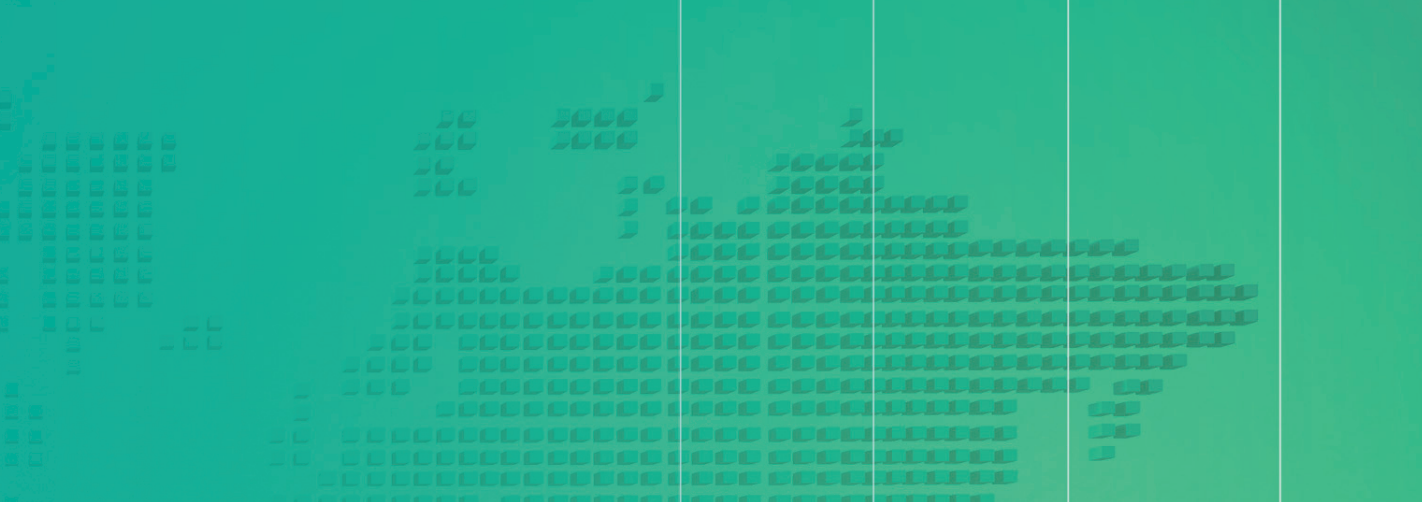
FTA 지도

지도로 보는 2014 대비 2015 특혜 수출입실적 증감률

※ 대상협정 : 발효 2년차 이상 협정(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제외)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률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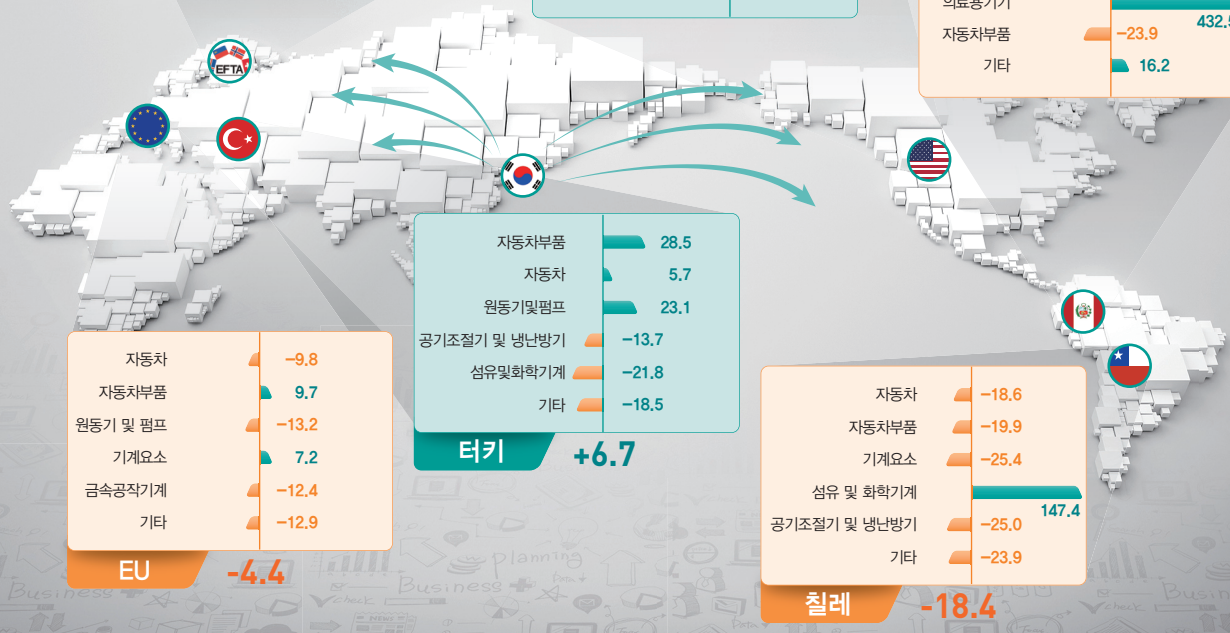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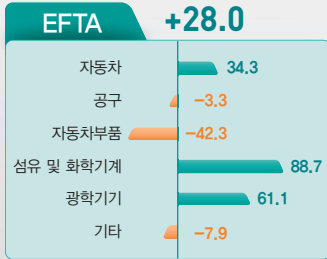


※ 증감률 계산 공식 = $\frac{(2015\text{년 특혜 수출입금액} - 2014\text{년 특혜 수출입금액})}{2014\text{년 특혜 수출입 금액}}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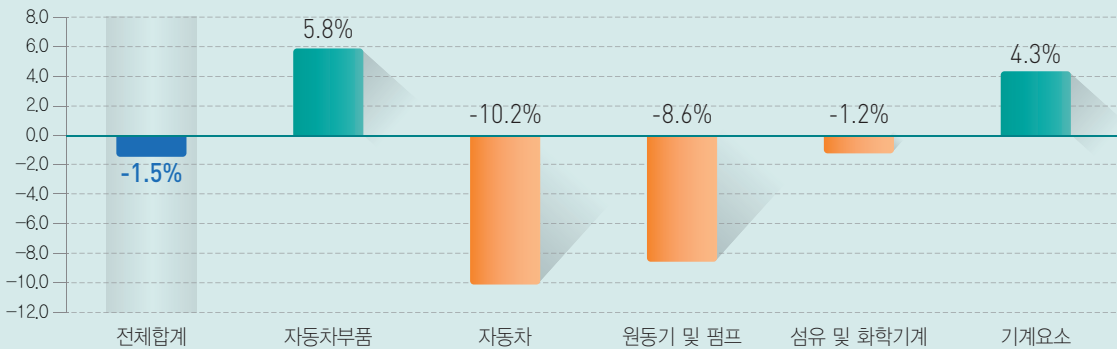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수출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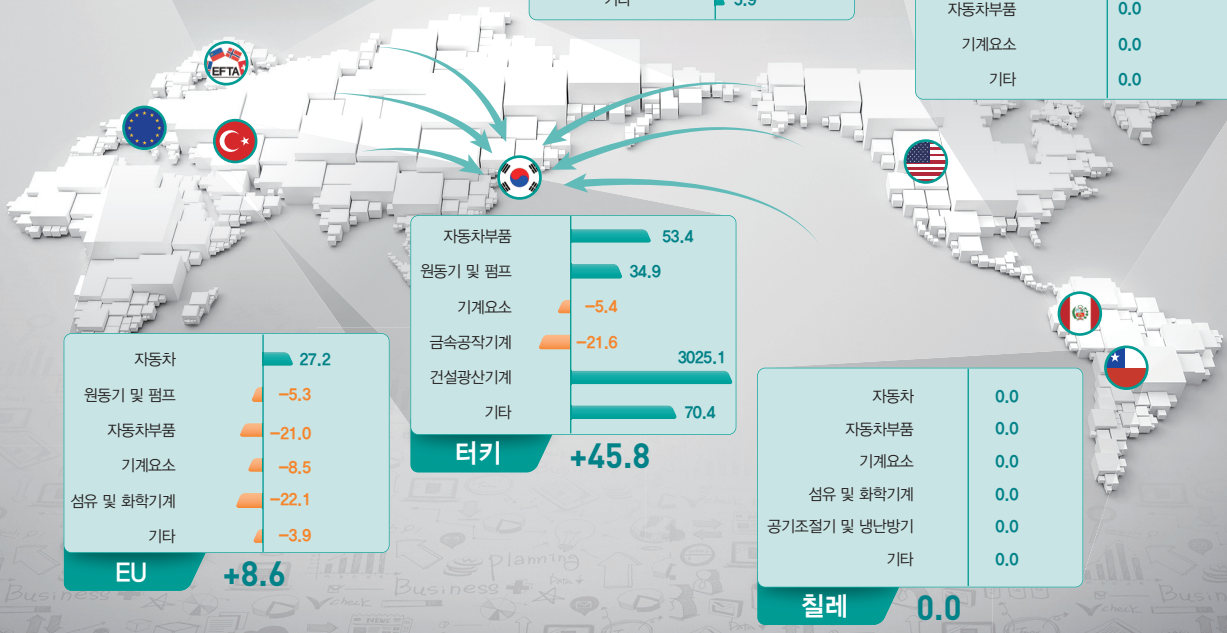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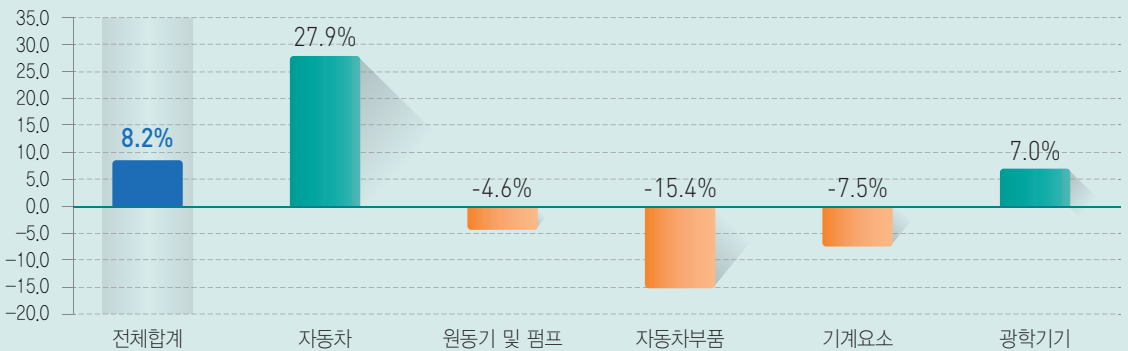




수입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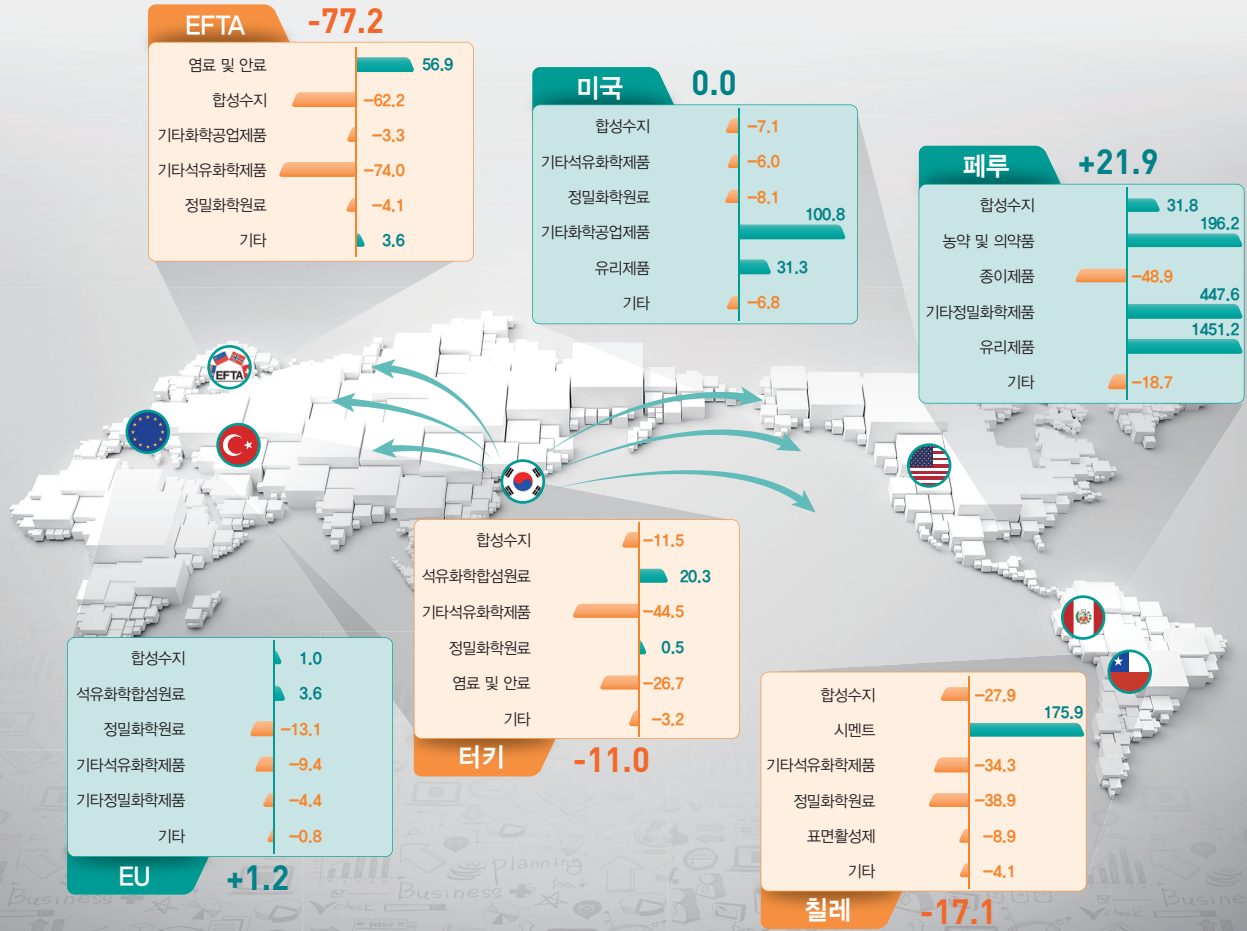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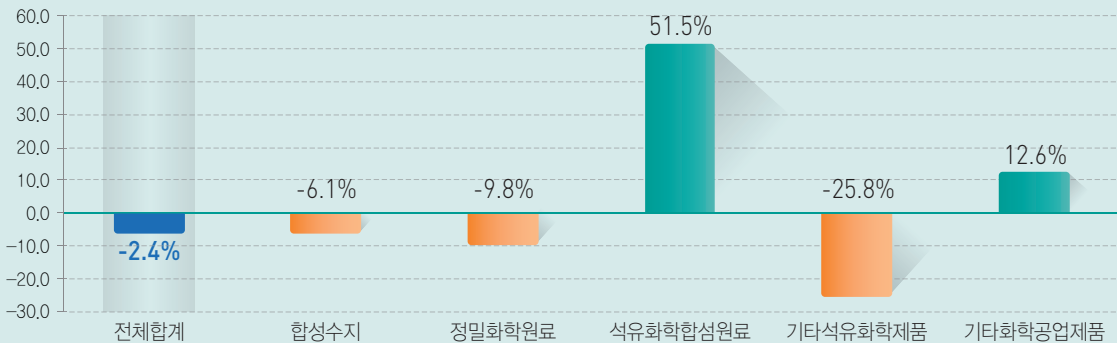




수출 화학공업제품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입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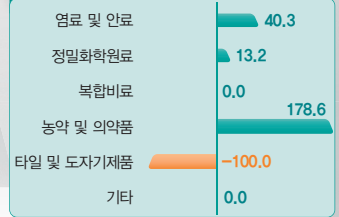
EFTA -6.2



미국 -6.3



페루 +39.4



터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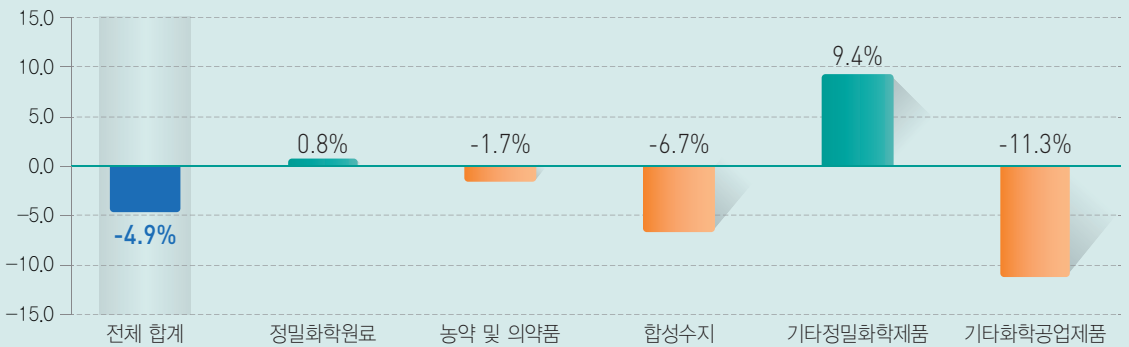


EU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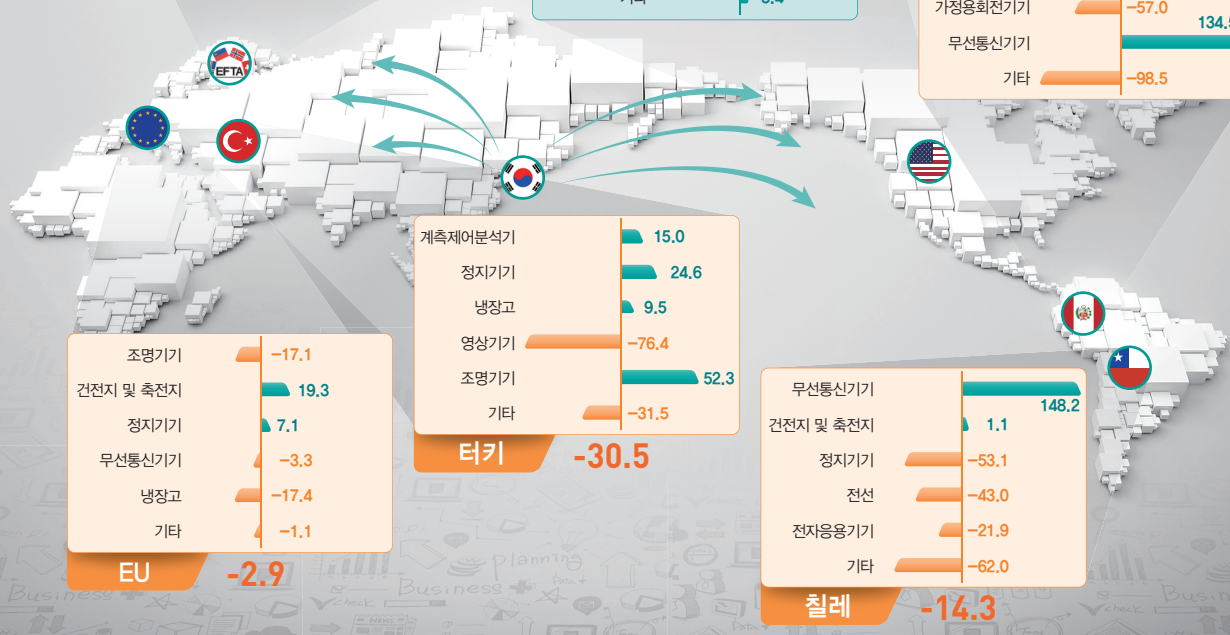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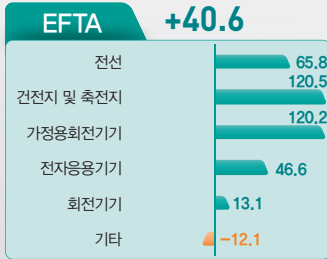
칠레 +33.5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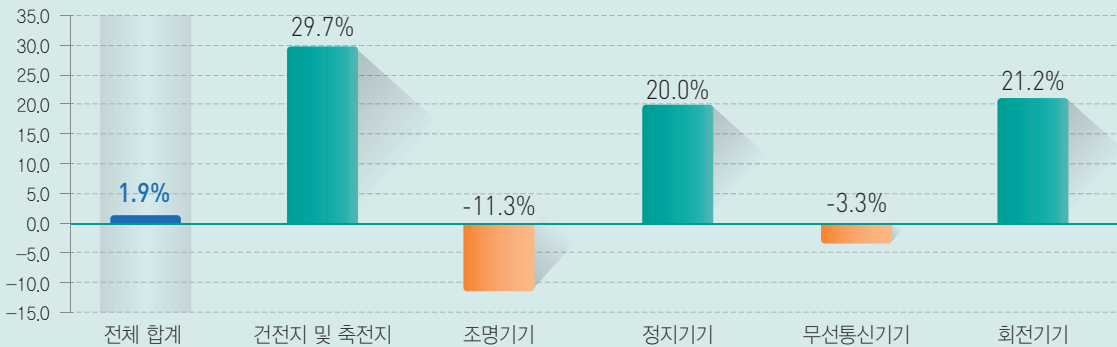




수출 전자전기제품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입 전자전기제품

EFTA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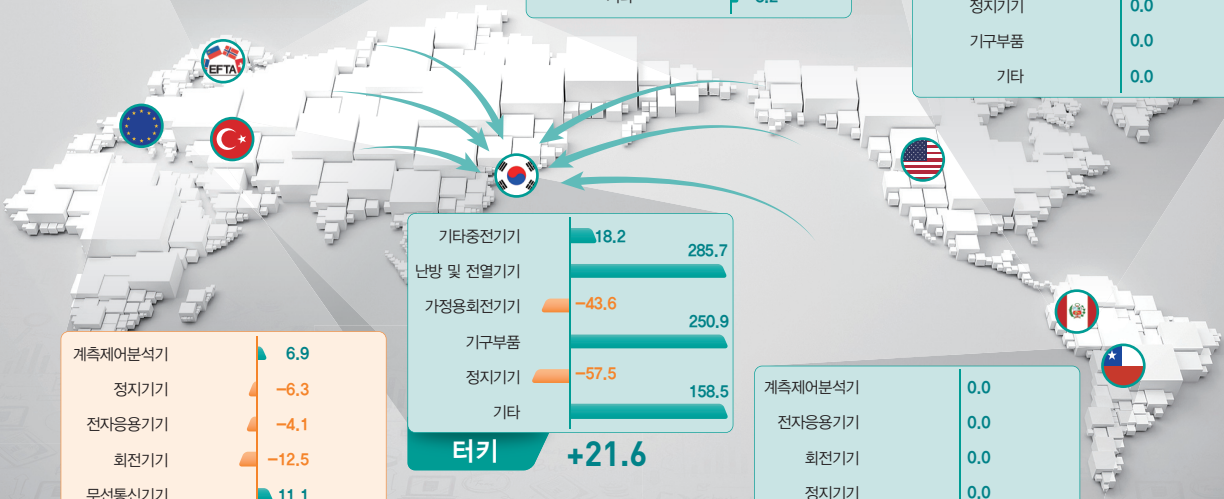
계측제어분석기	-17.3
정지기기	13.8
회전기기	-9.7
기타중전기기	15.9
전자응용기기	10.1
기타	-4.3

미국 +11.6

계측제어분석기	10.3
전자응용기기	7.1
회전기기	12.1
정지기기	27.9
기구부품	20.9
기타	8.2

페루 0.0

계측제어분석기	0.0
전자응용기기	0.0
회전기기	0.0
정지기기	0.0
기구부품	0.0
기타	0.0



계측제어분석기	6.9
정지기기	-6.3
전자응용기기	-4.1
회전기기	-12.5
무선통신기기	11.1
기타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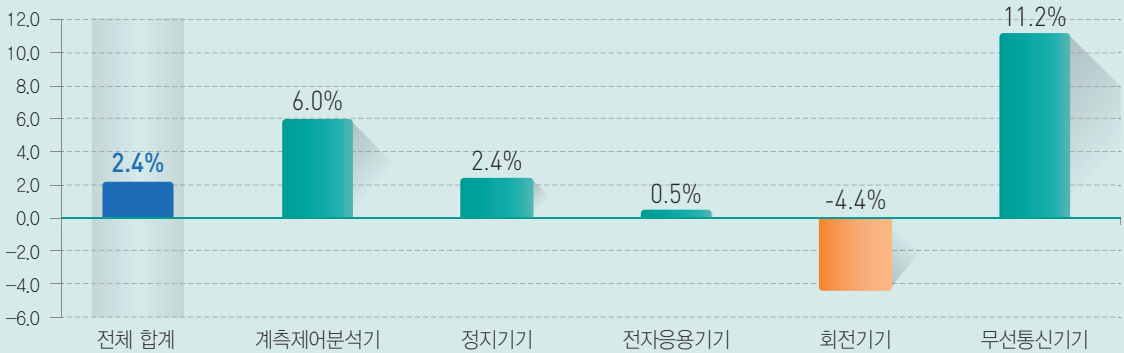
EU -1.5

터키 +21.6

계측제어분석기	0.0
전자응용기기	0.0
회전기기	0.0
정지기기	0.0
기구부품	0.0
기타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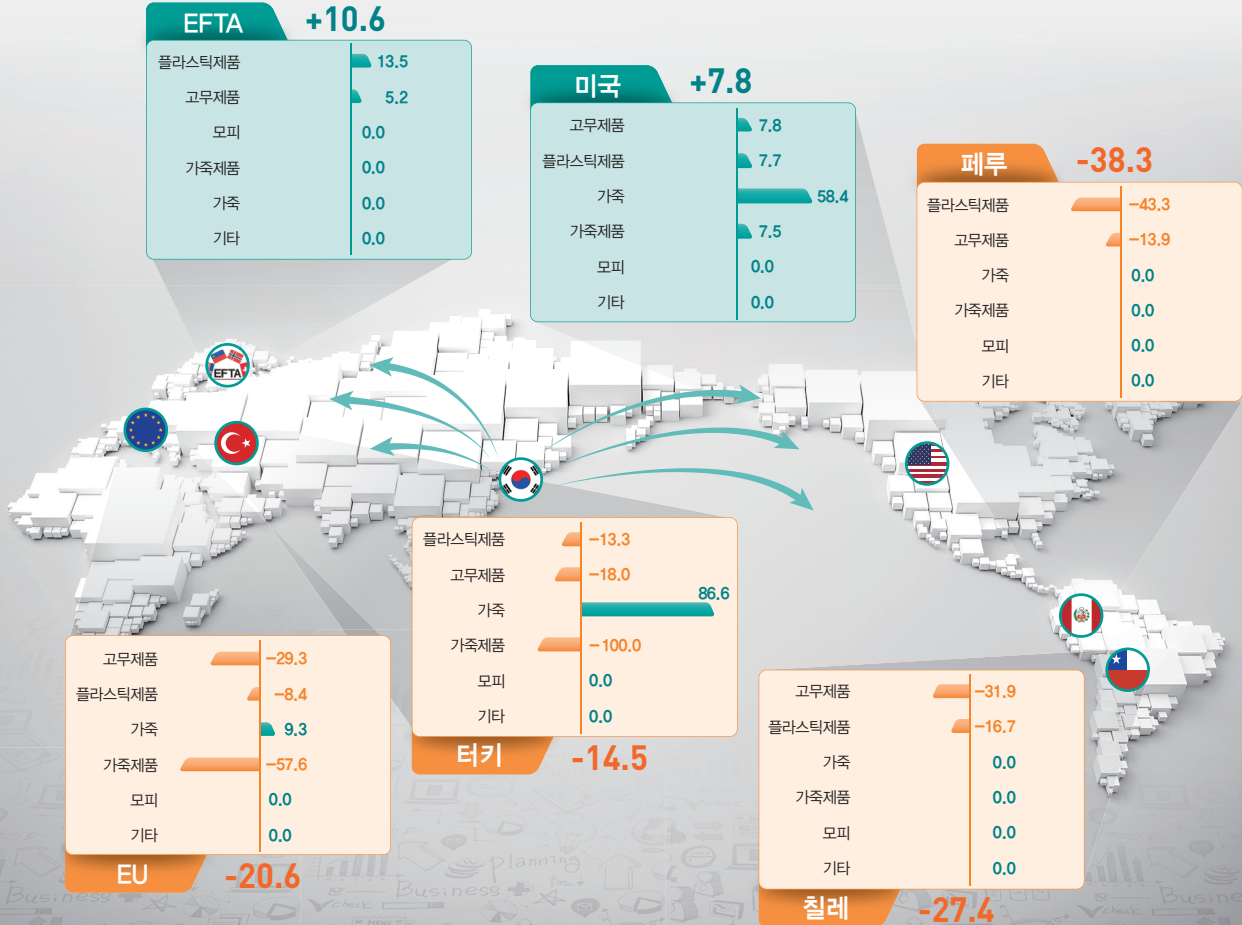
칠레 0.0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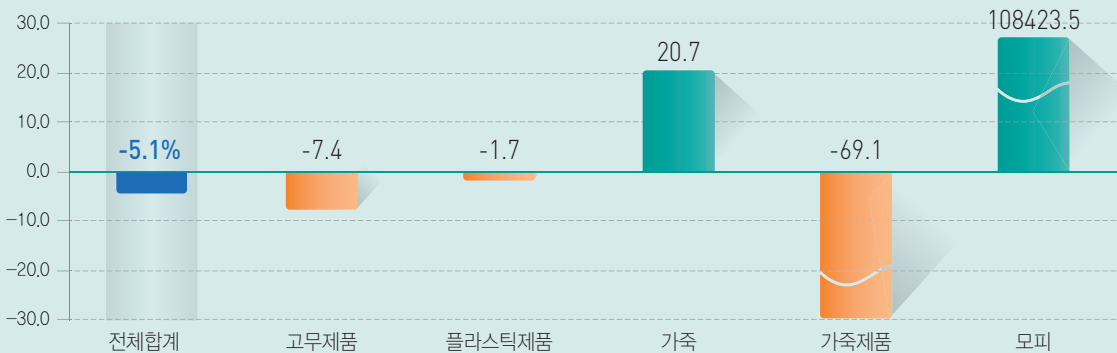




수출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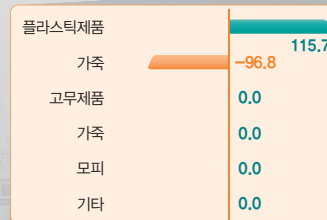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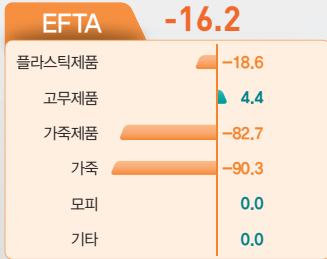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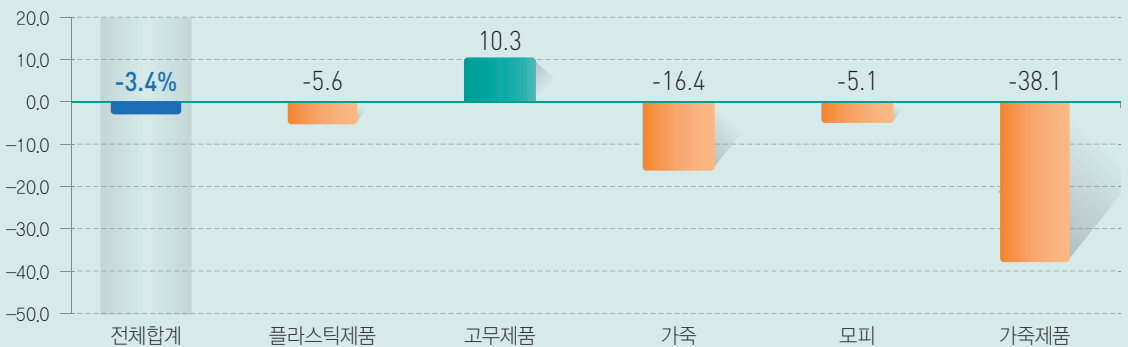




수입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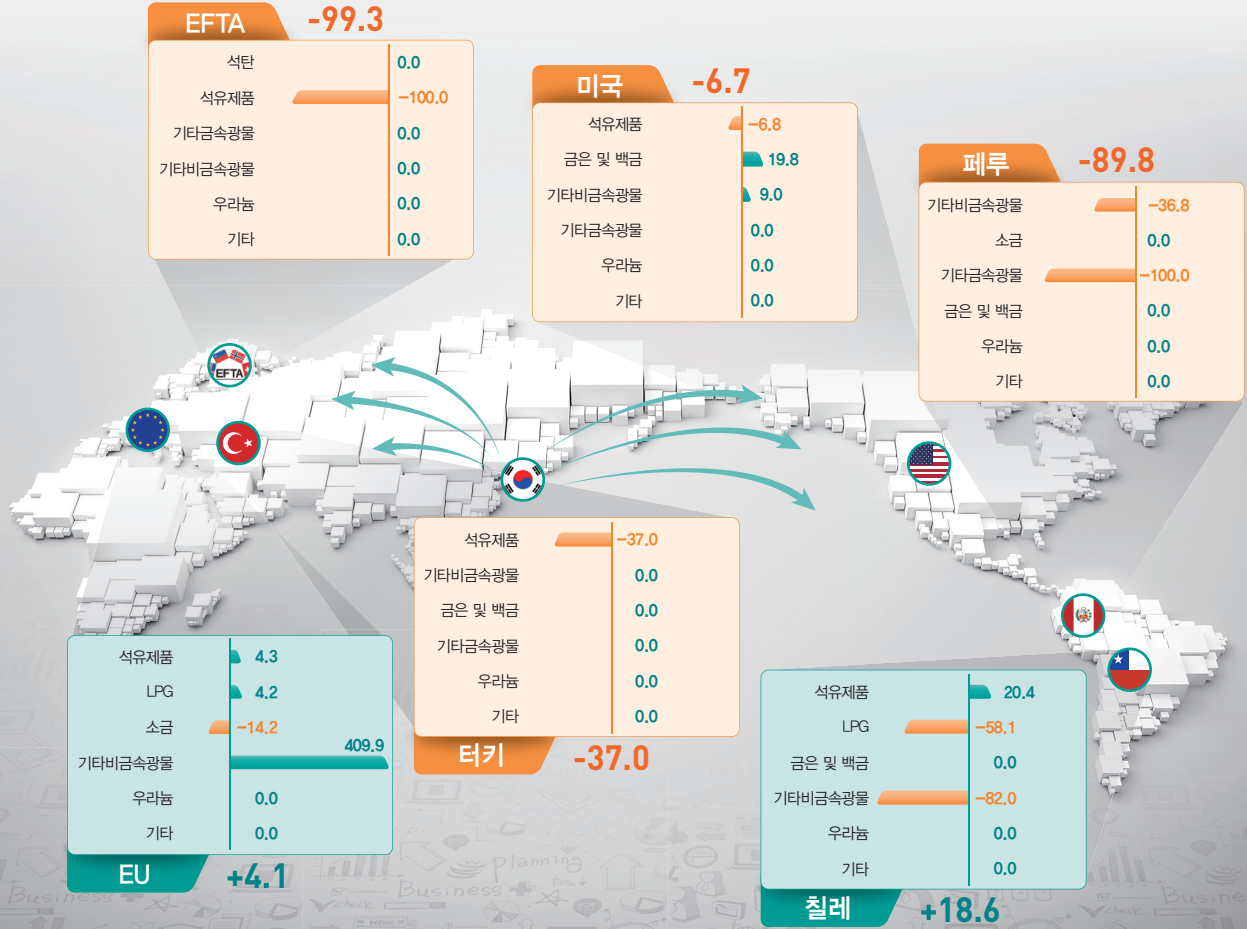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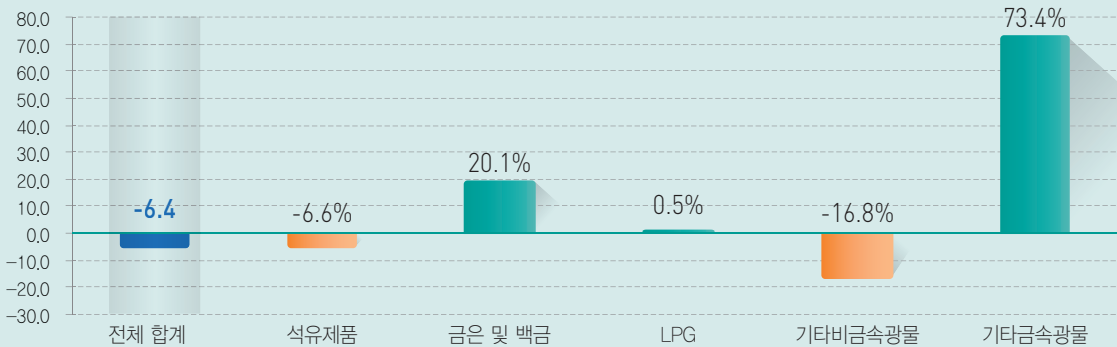




수출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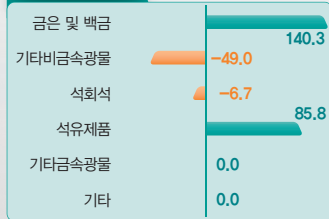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입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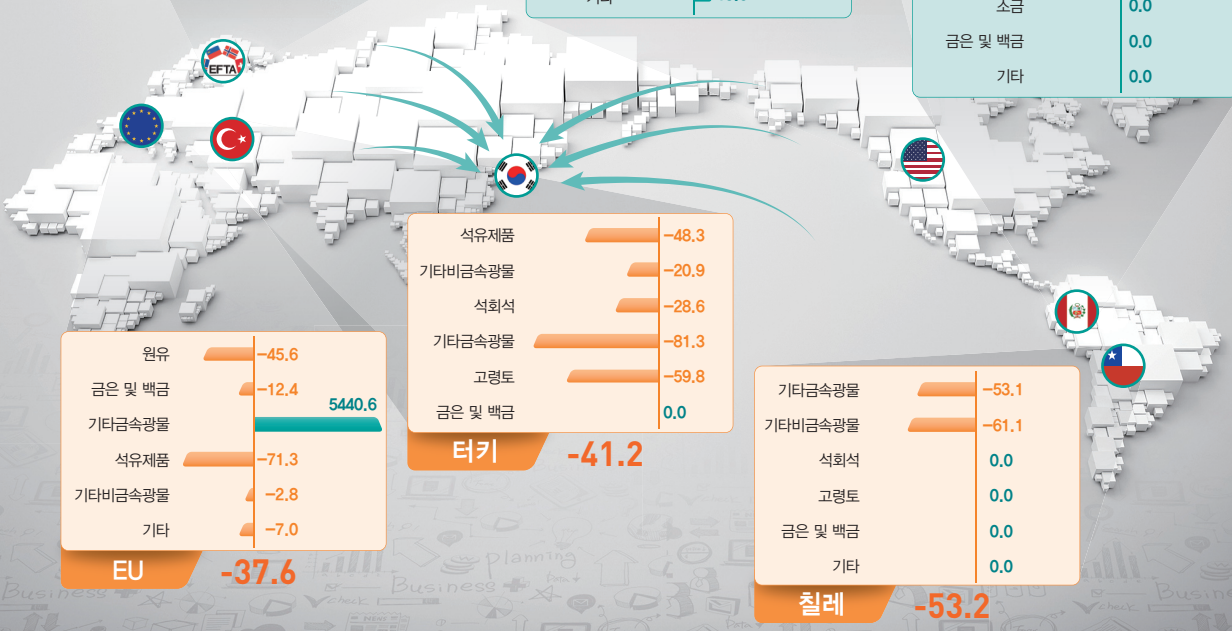
EFTA +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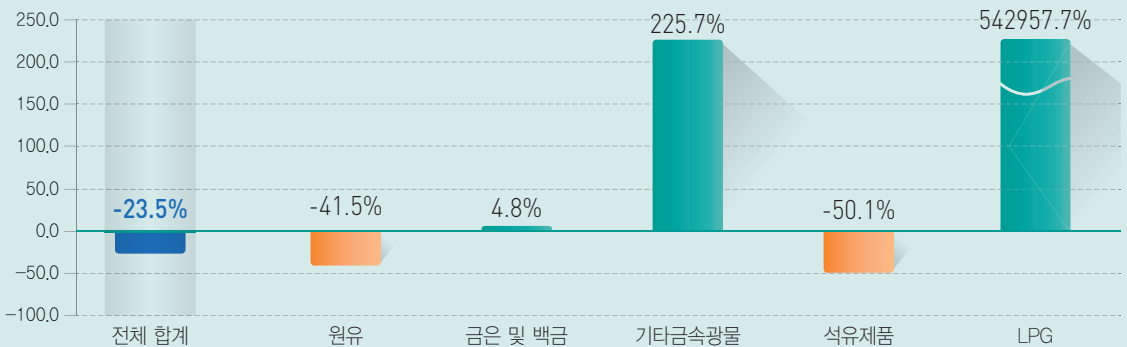
미국 +136.6



페루 +23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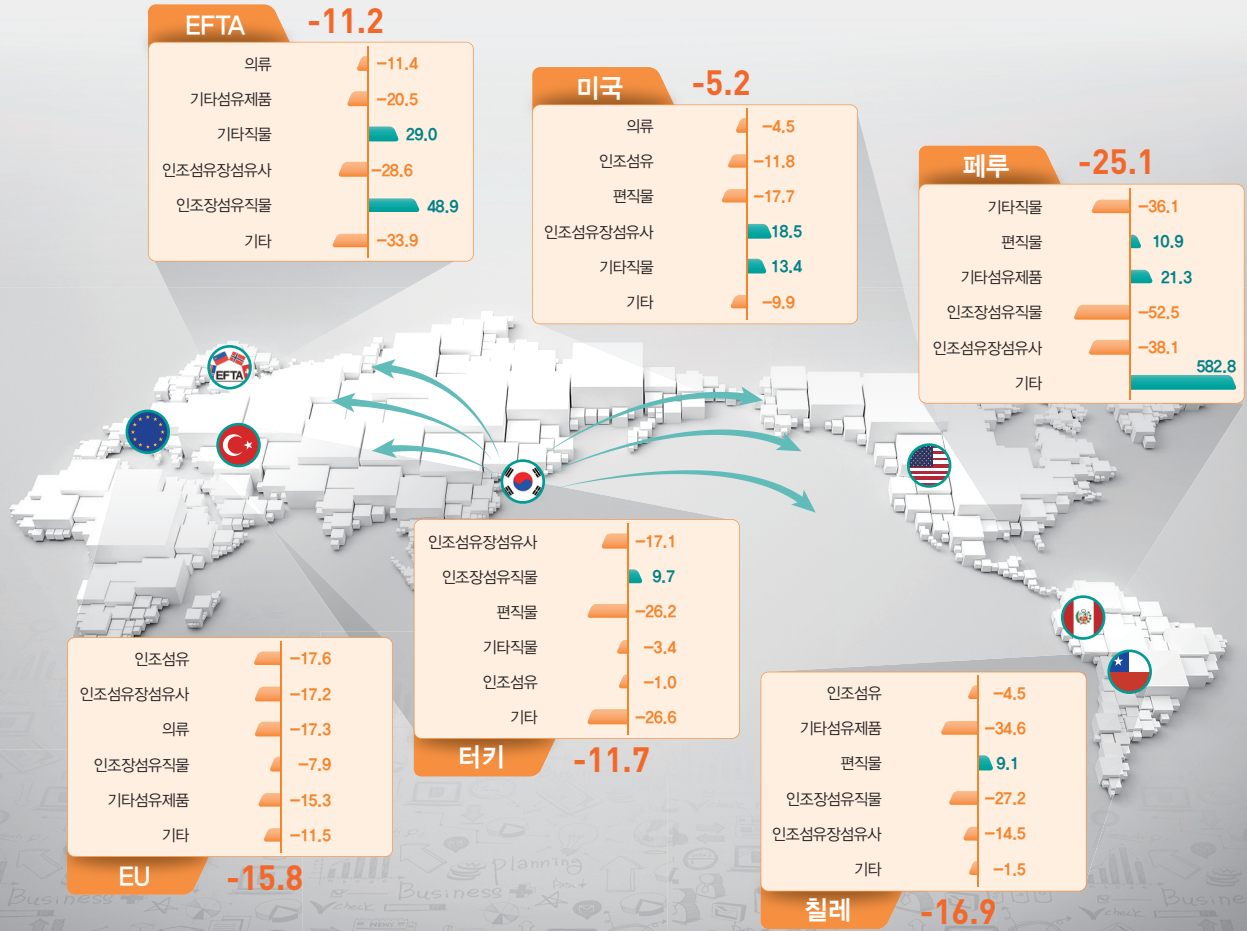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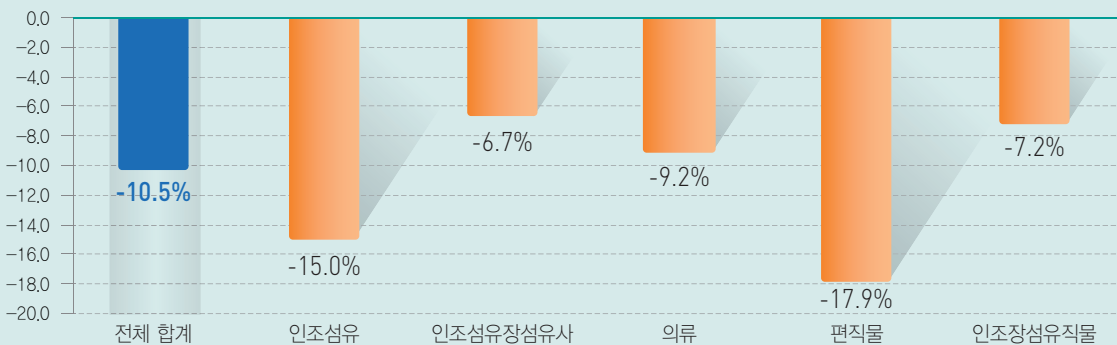




수출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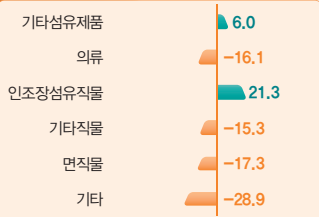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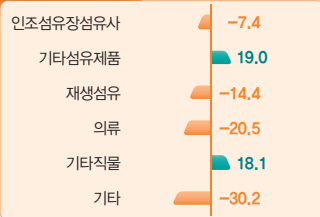


수입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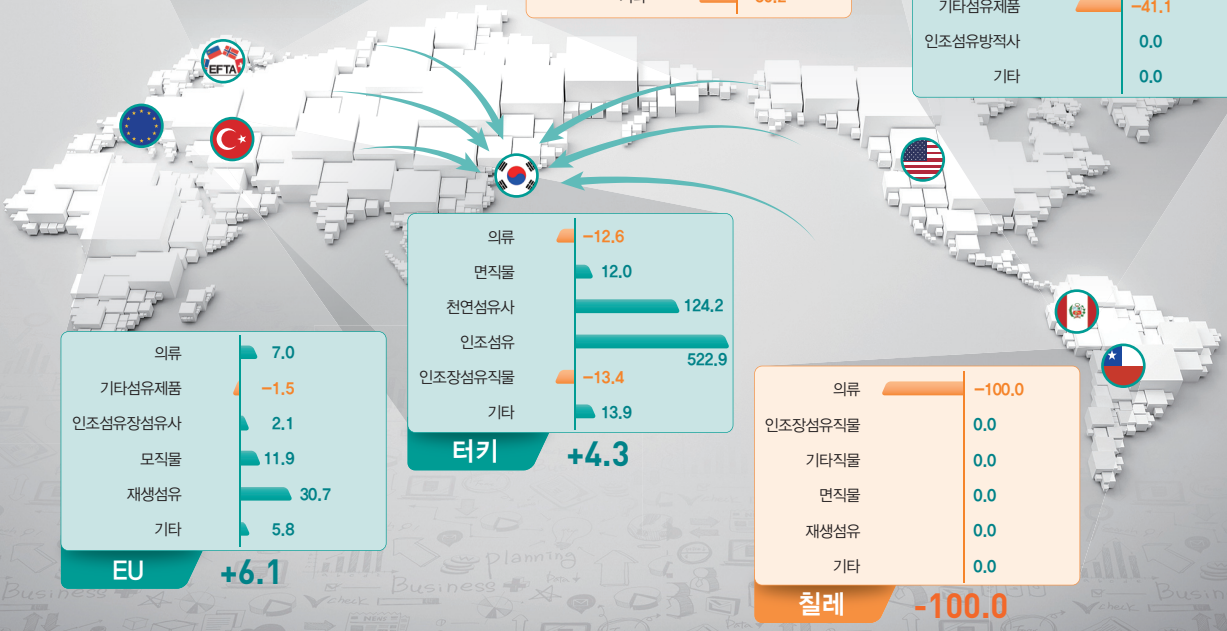
EFTA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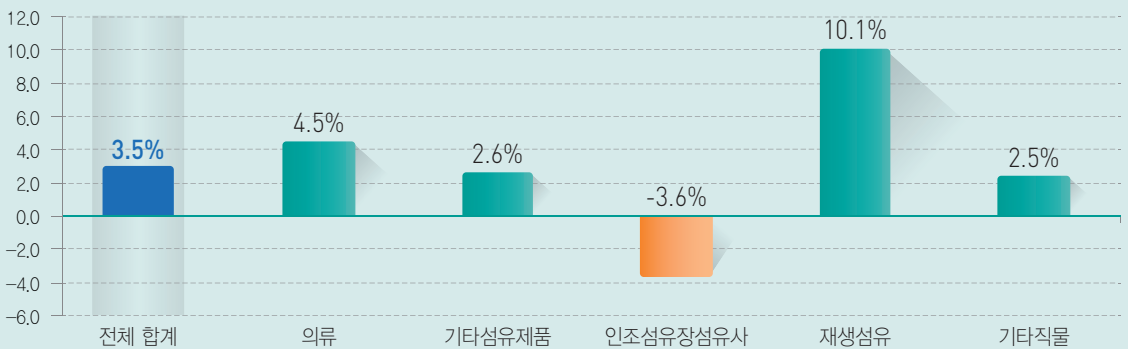
미국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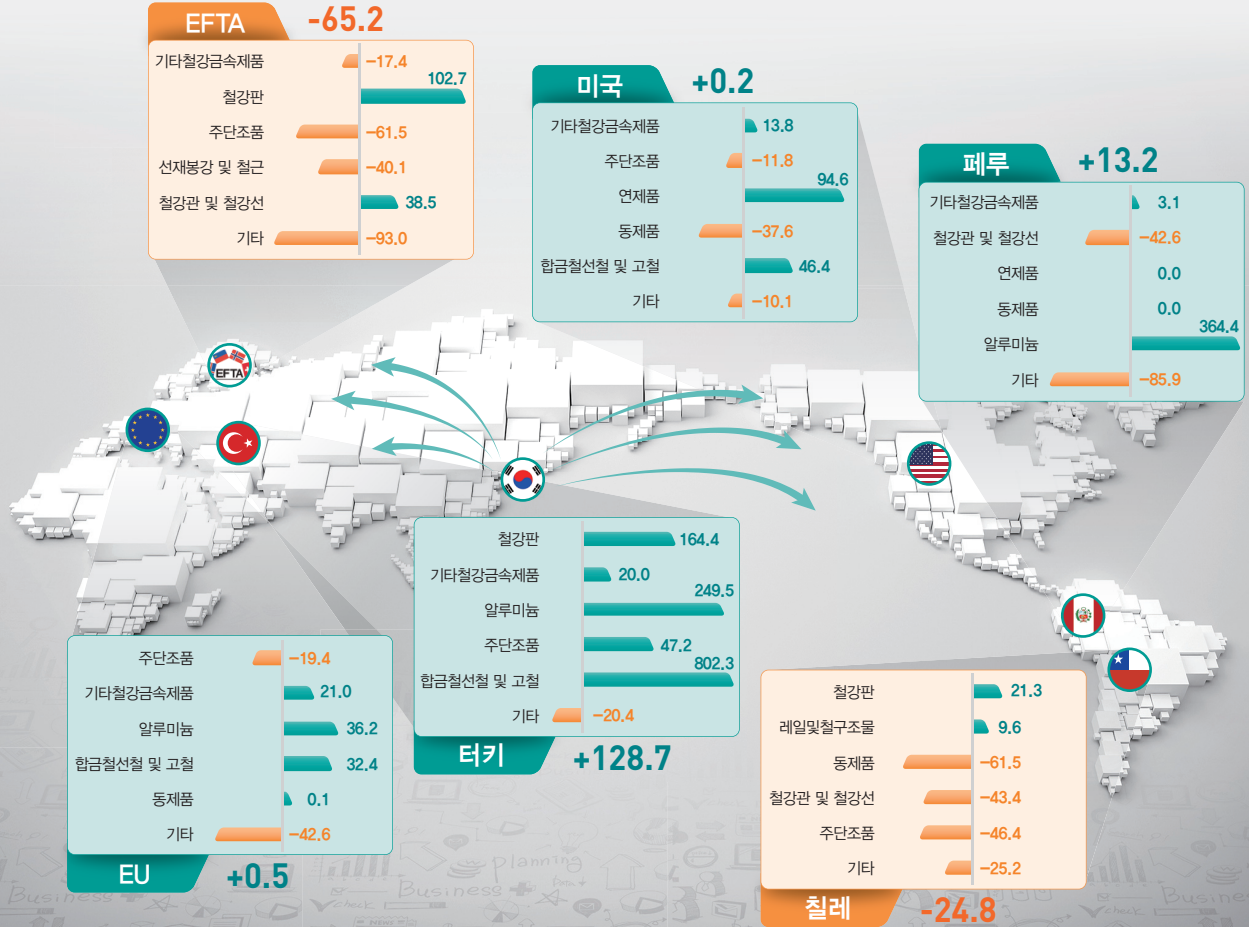
페루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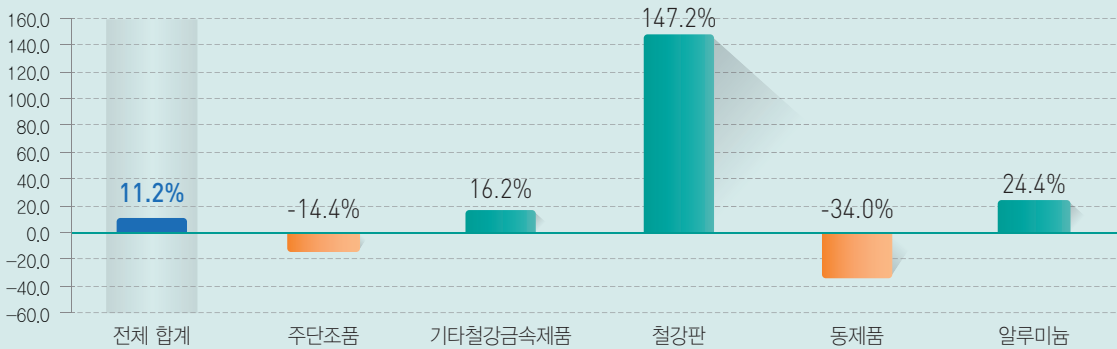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출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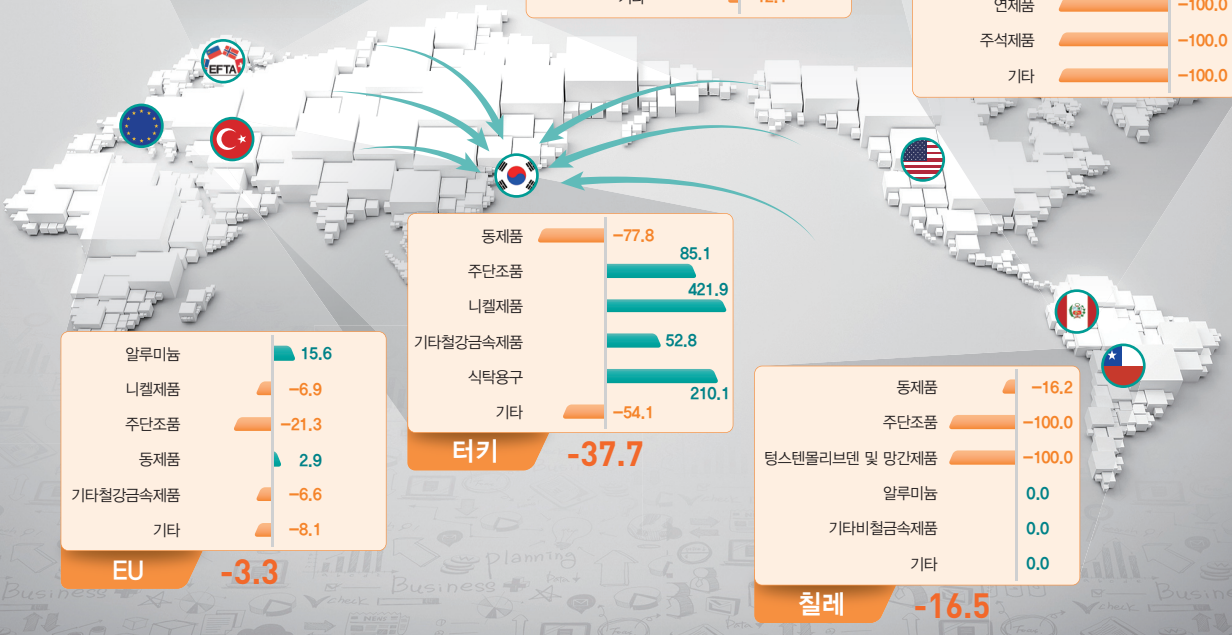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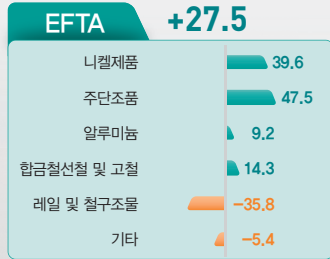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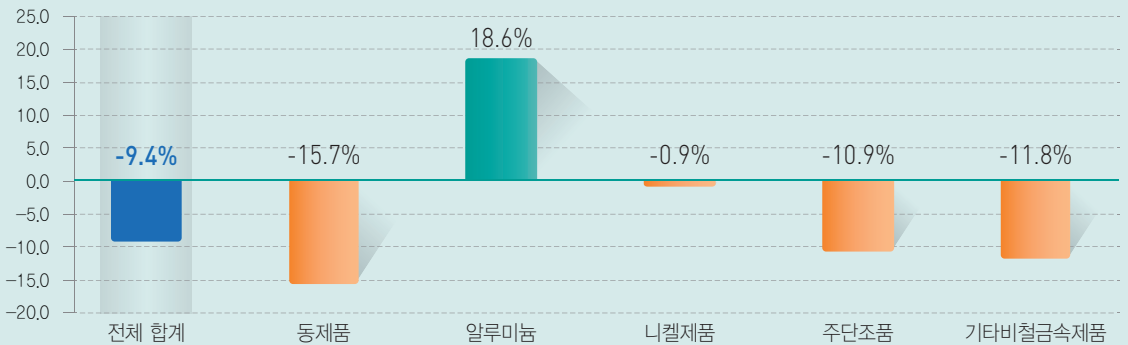




수입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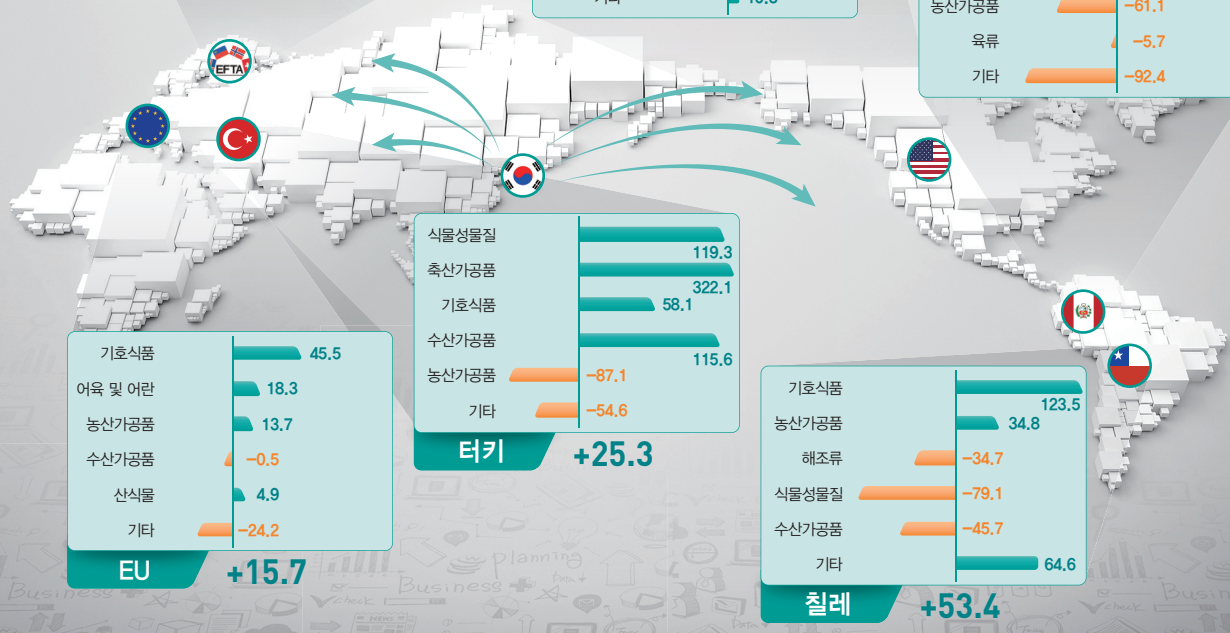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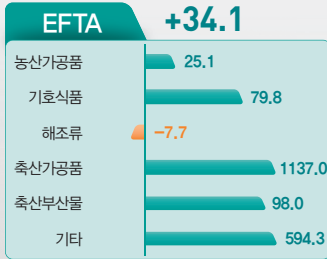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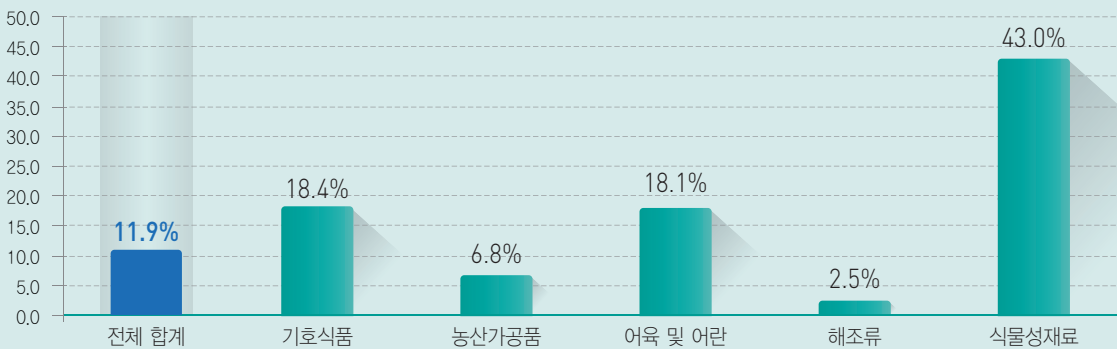




수출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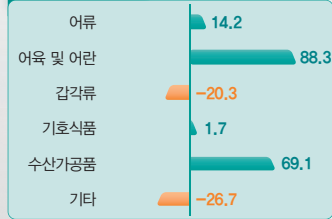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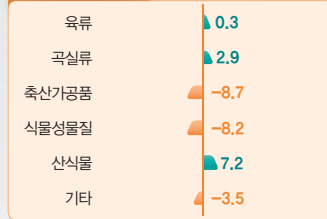


수입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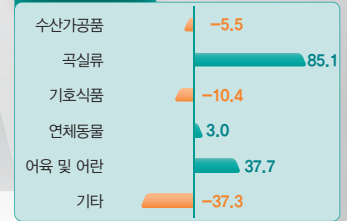
EFTA +12.7



미국 -1.4



페루 +7.2



EU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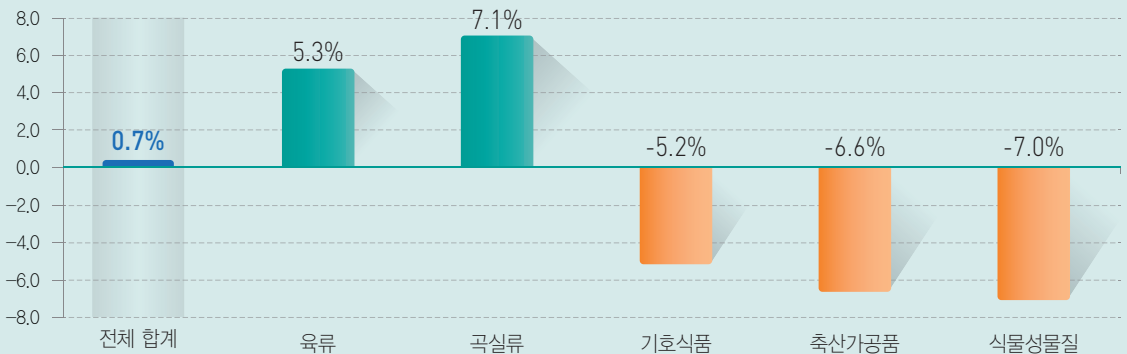


터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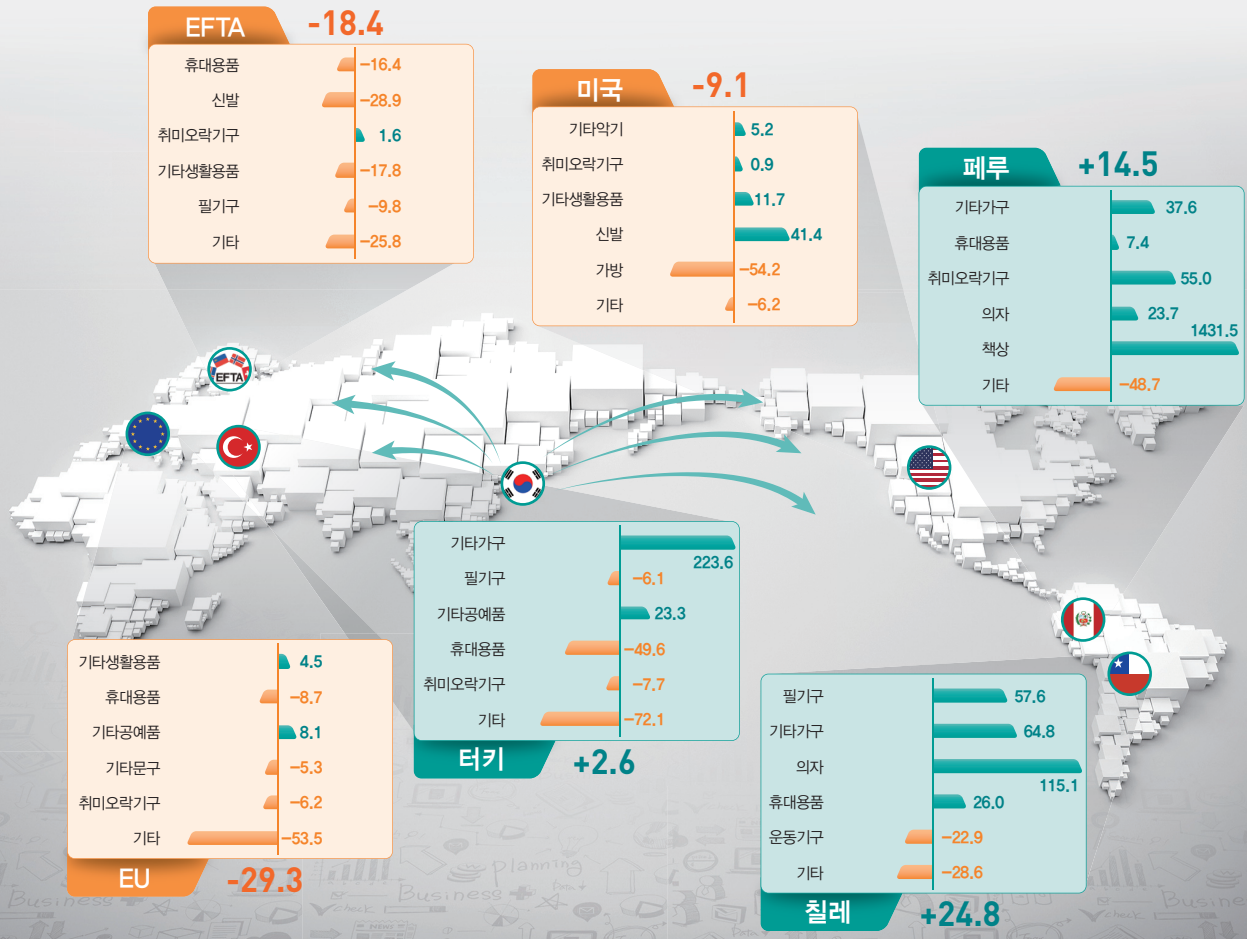
칠레 +3.6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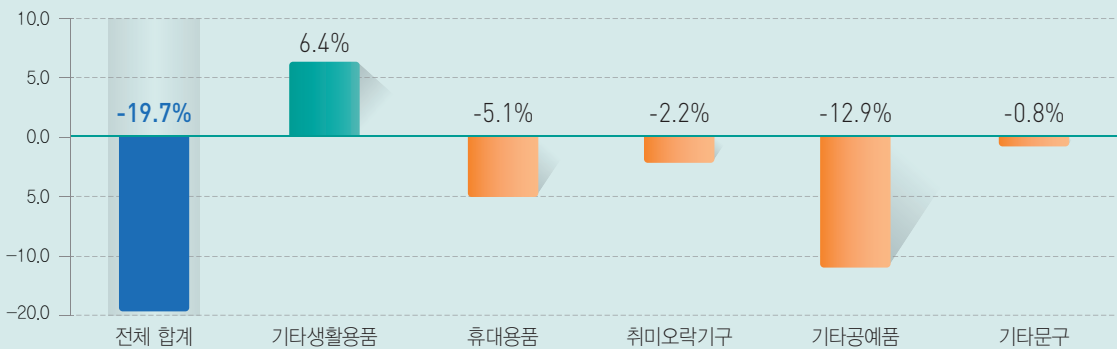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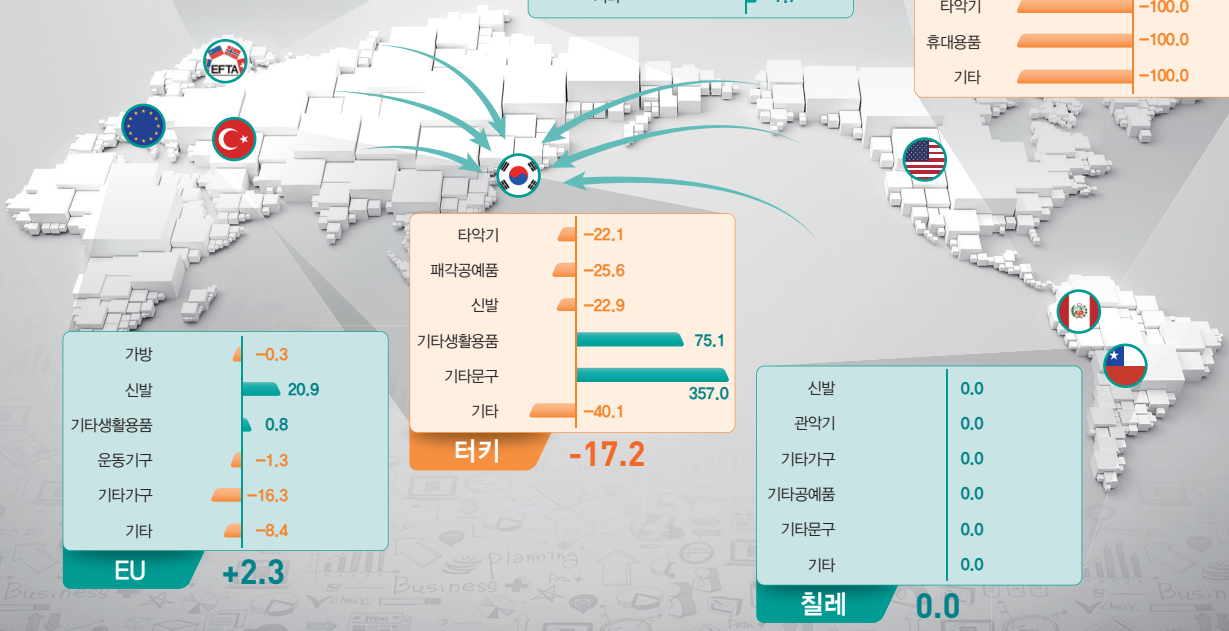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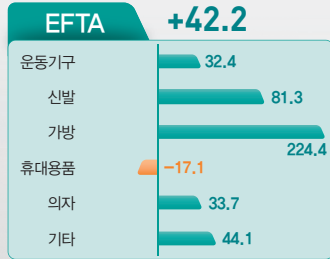
수출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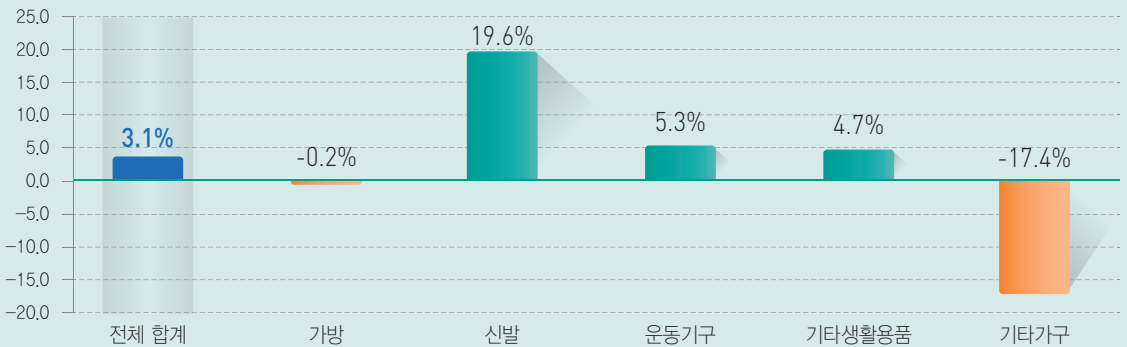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입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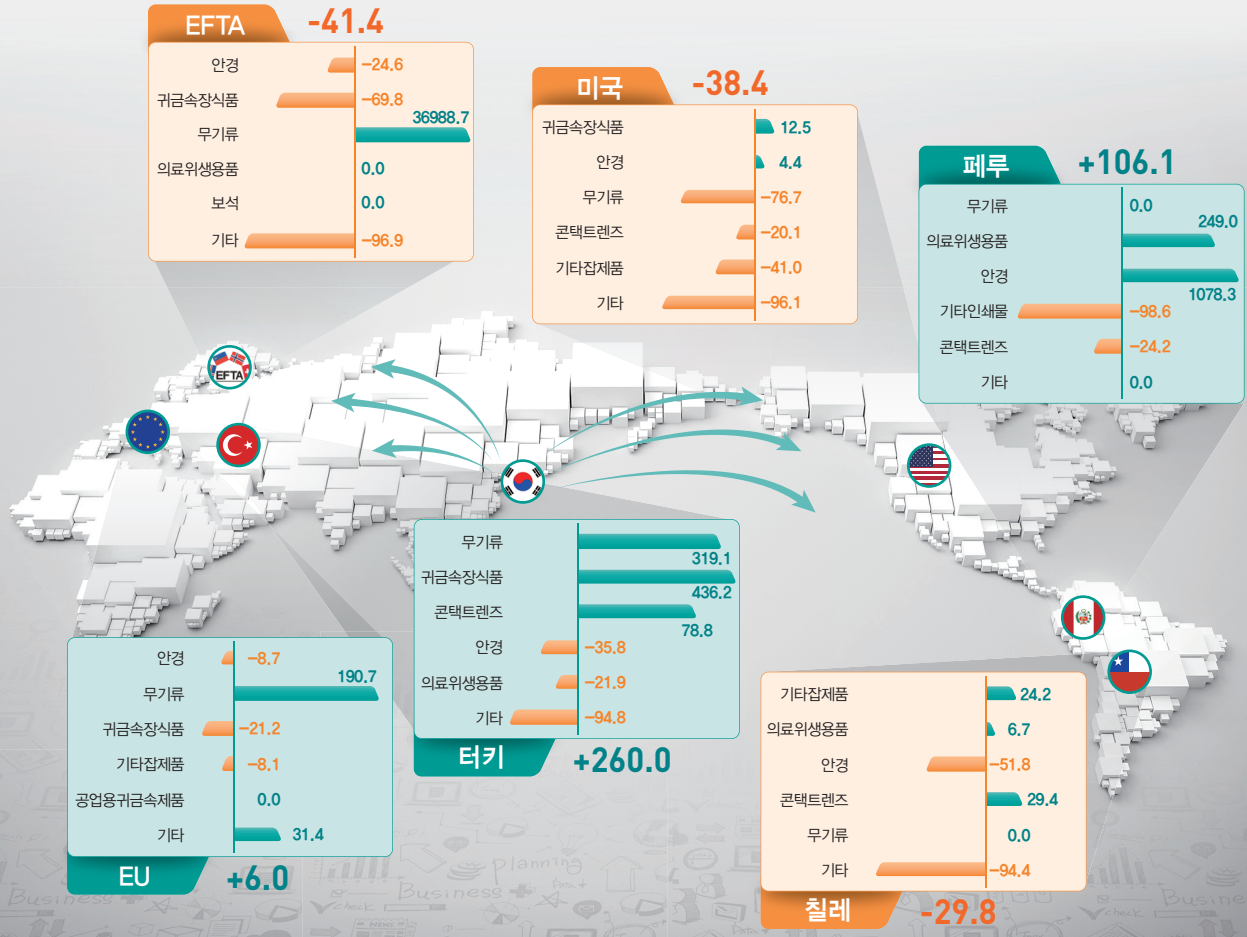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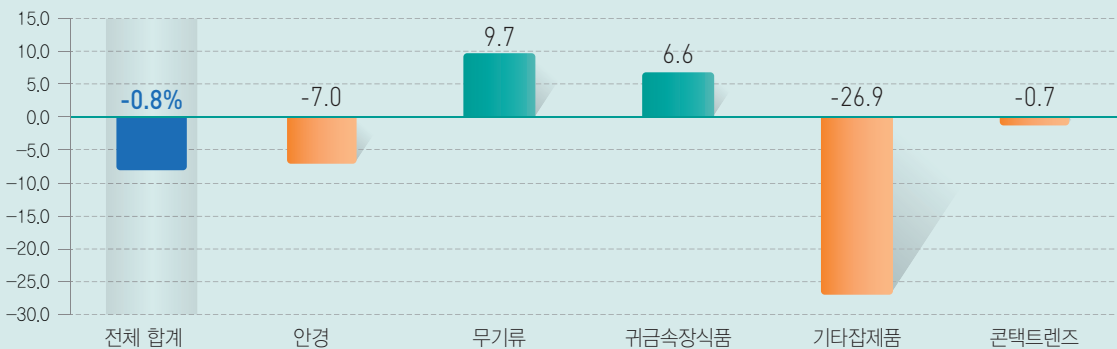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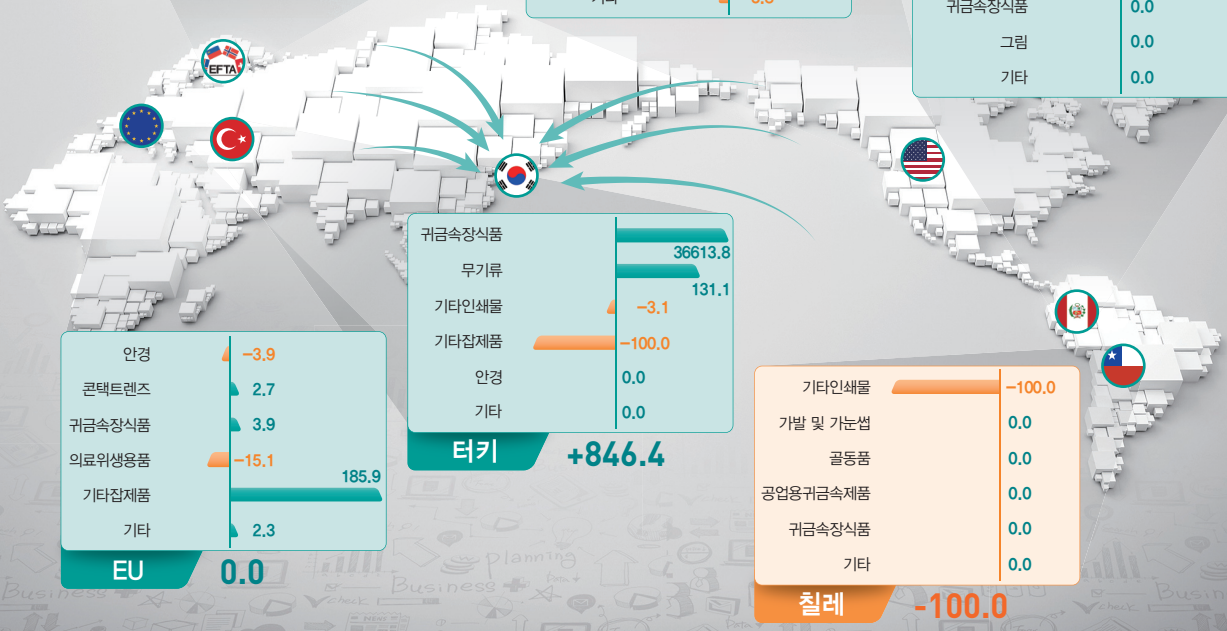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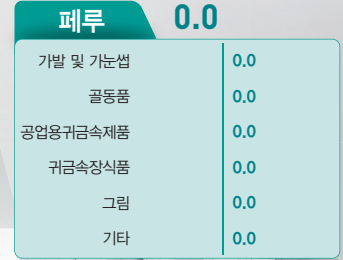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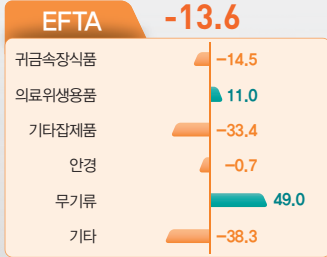
수출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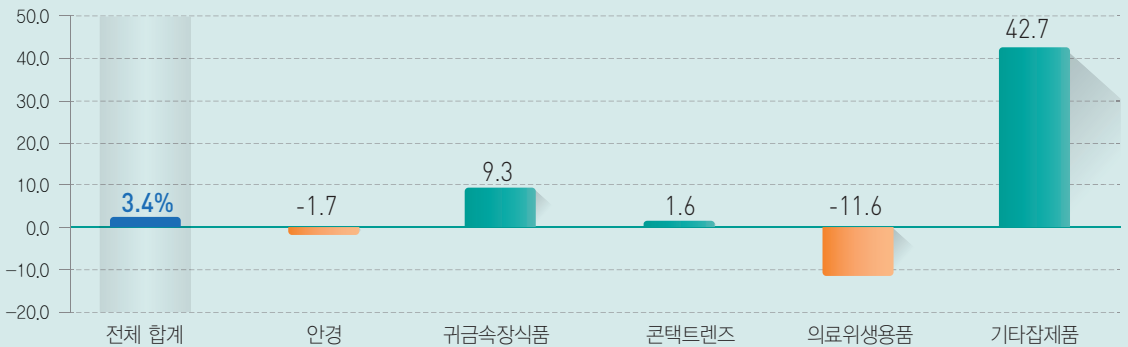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수입 잡제품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 리포트

Vol.02 June 2016

〈비매품〉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무역리포트에 관한 독자엽서를

fta-report@origin.or.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시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

엽서의 질문답변 포함)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독자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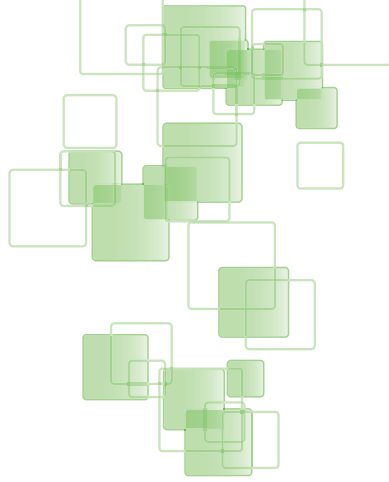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9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